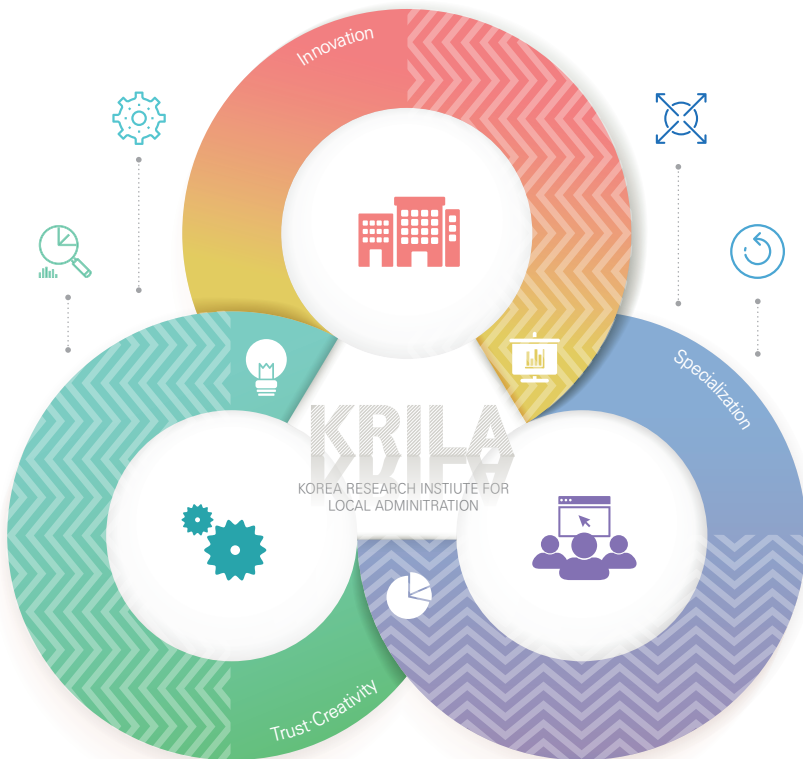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홍근석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진	홍 근 석 (부연구위원)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일 재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02-394-0337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978-89-7865-490-6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서문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체사업보다 우선하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문제인 정부는 사회복지 확대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중앙-지방 간 역할 및 재원부담 방식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행 국고보조사업 체계 내에서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성이 높은 2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홍근석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유익한 자문을 해주신 학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2020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 일 재

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보조율 설정, ② 유사 사업에 대한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③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④ 낮은 수준의 기준보조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보조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보조율 조정, ②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③ 유사 사업의 기준보조율 통일, ④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폐지, ⑤ 기준보조율의 단순화 등이 주장되어 왔다.

둘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는 ①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의 적절성, ② 시군구 간 재정구조 차이 미반영, ③ 차등보조율제도로 인한 문턱효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② 재정력지수, 실제 재정수요(수혜대상 인구) 등 새로운 차등보조율 선정기준 적용, ③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등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 이 연구에서 분석한 13개 아동복지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2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4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한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유사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차등보조율로 인한 인상보조율을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 기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 비율을 적용한 시나리오 1과 2는 수혜자 1인당 금액 측면에서 지역 간 국비 지원 규모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시나리오 3과 4는 일부 형평화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4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전체와 아동수당 중 지니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은 공동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사무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방법	9

제2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기준에 관한 논의 11

제1절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기준의 의의	13
1. 국고보조금 제도	13
2.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16
3. 현행 재원분담 기준 문제점	21
제2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의의	26
1. 아동복지사업	26
2.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29
3.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재정	3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0
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0
2.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6

제3장 주요 국가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 ————— 59

제1절 미국 61

- 1. 국고보조사업 개요 61
- 2.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 71

제2절 독일 90

- 1. 국고보조사업 개요 90
- 2.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 99

제3절 일본의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103

- 1. 국고보조사업 개요 103
- 2.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 106

제4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 및 주요 쟁점 ————— 123

제1절 재원분담 현황 125

- 1. 개요 125
- 2. 주요 사업별 재원분담 현황 132

제2절 주요 쟁점 137

- 1.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 137
- 2. 차등보조율 관련 쟁점 146

제5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자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155

제1절 대안 및 평가기준 설정	157
1. 대안 설정	157
2. 평가기준 설정	161
제2절 대안별 분석결과	163
1.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63
2.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80
제3절 종합 및 개선방안	197
1. 분석결과 종합	197
2. 개선방안	201
참고문헌	205
Abstract	209

표 목차

[표 2-1]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유형 구분	19
[표 2-2]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산정기준의 적용가능성 검토	22
[표 2-3]	아동복지 분야 내용 및 분담방식별 사업 현황	27
[표 2-4]	보육 분야 내용 및 분담방식별 사업 현황	28
[표 2-5]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30
[표 2-6]	연장보육료 지원 단가	30
[표 2-7]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32
[표 2-8]	2005년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 목록	38
[표 2-9]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실적	39
[표 2-10]	내국세 및 지방이양사업비 증가율 추이	40
[표 2-1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54
[표 2-12]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58
[표 3-1]	미국 연방보조금 정책수립 과정	62
[표 3-2]	미국 연방보조금 관련 법률 및 행정명령	63
[표 3-3]	보건후생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69
[표 3-4]	교통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69
[표 3-5]	농무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70
[표 3-6]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70
[표 3-7]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주정부 부담 비율 공식	72
[표 3-8]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 부담률 변화(2014~2018)	73
[표 3-9]	18세 미만 아동인구 및 비율(2011~2018)	79
[표 3-10]	빈곤 수준별 18세 미만 아동인구 및 비율(2011~2018)	79
[표 3-11]	정부 공고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아동인구 비율(2011~2018)	80
[표 3-12]	주정부별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보조금 수령액(2017년 기준)	84
[표 3-13]	주정부별 MOE 펀드 비율(2017년 기준)	86
[표 3-14]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계산 공식	89
[표 3-15]	독일 「연방헌법」상 연방보조금 유형	90

[표 3-16]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급여수준 결정기준	96
[표 3-17]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주정부 간 재정부담 현황	100
[표 3-18]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의 연방정부 자원부담 비율(2018년 기준)	101
[표 3-19]	연방위임사무(사회복지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부담 추이	102
[표 3-20]	국고지출금 현황	103
[표 3-21]	도도부현 지출금 현황	105
[표 3-22]	분야별 국고지출금 사업 수 및 비중	106
[표 3-23]	아마나시현 아동복지 관련 국고지출금 사업 수, 비중 및 예산	107
[표 3-24]	아동 관련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자원부담 비율(보조율별)	108
[표 3-25]	아동 관련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자원부담 비율(보조율별)	109
[표 3-26]	사이타마현 분야별 국고지출금 사업 수, 비중 및 예산	114
[표 3-27]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자원부담 비율(보조율별)	116
[표 3-28]	사마타이현 국고보조금의 예산, 상한액 및 예산액 여부	118
[표 3-29]	사이타마현 아동관련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부담비율	118
[표 4-1]	2019년 기준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소관 부처별)	125
[표 4-2]	2019년 기준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사업비 규모별)	126
[표 4-3]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자원부담 현황(본청 + 기초)	128
[표 4-4]	13개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자원부담 현황(본청 + 기초)	129
[표 4-5]	13개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자원부담 현황(시도, 시군구별)	131
[표 4-6]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사업 자원부담 현황(본청 + 기초)	132
[표 4-7]	아동수당 자원부담 현황(본청 + 기초)	134
[표 4-8]	가정양육수당 자원부담 현황(본청 + 기초)	135
[표 4-9]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유형구분	137
[표 4-10]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기준	138
[표 4-11]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기준 보조율 적용 현황(사업 수)	139
[표 4-12]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기준 보조율 적용 현황(국고보조금)	140
[표 4-13]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기준 보조율 적용 현황(평균 실질 보조율) · 140	

[표 4-14]	국비 규모에 따른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적용 실태	141
[표 4-15]	영유아보육료 보조율 적용 실태	142
[표 4-16]	아동수당 보조율 적용 실태	143
[표 4-17]	가정양육수당 보조율 적용 실태	144
[표 4-18]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현황	145
[표 4-19]	지역별 재정자주도와 차등보조율 분포(2017년 기준)	146
[표 4-20]	지역별 사회복지비지수와 차등보조율 분포(2017년 기준)	147
[표 4-21]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류(2017년 기준)	148
[표 4-22]	차등보조율 조정안 적용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류(2017년 기준)	148
[표 4-23]	차등보조율 산정기준과 보조율 간 상관관계	149
[표 4-24]	차등보조율 산정기준과 국고보조금 간 상관관계	149
[표 4-25]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차등보조율 산정기준 차이 분석	153
[표 4-26]	시도별 차등보조율 적용 결과(2017년 기준)	153
[표 4-2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차등보조율 적용 결과(2017년 기준)	154
[표 5-1]	영유아인구비율,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의 기술통계	161
[표 5-2]	영유아보육료(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163
[표 5-3]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165
[표 5-4]	아동수당(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166
[표 5-5]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167
[표 5-6]	영유아보육료(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168
[표 5-7]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169
[표 5-8]	아동수당(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170
[표 5-9]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171
[표 5-10]	영유아보육료(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172
[표 5-11]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173
[표 5-12]	아동수당(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174
[표 5-13]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175

[표 5-14]	영유아보육료(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176
[표 5-15]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	177
[표 5-16]	아동수당(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178
[표 5-17]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179
[표 5-18]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181
[표 5-19]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	182
[표 5-20]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183
[표 5-21]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184
[표 5-22]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185
[표 5-23]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	186
[표 5-24]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187
[표 5-25]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188
[표 5-26]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189
[표 5-27]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	190
[표 5-28]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191
[표 5-29]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192
[표 5-30]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193
[표 5-31]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	194
[표 5-32]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195
[표 5-33]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196
[표 5-34]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분석결과	197
[표 5-35]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분석결과	200
[표 5-36]	13개 영유아 사업의 재원분담 현황	20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0
[그림 3-1]	지역별 연방보조금 규모(FY2019)	68
[그림 3-2]	부처별 연방보조금 지출 규모(FY2019)	68
[그림 3-3]	프로그램별 연방보조금 지출 규모(FY2019)	71
[그림 3-4]	주정부별 FMAP 부담률(FY2019)	75
[그림 3-5]	주정부별 E-FMAP 비율(FY2018)	76
[그림 3-6]	주정부별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 보조금 규모(FY2018 상반기)	77
[그림 3-7]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지출 내역(FY2018)	82
[그림 3-8]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주정부별 금액(2018년 7월 기준)	83
[그림 3-9]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액 추이(1977~2017)	89
[그림 4-1]	차등보조율 산정기준과 국고보조금 간의 관계	15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¹⁾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들은 기존에 관심을 가졌던 소득과 건강 관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잔여적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이재원 외, 2017).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은 유형 및 정책대상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의 양적·질적 변화에 상응하는 운영체계 및 공급방식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지방(광역, 기초) 간 합리적 재원분담 기준을 설정하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수행되는 사회복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1)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의 2017년 인구는 1990년 대비 약 3만 명 감소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소멸위험지수는 보통 단계에서 2017년 이후 주의 단계로 악화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대부분의 소멸위험지역은 재정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와 재정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홍근석, 2019).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및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성을 어떤 정부계층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무의 경우 30개의 세부사무가 시도와 시군·자치구 사무로 중복되어 있으며, 법령상 규정이 없는 공동사무의 개념을 실무적으로 사용²⁾하고 있다(홍근석·김봉균, 2019).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필요로 하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³⁾되어 있다.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2008년 12.1조 원에서 2019년 26.5조 원으로 연평균 7.5%씩 증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은 34.3%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49.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중 91.9%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매우 높아 자치구는 재정적 측면에서 자치단위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일반회계 기준 자치구의 평균 사회복지비 비중은 56.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부산 북구의 경우에는 71.4%로 사회복지사업 수행으로 인해 다른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이 부족하며, 대부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사업을 결정·운영하고

2) 한편 법령의 표현상 위임의 형식이 아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무가 존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공동사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공동사무를 실무적으로 인정하였다. 공동사무의 경우 처리권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사무 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중복행정 및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무 처리에 대한 재정부담 없이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한부영 외, 2014).

3)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있다. 현재 중앙-지방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전달·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재정 집행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복지사업 등에 관한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및 서비스 전달체계, 대응지방비 부담,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참여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할수록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경직성이 높아지게 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지방(광역, 기초) 간 합리적 재원분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 확대⁴⁾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재원 외, 2017). 즉,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중앙-지방 간 역할 및 재원분담 방식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부터 지역의 자율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지방재정제도 혁신을 위해 제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에 초

4)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비는 51.5조 원으로 총 사업비의 56.9%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 기준 상위 10개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이 8개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사업비 합계는 41.7조 원으로 총 사업비의 46.0%를 차지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 8개 사업의 대응지방비는 11.7조 원으로 총 사업비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기초 간 지방비 부담비율은 58:42로 나타났다.

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중앙-광역-기초 간 재정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다양한 정책 영역 중에서 특히 보육을 포함한 아동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인구감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및 아동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보육서비스를 포함하여 돌봄지원사업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료는 4,726,866백만 원이며, 이 중 1,287,223백만 원(27.2%)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2,965,735백만 원 중 798,312백만 원(26.9%)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아동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현행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운영 및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중앙-광역-기초 간 재원부담 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 규모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은 121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수행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거나 새롭게 수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에서는 주로 세부사업 수준에서 기준보조율을 제시하고 있어, 다수의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역사업별로 실제 보조율이 상이하게 수행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5)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2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노인인구비율이 유소년인구비율을 초과하는 '인구지진(Age quake)'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2015년 73.4%에서 2045년 54.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2015년 12.8%에서 2045년 3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장경원·홍근석, 2018).

[별표1]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광역-기초 간 재원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별표] 역시 현재 수행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등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앙-지방 간 국고보조사업 재원부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1]과 광역-기초 간 국고보조사업 재원부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간 연계성이 낮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광역-기초 간 재원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일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등보조율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즉, 현재의 차등보조율은 재정자주도를 3단계(80% 미만, 80~84%, 85% 이상)로 구분하며, 사회복지비지수도 3단계(20% 미만, 20~24%, 25% 이상)로 구분하여 차등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을 적용할 때, 인하보조율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반면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보조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완(2019) 등 다수의 선행연구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지표가 지역적 분포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개선하거나 대체 지표를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국고보조금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재정을 투입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결산 및 결과보고를 지자체와 복지부에 각각 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 불필요한 과정이 지자체를 경유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와 연계하여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에 관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유아보육료, 가족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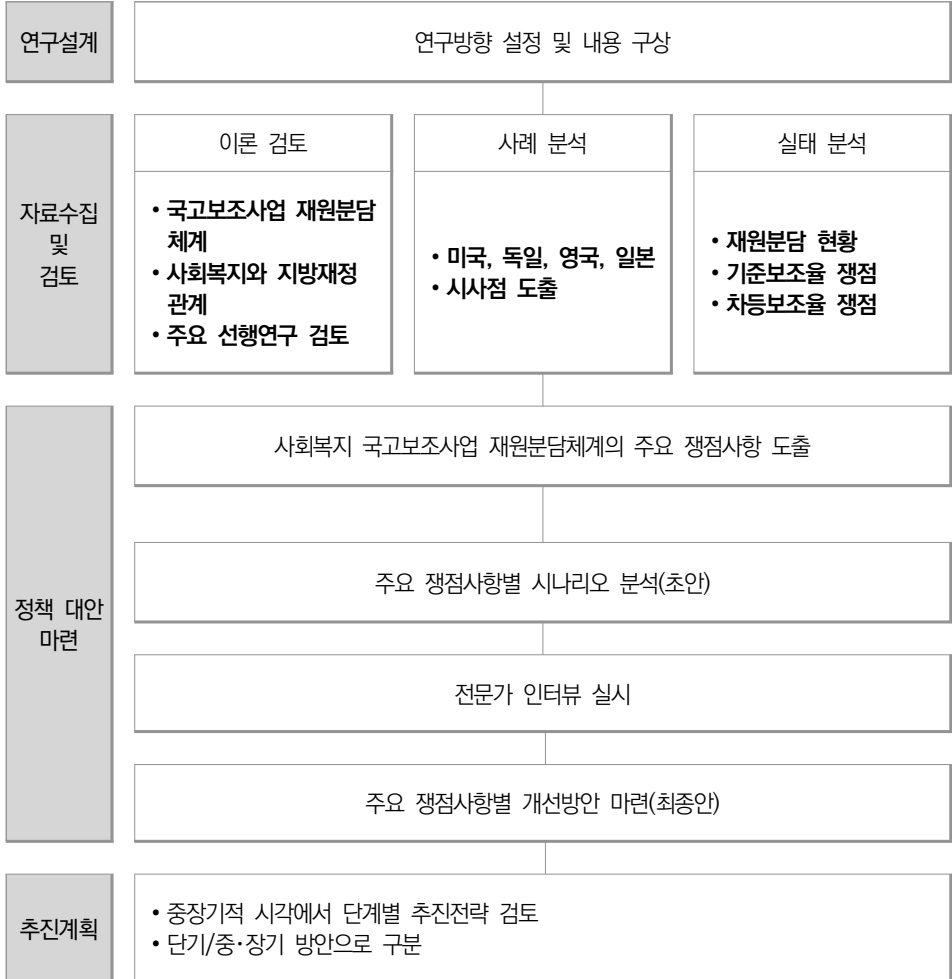
1.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 측면에서 이 연구는 2019년도를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 현황은 행정안전부(2019)의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자원분담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자원분담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 학술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체계 관련 이론적 논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둘째,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등의 통계자료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 현황 및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주요 국가들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기준에 관한 논의

제1절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기준의 의의

제2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의의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기준에 관한 논의

제1절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기준의 의의

1. 국고보조금 제도

1) 국고보조금의 개념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지출금을 말한다(배준식 외, 2015). 국고보조금은 광의의 보조금과 협의의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광의의 보조금은 ① 협의의 보조금, ② 부담금, ③ 급부금 개념을 포함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협의의 보조금의 개념은 「지방재정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1항3에서는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고 정의하여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21조는 부담금과 교부금의 개념도 정의하고 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사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교부금”은 국민투표·징병 등 중앙정부가 스스로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도모와 경비의 효율화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부담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제도상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및 교부금’과 동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의 보조금’을 말한다(김홍래, 2005).

한편 실무적인 관점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이전(330)” 목 중 “자치단체경상보조(01)” 및 “자치단체자본보조(03)” 2개 세목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상 의미와 실무적인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국가예산과목 상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및 자본보조(330-03)”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심지현, 2014).

2) 국고보조금의 특성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Fisher(2008)의 보조금 분류방식에 의하면 조건이 부가된 특정정보보조금의 유형에 속하면서 세부적으로는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의 성격을 갖는다(임성일, 2012). 이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이 국고지원에 대해 지방이 일정한 비율로 대응하는 운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응보조금(또는 정률보조금)은 개방형 대응보조금(open-ended matching grant)과 폐쇄형 대응보조금(closed-ended matching grant)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보조금 폐쇄형 대응보조금에 속한다. 경제이론과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조금의 목적이 특정 행정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을 경우 개방형 대응보조금이 최선의 정책수단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폐쇄형 대응보조금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데(Fisher, 2008),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폐쇄형 대응보조금의 특성을 갖고 있다(배준식 외, 2015).

협회의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교육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특정 공공재를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공급한다. 둘째, 산업발전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국가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권장하여 조장하고자 하는 특정

사무 혹은 사업의 보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국가가 수행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8).

다만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의 저해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심한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일지라도 신중한 가치판단 없이 국고보조금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여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기획재정부, 2018; 손인호·금재덕, 2018에서 재인용).

3) 국고보조금의 배분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 방식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부서들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보조율을 근거로 관련 상위부서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중앙부서에서는 할당하던 재원 규모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내시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에서 결정한 보조사업과 재원배분 규모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배분 비율을 결정·통보한다(이재원, 2019).

국고보조금의 배분은 정부의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공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의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전상경, 2008). 특히 재원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규모나 그 운영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배준식 외, 2015).

또한 국고보조금은 배분에 있어서 정치적 타협이나 이권개입의 여지가 많다. 나름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기준을 초과하여 더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 정치적 과정들이 녹아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선호를 예산에 반영하여 최적의 사회적 후생을 달성하도록 작동하게 만드는 제도적 시스템으로서,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권이 대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홍순규, 2011).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치 엘리트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차기 선거에서의 재선을 목표로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이를 위한 사업예산의 획득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예산들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은 'pork barrel politics'로 불린다. 이에 따라 국회 및 행정부 등 중앙

차원의 예산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예산결정을 둘러싸고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지가 결정된다(Weingast, Shepsle and Johnson, 1981). ‘pork barrel politics’란 그러한 정부 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획득의 정치 또는 정부 프로젝트 유치의 정치로 번역될 수 있다. ‘pork barrel’은 대체로 의회예산심의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타협과 흥정의 산물로서 슬며시 예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배준식 외, 2015).

2.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1) 기준보조율

(1) 기준보조율의 개념

국고보조사업의 지출은 ‘국고보조금’과 ‘대응지방비’로 구성되며, 국고보조사업의 총지출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비중을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에서는 기준보조율을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로 정의한다.

기준보조율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개별법령 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체계적이고 공통된 기준보조율의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침에 따라 다수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결정되기도 한다(손인호·금재덕, 2018).

‘대응지방비’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이다.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정률보조의 형태로 교부하고 있으며,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대응지방비 분담비율이 결정된다. 반면 국가가 정해진 액수의 예산만큼을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잔여 사업비를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정액보조사업의 경우, 대응지방비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를 의미한다.

‘평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사업비가 100억 원인 국고보조사업 내 국고보조금이 70억 원인 경우, 평균보조율은 70%가 된다. 평균보조율은 많은 경우 기준보조율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의 세부사업이 여러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내역별로 각기 다른 기준보조율을 적용받는 경우, 평균보조율은 내역사업별 기준보조율의 가중평균이 된다. 또한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보조율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기준보조율은 평균보조율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정액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으나,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규모는 확정할 수 있으므로 평균보조율 산출이 가능하다(심지현, 2014).

(2) 기준보조율의 법적 근거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보조금의 경우는 국고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10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인 122개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업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를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기준보조율의 규정방식은 다양하다. 개별법령에 기준보조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함께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위임한 경우도 있다. 또한 개별법령에는 국고보조의 근거만 규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로 운영하되, 정부 예산을 고려하는 임의보조율 방식을 따르기도 한다(서정섭, 2016). 이러한 일관성 없는 기준보조율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손인호·김재덕, 2018).

(3) 기준보조율의 유형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크게 정액과 정률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률형태로 지급된다. 정률형태의 기준보조율은 단수보조율과 복수보조율로 구분되는데 단수보조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기준보조율을, 복수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122개 사업 중 정률로 제시된 기준보조율은 100%, 90%, 80%, 75%, 70%, 60%, 50%, 40%, 30%, 20%, 10% 등이 있다. 이 중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는 단수보조율 사업은 69개이다.

복수보조율은 다시 일반복수보조율과 차등보조율 및 서울과 지방 간 차등보조율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복수보조율은 사업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른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서울과 지방 간 차등보조율은 서울에만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 간 차등을 두면서 서울에만 낮은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28개 사업(보건복지 분야가 25개 포함)이며, 서울과 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되, 지방의 경우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자주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사업은 7개, 재정자주도에 따른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1개(청소년 시설 확충-지방)이다.

한편 정액 기준보조 사업은 122개 사업 중 농림·어업·산림 분야 2개(유기질비료지원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중 농공단지 조성 지원), 환경 분야 1개(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보건복지 분야 1개(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문화관광 분야 1개(문화시설 확충 운영 중 문예회관 건립지원), 건설교통 분야 4개(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 도로 건설, 항만배후도로 건설, 경전철 건설) 등 9개 사업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4]의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유형을 보조 형태, 보조율의 수, 보조율 구분방식 등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손인호·금재덕, 2018).

표 2-1.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유형 구분

보조 형태	보조율 수	보조율 구분방식	보조율 특성	적용 분야
정액보조	-	-	특정지역 또는 특정행사 사업에 일정금액 지급	특정지역, 특정행사지원 등
정률보조	단수	단수보조율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기준보조율 적용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
	복수	일반 복수보조율	사업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른 보조율 적용	일부 특수사업
		서울-지방 차등보조율	서울에만 낮은 보조율 적용	사회복지
		차등보조율	재정력과 재정지출 지수에 따라 차등보조율 적용	사회복지

자료: 임성일 외(2012), 손인호·김재덕(2018)에서 재인용

2) 차등보조율

(1) 차등보조율의 개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업수요 등에 따라 지방재정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심지현, 20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인하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에서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적용하는 인상보조율과 일정 비율을 감하여 적용하는 인하보조율을 설명하고 있다. 기준보조율에 20%, 15%, 10%를 더하거나 빼서 적용하며, 인상보조율은 재정 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적용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을 정하고 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차등보조율은 대체로 예산규모가 커서 상당한 대응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대규모 보조사업 위주로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등의 복지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차등보조율 산정을 위하여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재정자주도가 높고(85% 이상) 사회복지비지수가 낮은(20% 미만) 경우 기준보조율보다 10%p 낮은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며, 반대로 재정자주도가 낮고(80% 미만) 사회복지비지수가 높은(25% 이상) 경우 10%p 인상보조율을 적용한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위의 사업들과 동일하나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노인인구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에 따라 40~90%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차등보조율은 크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해당 사업의 수요” 2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비지수 또는 노인인구비율 어느 형태이든 “해당 사업의 수요”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렵거나, 해당 사업의 수요가 클수록 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는 구조이다(손인호·김재덕, 2018).

3. 현행 재원분담 기준 문제점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문제점 및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준보조율 산정원칙의 부재

기준보조율과 상이하게 편성보조율이 책정되는 등 보조율 적용에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보조율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표준화된 재원분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배준식 외, 2015).

기준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로서 대응지방비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기준보조율이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 부담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산정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지 않다. 기준보조율에 관하여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의 수치를 열거하고 있을 뿐 보조율을 산출하게 된 근거와 원칙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특별한 쟁점이 제기되지 않으면 국고보조사업을 도입할 때 설정한 기준보조율이 관례적으로 반복 적용된다(이재원, 2019). 이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기준보조율을 자의적으로 산정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의 체계성 혹은 일관성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40%이지만, 체육진흥시설 지원과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각각 30%와 70%이다(이재원, 2019).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산정원칙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근거로 국비와 대응지방비의 분담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보조율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에 가까울수록 보조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성격을 갖는 사무일수록 보조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심지현, 2014).

학계에서 논의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산정기준은 국가책임정도(국가책임, 공동책임, 지자체 책임), 지자체의 선택권(재량) 여부, 사업의 파급효과 범위, 공공재적 성격, 국가최저수준, 정책유형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기준들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에서 적용 가능성이 인정된 것도 있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적용이 곤란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대체가능한 기준들도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산정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이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심지현, 2014).

표 2-2.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산정기준의 적용가능성 검토

기준	내용	적용가능성
국가 책임정도	국가책임인 경우 공동책임이나 지자체 책임보다 높은 보조율 적용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행하는 경우이므로 기준보조율 산정 시 적용 가능
의무/재량 여부	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보조사업 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높은 보조율 적용	지자체가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선택권이 없어 강제로 재정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이므로 기준보조율 산정 시 적용 가능
사업의 파급범위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 파급되는 경우 높은 보조율 적용	사업의 파급범위가 특정지역에 제한되지 않은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책임을 져야 하므로 기준보조율 산정 시 적용이 필요하나, 파급효과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곤란
공공재 성격	공공재적 성격인 경우 높은 보조율 적용	대부분의 정책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용 실익이 없고, 순수공공재 여부의 판단은 효과의 파급범위로 대체 가능하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적용 곤란
국가 최저수준	전국 공통기준에 의한 현금지급성 복지사업의 경우 높은 보조율 적용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 같이 전국 통일기준에 의한 복지사업은 국가주도의 정책사업 성격이 있으므로 기준보조율 산정 시 적용 가능하나 국가책임정도 기준과 통합 가능
정책 유형	지역개발, 복지 등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하되 복지 등 비선호정책에 높은 보조율 적용	사업 유형별로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는 것은 적용 가능하나 형식적 기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효과의 파급범위와 국가최저수준 및 국가책임정도 기준으로 대체 필요

자료: 심지현(2014), 손인호·금재덕(2018)에서 재인용

2) 시행령에 기준보조율 명기 사업 한정

보조율 편성이 임의적으로 보조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한 보조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금 배분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배준식 외, 2015).

시행령 [별표 1]은 122개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을 명기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예산과목상 세부사업명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122개 유형이 정확히 몇 개의 세부사업과 일치하는지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시행령 각 호의 사업이 대체로 예산과목상 1개 세부사업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부 사업을 제외한 다수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예산안 편성 시마다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많은 부분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다시 위임한 것은 포괄적인 재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규모 지방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업일수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을 명기할 필요성이 크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122개 유형에 불과한 기준보조율 명기 대상 사업의 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심지현, 2014).

(1)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의 적절성 및 실효성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인 재정자주도의 경우 단순히 재정자주도를 통해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처럼 일괄적으로 특별시와 지방을 구분하는 논리가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단순히 재정력이 좋고 나쁨을 재정자주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지표가 너무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그 구간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배준식 외, 20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평가하는 지수인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의 차이를 분별력 있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사업 모두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구간을 80%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 80% 미만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인하보조율이나 기준보조율을 적용받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보조율 구간은 일부 구간에 불과하나 나머지 차등보조율 적용 구간들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제도 낭비’ 구역이 된다(이재원, 2019). 또한 재정자주도가 80% 이하이더라도 격차가 나타나는 단체가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동일하게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분별력 있게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차등보조율은 재정자주도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40~90%의 구간에서 산정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격차가 크다 하더라도 차등보조율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노인인구비율의 미세한 차이가 보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의 인상보조율은 재정자주도의 큰 격차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비지수의 미세한 차이가 인상보조율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심지현, 2014).

또한, 재정자주도는 사후결산지표이기 때문에 예산재원을 사전에 배부하는 기준지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조사업을 유치하면 재정자주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복지보조사업에서 인상보조율을 자동 지원받는 이중 혜택도 가능하다. 재정자주도 지표는 ‘가속도 현상’을 발생시켜 지자체 세입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즉, 복지보조금 증가가 재정자주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으면 복지보조금이 다시 급증하고, 그 결과 재정자주도가 또 하락하는 가속도 현상이 발생한다. 서울과 광역시 자치구는 2008년 차등보조율 도입 이후 재정자주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하능식, 2013; 이재원, 2019에서 재인용).

(2) 시군·자치구 간 재정구조 차이 미반영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두 기준 중 재정자주도의 분류구간이 편중된 상황에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인상보조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은 사회복지비지수 하나로 수렴된다. 그런데 사회복지비지수는 시군보다 자치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 차등보조율 제도가 자치구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운용되는 문제가 있다.

심지현(2014)의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차등보조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2년 사회복지비지수의 시군·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인 자치단체는 시가 11개(15.1%), 군이 1개(1.2%)에 불과한 반면, 자치구는 65개(94.2%)로 대부분 사회복지비지수가 매우 높다. 따라서 자치구는 사회복지비지수가 높으므로 대부분이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치구의 사회복지비지수가 시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의 구조가 시군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개발 등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상 정책자율성이 제한되어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비중이 높아 사회복지비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은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2]는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도시계획,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등 14개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시군·자치구별 자체사업 및 사회복지 비중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자체사업 비중은 시군에 비하여 낮은 반면, 자치구의 사회복지 비중은 시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서울시는 지방에 비하여 30%p 낮은 기준보조율을 적용받으므로,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인상보조율은 사실상 낮은 기준보조율에 따른 부담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심지현, 2014).

제2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의의

1. 아동복지사업

1) 아동복지 사업의 개념

아동은 명확하게 정의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유아, 어린이,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연령상으로 아동은 성인이 되지 않은 연령인, 20세 미만, 18세 미만, 13세 미만 혹은 6세 미만으로 규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사업)은 과거에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했지만, 오늘날 일반아동까지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요보호아동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문제를 지니고 있어 보호와 치료가 요구되는 아동으로 빈곤가정이나 편부모 가정 등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나 발달상의 문제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의미한다. 일반아동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 아동이 속한 가정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2) 아동복지사업의 특성

(1) 아동복지 분야

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을 사업내용의 특성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생활영역의 ‘돌봄지원서비스’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으며, 아동권리확보, 건강지원, 소득지원 사업 등이 실행되고 있다. 현재는 보육서비스를 포함하여 돌봄지원사업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아동수당이 실시되면 현금지원

분야의 재정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면서, 아동건강지원서비스 또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건강지원 서비스는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성격을 명백히 갖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보건복지부, 2017).

표 2-3. 아동복지 분야 내용 및 분담방식별 사업 현황

사업 분담	담당 기관	소득	건강(보건)	생활	
				돌봄	권리확보
국가 사업	보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권증진 • 실종아동보호 • 안전사고 예방 • 아동복지교사 • 학대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아동보호 전문기관지원)
	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여가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가부) • 공동육아 나눔터(여가부) • 방과후 학교(교육부) • 초등 돌봄교실(교육부) 	
공동 사업	중앙- 광역-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 아동발달지원 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 • 영유아예방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 가정위탁운영 • 기저귀·조제분유 	
	중앙-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중앙-광역-기초) 	
지방 사업	2005 지방 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아동자립 장학금 (정착금) • 소년소녀가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운영 • 공동생활가정운영 • 입양지원 등(복권기금-기재부소관) • 결식아동급식 • 결연기관운영 	
	자체 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or 저소득아동 구강보건 교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행사/대체인력/온라인 수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 운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전기요금

자료: 이재원(2017), 복지재정 운영체계 분석연구

아동복지사업에서 중앙-지방 정부 간 분담방식은 특정한 정책방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일상생활지원 사업과 연계한 아동돌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신정 외, 2016).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과 같은 일상돌봄지원서비스는 여전히 중앙 정부 소관이며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다. 전국에 4,000 개소가 넘는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여타의 돌봄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자율성을 다소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반면,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은 아동발달계좌 사업과 연계하여 전국단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아동발달계좌사업은 중앙정부 소관 사업인 반면 퇴소아동장학금지원이나 소년소녀가장 소득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정책대상과 정책목표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급여 형태가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어떤 형태로든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재규정이 필요하다.

(2) 보육 분야

보육 분야의 복지보조 사업은 크게 이용자 지원사업과 공급자 지원사업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후자는 결과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 현재 보육사업 전체 예산 약 5조 3,700억 원 중 총 4조 4,000여억 원이 보육서비스 이용자를 지원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비에 배당되고 있다. 보육료(시간차등형 보육료 포함)로 약 3조 1,000억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약 1조 2,00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표 2-4. 보육 분야 내용 및 분담방식별 사업 현황

사업 분담	담당 기관	보육료 지원 (수당)	보육환경 지원		
			인력/운영 지원	기관인프라 지원	관리/품질향상
국가 사업	보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업관리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실태조사 • 공익제보자신고포상 •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분담	담당 기관	보육료 지원 (수당)	보육환경 지원		
			인력/운영 지원	기관인프라 지원	관리/품질향상
공동 사업	중앙- 광역-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료 • 시간차등형 보육 가정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어린이집 • 어린이집기능보강 • 어린이집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경상) • 육아종합지원센터(자본) • 어린이집교원양성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방 사업	자체 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보육료 • 다자녀가정 차액 보육료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보육교사 수당 •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 어린이집 문화체험비 • 어린이집 난방비 • 공공형 조리원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 영아어린이집 기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센터 운영 • 종사자 소양교육 • 평가인증비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자료: 이재원(2017), 복지재정 운영체계 분석연구

2.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목적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1)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 2)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3)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 5)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6)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7)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8)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1) 3~5세 누리과정, 2) 0~2세반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3) 시간연장 보육료, 4) 긴급보육바우처 지원이다. 누리과정은 만3~5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공통의 보육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표준보육과정과 교육부에서 담당하던 유치원교육과정을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예산을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0~2세반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에게 지급한다.

표 2-5.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지원대상	연령	지원 단가(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			
		종일		야간	24시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만0세반	470,000원	500,000원	470,000원	705,000원
	만1세반	414,000원	272,000원	414,000원	621,000원
	만2세반	343,000원	184,000원	343,000원	514,500원
	만3~5세반	240,000원	-	240,000원	360,000원

주: 기관보육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보육 시에 지원함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

표 2-6. 연장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1:3 / 0세반	1:4 / 영아반	1:15 / 유아반
지원 단가	3,000원	2,000원	1,000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

2) 아동수당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이다. 한편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을 0.98명으로 집계되어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아동수당은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20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대한민국 국적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만7세 생일에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84개월간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또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한다.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고려해 아동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80%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시도 및 시군구 간 부담비율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체 협의한다.

3)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의 목적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이용-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이다.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한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에게 36개월 미만 20만 원, 36개월~만5세(최대 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 원을 지원한다.

표 2-7.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 원	0~11	200천 원	0~35	200천 원
12~23	150천 원	12~23	177천 원		
24~35	100천 원	24~35	156천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 원	36~47	129천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 원
	100천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 원		
	100천 원		100천 원		
	100천 원		100천 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

4) 기타

(1)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3)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월 64,000원) 및 조제분유(월 8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만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지원한다.

(2)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지원대상이 된다. 시간제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720시간 이내 지원한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지원한다.

(3) 시간제보육사업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어린 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 시간당 시간제보육료는 4,000원이지만 해당 영아가 있는 부모는 시간제 보육 이용 시 정부를 통해 시간당 3,000원을 지원받는다.

(4)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

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중 1개 이상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이다. 발달재활과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료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형태이며, 발달재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언어 발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로 차등 지원된다.

발달재활은 장애아동의 언어, 청능 재활을 돕는 사업이며, 언어발달은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의 언어재활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을 지원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에 연 720시간 돌봄서비스와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본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청각 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미숙아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을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을 받은 출생아로 한정한다. 본 사업에서 고려하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이며 다가구와 선천성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와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 치료로 청구로 입원 및 수술비용이다.

청각검사 지원금은 확진검사 결과 상관없이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보청기 지원은 영유아 1명당 131만 원 범위 내에서 1개의 보청기를 지원한다.

선천성대사이상(50여 종) 선별검사는 41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면 비급여 검사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 확진검사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경우에만 7만 원 범위 내로 지원된다.

(6)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기관에 알선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다.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입양가정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만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으로, 입양 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원받는다.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알선비용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은 270만 원, 시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알선비용은 해당 입양기관과 관할 시군구가 협의하여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7)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분된다. 중앙센터는 지방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수행하며 지방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센터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중앙센터는 국비 1,914백만 원을 지원받으며, 시도센터는 평균 327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단, 시군구 센터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2014년부터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8)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보강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신축, 기존 민간 시설 전환,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신축은 부지 확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하며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 및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또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하거나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정원과 시설면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또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를 받아 국공

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에는 시설 형태와 공사견적이 기준으로 개소당 110,000천 원~210,000천 원을 임차비로 지원한다. 기자재 구입비 지원금은 설치비 지원 연도 중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단가는 10,000천 원/개소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증·개축비, 시설 개·보수비, 장비비 등을 지원한다. 증·개축비의 지원 단가는 1,397,000원/㎡으로 개소당 132㎡까지 지원한다. 시설 개·보수비 지원 단가는 30,000천 원/개소당으로 지자체는 필요 정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20,000천 원부터 40,000천 원까지 차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장비비 지원 단가는 2,000원/개소당으로 최대 1,000천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 원 이상인 물품 중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개선을 위한 물품부터 우선 구매해야 한다.

(9)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우수 보육인프라로서의 기능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시설이며 선정된 시설에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보조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3.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재정

1) 복지재정과 지방재정

국가의 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중앙재정은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지역개발,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정병렬, 2006). 지방재정의 세입은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으로 구분된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로 결정된다.

사회복지재정 혹은 복지재정은 국가, 지방정부, 사회보험기관 등이 실시하는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체제로 구조화되어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수립 및 예산 조달을 담당하고 지방정부(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피동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을 집행한다. 복지재정을 주도하는 대표적 제도는 매칭형태의 국고보조금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매칭하는 형태이다. 지방에 이전되는 국고보조금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서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연도별 지방이전의 재원규모에서 2010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지방이전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라는 지방자치의 흐름과 함께 시작되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는 각각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앞선 두 정부에서는 지방이양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부족했으며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설계는 노무현 정부에 들어 시작되었다. 특히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이 대폭적으로 이뤄졌다. 이 정비방안에 의해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사업(5,959억 원), 건설교통부 소관 7개 사업(1,331억 원), 문화관광부 소관 24개 사업(356억 원),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사업(157억 원) 등 13개 부처의 149개 사업(9,581억 원)이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2005년 당시 지방정부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건수 기준으로 44.9%, 금액기준으로 62.2%의 비중을 점할 정도로 높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국고보조사업 138개 가운데 67개 사업(5,959억 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71개 사업(4조 3,409억 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어 건수 기준으로는 48.5%, 금액기준으로는 12.1%가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이양되었다. 장애인복지와 아동복지 분야가 사무 건수나 예산 규모 측면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책임의 이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8. 2005년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대상사업	예산	대상사업	예산
1. 정신요양시설 운영	30,186	35.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759
2. 사회복귀시설 운영	6,189	36.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3,060
3. 공공보건인력 개발	663	37.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1,735
4. 공공보건사업	800	38. 노인시설 운영	100,614
5.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1,000	39. 노인복지회관 신축	3,687
6. 지역봉사사업	1,167	40. 아동시설 운영	65,291
7. 장애인복지관 운영	31,041	41. 결연기관 운영	1,448
8.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2,089	42. 입양기관 운영	143
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901	43.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682
10.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759	44.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717
11. 공동생활가정 운영	1,405	45. 소년소녀가장 지원	3,952
12. 의료재활시설 운영	1,829	46. 가정위탁양육 지원	5,376
13. 장애인체육관 운영	365	47.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00
14.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035	48. 결식아동 급식	10,935
15.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569	49.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100
16.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954	50. 모자복지시설 운영	6,004
17.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378	51.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	335
18.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130	52. 미혼모중간집 운영	279
19. 장애인특별운송사업	374	53. 사회복지관 운영	14,886
20. 편의시설설치시민축진단	354	54.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3,596
21. 청각장애 아동 달팽이관 수술	750	5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80,937
22.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224	56.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56
23.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07,204	57. 업무보조공익요원 인건비	2,609
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4,786	58. 푸드뱅크운영장비 지원	357
25.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171	59. 노숙자 보호	9,276
26.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2,500	60. 쪽방 생활자 지원	388
2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328	61.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2,000
28. 장애인생활시설과유니트	240	62. 지적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	360
29. 경로당 운영	23,597	63.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	304
30. 경로당 활성화	440	64. 노인복지회관 운영	3,709
31. 경로식당 무료급식	7,672	65.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189

대상사업	예산	대상사업	예산
32.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5,854	66. 결연기관 PC 구입비	10
33. 노인건강진단	514	67.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5,000
34. 치매상담센터 운영	292		

표 2-9.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실적

(단위: 건, 백만 원, %)

분야별	지방이양 사업		국고보조 사업		합계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공공부조	3 (33.3)	10,831 (0.3)	6 (66.7)	3,746,904 (99.7)	9 (100.0)	3,757,735 (100.0)
일반사회복지	7 (63.6)	109,141 (77.7)	4 (36.4)	31,365 (22.3)	11 (100.0)	140,506 (100.0)
장애인복지	24 (61.5)	176,050 (61.5)	15 (38.5)	110,184 (38.5)	39 (100.0)	286,234 (100.0)
노인복지	13 (72.2)	162,122 (32.9)	5 (27.8)	330,177 (67.1)	18 (100.0)	492,299 (100.0)
아동복지	11 (64.7)	90,254 (93.1)	6 (35.3)	6,725 (6.9)	17 (100.0)	96,979 (100.0)
모자복지	3 (60.0)	6,618 (39.0)	2 (40.0)	10,345 (61.0)	5 (100.0)	16,963 (100.0)
보건	6 (15.4)	40,838 (28.0)	33 (84.6)	105,210 (72.0)	39 (100.0)	146,048 (100.0)
합계	67 (48.5)	595,854 (12.1)	71 (51.5)	4,340,910 (87.9)	138 (100.0)	4,936,764 (100.0)

이재원·오영삼(2018)은 2005년도 지방이양에서 발생하는 비판의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은 사업을 하향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배제하였다. 즉,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일선 공무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에 분권이 이뤄질 것으로 가정한 문제점을 지녔다.

둘째, 지방이양 된 67개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 정부 간 재정갈등이 심화되었다. 광채기 외(2008)는 분권교부세가 신설될 때, 당초 이양재원 규모를 2004년도 국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미래 재정지출수요를 고려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특히 전체 지방이양사업 건수의 44.9%와 이양금액의 62.2%를 점하고 있는 67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이러한 문제에 심각히 노출되어있다. 분권교부세 수입이 내국세 수입의 증감률과 연동되어 있고 내국세 평균 증감률에 비해 지방이양사업 세출 증가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중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2001~2005년 평균 20.5%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고 이는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야기할 것이다.

실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이양 이후 2005년도부터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다. 2005년도 예산배분 현황에 의하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외의 경우 전체예산액 대비 시 본청 부담은 50.8%에서 56.2%로, 자치구 부담은 8.9%에서 11.3%로 증가했다. 또한 도의 경우 전체 예산액 대비도 본청의 부담은 20.6%에서 16.0%로 감소한 반면, 시군 부담은 26.4%에서 45.6%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2-10. 내국세 및 지방이양사업비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평균
내국세 증가율	3.6	13.3	12.5	5.1	8.3	8.6
총 이양 사업비 증가율	18.0	24.0	17.0	11.0	16.0	17.2
사회복지 사업비 증가율	26.0	22.0	17.0	18.0	19.0	20.5

셋째,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개별 사업단위로 지방이양이 추진되었다.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유의미한 재정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선 ‘프로그램-조직-인력-예산-법률’이 한 번에 지방이양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은 조직과 프로그램이 중앙부처에 남아있고 예산만 지방으로 이양된 형태를 가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위기관처럼 운영될 가능성을 낳았다.

넷째, 국고보조사업을 통제 및 관리하는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의도한 분권혁신의 지방이양과는 다른 모습으로 법률에 근거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으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만 이양받는 징발형 집권체계가 볼 수 있다.

다섯째, 지방이양 이후 사후관리 및 보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일회성 지방이양이다.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에는 정부 간 복지재정관계를 총괄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복지사업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의 관리에만 치중했다.

3) 관련 제도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에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지금까지의 보육 기본계획이 보육서비스 공급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년 12월 26일).

첫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 13%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는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전환 활성화를 위해 매입지원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지원 단가 등 지원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보육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즉,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17년 1만 9000명) 및 대체교사(17년 2,000명)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확대하고, 보육체계 개편과 함께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탄력보육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토록 하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 구성 기준(교사 대 아동비율) 개편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부모 양육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즉,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거점형·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4) 영유아 보육 관련 재원분담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34조의2 및 제36조 등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관련 주체와 중앙과 지방 간의 국고보조사업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간 비용 분담을 살펴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의 국비보조율은 서울 35%, 지방 65%이며,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 수준에 따라 %를 가감한다.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경우 서울 45%, 지방 75%의 비율로 보조하고, 사회복지비지수

20 이상 재정자주도 85 미만인 경우 서울 25%, 지방 55%의 비율로 보조한다. 광역기초간 재원분담기준은 특별·광역시-구 50%:50%, 도-시군 50%:50%로 분담하며,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 수준에 따라 20%p를 가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한편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수당법」 제3조 등에서 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간 비용 분담을 살펴보면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비는 서울 50%, 지방 70%로 보조한다.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경우 서울 60%, 지방 80%의 비율로 보조하고, 사회복지비지수 20 이상 재정자주도 85 미만인 경우 서울 40%, 지방 60%의 비율로 보조한다.⁶⁾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6조의2, 제36조 등에서는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주체와 중앙과 지방 간의 국고보조사업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통사무로 규정한다.

6) 보건복지부(2019), 2019 아동수당 사업안내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정기적·단기적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이용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유사사업인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부모 등의 만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가정 등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세부사업별 국고보조율을 살펴보면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은 50%,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서울 30%, 지방 70%를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시간제보육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7조, 제36조 등에서는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서비스에 대한 주체와 중앙과 지방 간의 국고보조사업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비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은 국비 50%,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경우 서울 20%, 지방 50%를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0조 및 제79조 등에서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주체와 중앙과 지방 간의 국고보조사업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고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30~70%를 적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비용 부담) ①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21조 및 제79조 등에서는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주체와 중앙과 지방 간의 국고보조사업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 2호 라에 따르면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은 광역사무,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과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는 기초사무에 해당한다. 국비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의 기준을 적용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균(2001)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문제에 주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는 방식을 탈피해 대상사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복잡하고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는 보조율을 단순화하여 재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보조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전적으로 국가이해 사무이거나 국가적 사무인 경우 10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지역적 사무이나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 40% 수준의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재훈(2003)은 국고보조사업을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구분하고 정책유형 간 차이(지방자치단체 선호 차이, 국고보조금 설계 차이, 중앙정부 통제 차이, 결과의 차이)가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에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으로 세워진 가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Peterson이 주장한 자치단체의 소극적 복지정책론과는 달리 시도 및 시군구에서 모두 재분배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를 가장 미약하게 인식할 것으로 기대한 것과 달리 재분배정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규제정책의 국고보조금 불용률을 가장 높게 기대하였지만 재분배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영성·이원희(2005)는 경기도 광주시의 사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비율 및 지방비 부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개선방안으로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개편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설정하는 방안, 사업을 국가사무, 국가시책사무, 광역 및 지역파급 사무, 지역사무로 구분하고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용환·김진덕(2009)은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선점 및 지방예산에 대한 의무지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국가사업을 수행

할 때 그 기능과 사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재정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등의 비용부담은 국가가 책임지는 등 국고보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안의 도입·변경 시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해 의무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국가사업 수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 보장, 국가의 공모사업을 통한 지방비부담 완화, 지방소득세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중섭·이동기(2011)는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저소득층 대상 현금급여를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복지수요지표로서 사회보장지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중복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송상훈·류민정(2013)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세분화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행정비용을 유발하므로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이 필요하며 둘째, 국고보조사업이 성과평가가 없이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국고보조율의 설정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수혜범위에 따라 결정하거나 사무성격과 파급효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넷째, 원활한 성과관리를 위해 목표설정과 성과관리를 포괄적 효능을 가지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섯째, 지방사무의 특성을 지닌 사업은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고 비용 또한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박종혁(2014)은 국고보조금의 비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수를 확충할 수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이전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를 자체재원 및 일반재원 중심의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을 100%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송상훈(2014)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 최저한도(national minimum)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율을 평균 75% 이상(‘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복지사업 간 형평성 확보와 지방재정부담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성격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원희(2015)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첨에 근거하는 중앙-지방의 책임성, 기준 보조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보조율이 50%,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이 30%인 점 등 법정 보조율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고보조사업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국고보조사업의 대상, 보조율, 결정과정, 사후관리와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폐지하거나 중앙정부가 사업비의 30% 미만 지원하는 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재원(2015)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자동폐지, 중앙정부의 직접 사업수행 등을 통한 국고보조금 규모의 축소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복성 심사를 통한 유사중복사업의 방지를 제시했고 기준보조율을 50%와 80%로 이원화하여 단순하게 개편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차등보조율 산식을 사후적 상대지표가 아닌 사전적 절대지표로 대체해 산식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중층적 관리체계를 단층화시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배인명(2017)은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한하고 많은 경우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여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적 파급효과가 적은 국고보조사업을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100%가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은 이보다 낮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보조율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재원(2017)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국고보조사업을 도입하고 관련 재정규모를 설정하는 중앙정부의 재정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수와 규모를 정비해야 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보조사업을 이양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규모 보조사업을 포괄보조로 개편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재원배분과 운영방식에 있어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4대 기초복지서비스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기준보조율체계 전면 개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최준규 외(2017)는 경기도 재정구조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재정수요에 따른 운영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이 연구는 경기도의 국비확보 최우선 전략이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전략임을 지적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비 부담을 지적하였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의 사업이 지방재정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표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큰 건설, 도로, 철도사업 등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준보조율을 서울, 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기준보조율을 일정비율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장욱·서정섭(2018)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영세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 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유사한 보조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제도 운영,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운영 및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재원·오영삼(2018)은 지방재정에서 복지재정의 위치와 특성을 분석하고 2005년도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분권에 대한 인식은 1세대 정부 간 재정관계의 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이 중앙정부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2005년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효과에 대한 체감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자체의 자율성은 높아지지 않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자원충분성, 예산효율화 그리고 업무간소화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분권을 위한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인센티브에 기초한 정부 간 성과계약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둘째, 개별 사업단위로 지방이양을 추진했던 2005년도 방식에서 탈피해 상위 수준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복지보조금 준칙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분권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표 2-1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문제점	개선방안
이창균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보조율 불명확 및 미준수 등에 의한 지방비 부담 • 차등보조율제도의 미실시 • 지방비 부담 협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 및 유형별 기준 보조율 설정 • 차등보조율 적용대상사업 및 적용기준 설정 • 지방비협의위원회 확대 개편
유영성· 이원희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내시 지연 및 잦은 변경내시 •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활용 • 지방비 부담액 임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 구속성 재원의 개선 • 지방비 부담 사전협의 •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개편
이용환· 김진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압박 및 자율성 침해 • 지방예산기능의 교란 • 지방자치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재정립 • 법·제도적 의무규정의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선택권 보장 • 기능이양에 부합하는 자주재원 신설
송상훈· 류민정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경직성 • 국가·지방·민간사업 등의 구분 및 보조방식 • 지원방식 특성의 미반영 •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문제 • 지방재정부담에 대한 고려 미흡 • 성과관리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사업 정책방향 재설정 • 국고보조사업의 정비와 기한설정 • 보조율의 정비 • 성과평가제도의 도입 • 특정재원의 축소와 자체재원의 확충

연구자	문제점	개선방안
박종혁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정해진 기준보조율 미준수 • 보조율의 타당성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재정립 •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 개편
송상훈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 확대와 지방비 부담의 증가 • 정률보조방식임에도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방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적 지원 • 유사 및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 •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의 한계 • 성과관리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또는 불필요한 사업의 통합·폐지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평균 75% 이상으로 인상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확대
이원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기준이 없는 기능배분과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법정 보조율 • 민간의 도덕적 해이 • 유사 및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일부 지역에 혜택이 한정된 사업 폐지 • 보조율의 단순화: 일부 사업에 대해 100% 지방사업, 국가사업으로 구분 • 사업대상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 강화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이재원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중 • 유사중복사업 • 임의적인 기준보조율 • 합리적이지 못한 차등보조율 • 수직적인 보조금 관리체계에 따른 비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규모의 축소 • 유사중복사업 방지 • 기준보조율체계 재정립 • 차등보조율 산식의 합리적 개편 • 보조금 재정관리체계의 정립
배인명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자율성의 제한 •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여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사무에 대한 보조 정비 및 축소 •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정비
이재원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및 중앙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도입하는 재정관행 • 관련 재원규모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재정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선호 보조사업의 일괄 지방이양 • 소규모 보조사업을 포괄보조로 개편 • 기초복지 보조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제도 개편 • 보조사업 일몰제 운영 • 사업성과 공시 및 사업실명제 운영
최준규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확보 최우선 전략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사업) •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의 증가 • 국비사업의 확보와 관리·집행 이원화 • 기준보조율 적용 근거의 미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의 집행률, 도비부담률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한 일몰제 도입 • 연정을 통한 의회 자원의 적극적 활용 • 장기적 재정분권과 연계한 검토 • 기준보조율 세분화

2.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영성·이원희(2005)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개별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를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수혜자를 기준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기준보조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중앙정부의 자의성을 통제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제고한다고 하였다.

이중섭·이동기(2011)는 국가 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성,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는 국고보조사업(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을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내용의 동질성과 전국적인 형평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대한 간접 경비의 지원은 국고보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송상훈(2013)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자치단체 간, 사업 간 상이하여 자치단체 간 재정부담의 불공평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로 서울과 지방에 다른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장촉진지역에는 별도로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육사업은 최소국가수준(national minimum)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책임성이 요구되나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보조율이 낮아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사업의 평균 보조율은 49%로 기초노령연금 75%, 기초생활급여 79%, 노인돌봄서비스 68%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송상훈·류민정(2013)은 국가최소한도(national minimum)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이 50% 이하(전국적 파급효과를 지닌 50개 사업 가운데 32개 사업)로 설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율을 평균 75% 이상(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세 확대를 통해 자체재원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중앙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보육사업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업(기초노령연금, 기초생

활급여)에 비해 보조율이 매우 낮고(평균 49%) 예산 증가속도가 빨라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고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의 운영 역시 전국적인 범위에서 기획 및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00%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서정섭(2016)은 중앙정부의 임의적인 기준보조율 조정에 따른 지방비 가중 문제에 주목하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상사업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법령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없이 전국·통일적으로 계속 실시하는 연 지방비 부담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판단기준으로 1) 사업성격 측면, 2) 사업규모 측면, 3) 사업계속성 측면을 제시하였다. 사업성격 측면에서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사업(공공부조 등) 및 국가 의무지출 사업과 같이 집행과정에서 재량권이 거의 없고 사업규모 측면에서 지방비 부담이 200억 원 이상이며 사업계속성 측면에서 기초연금과 같이 매년 시행된다.

이재원(2016)은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복지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의 적정성과 체계성을 지적하였다. 복지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5~10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계별 차이에 대한 유의미한 원칙이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부문의 기준보조율은 80%와 70%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 노인, 보육, 아동청소년, 여성가족부문의 보조율은 주로 50%인 것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서울에 대한 복지사업의 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독특한 관행이 고착되었다고 지적했다. 둘째, 차등보조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기초생활보장과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 10%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비 비중이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등보조율의 차등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자체 간의 경쟁적인 복지사업 확대를 우려해 새로운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재원(2019)은 국고보조금 구조조정 방안으로 정부 간 재정사업의 빅딜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하향식 접근방식이다. 예를 들어, 복지사업 가운데 보육과 관련된 보조사업 5조 원 규모를 지방으로 이양해 영유아보육 기능을 지방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2-12.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유영성·이원희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개별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로 개편 •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를 법령에 규정 •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수혜자를 기준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기준보조율을 설정
이중섭·이동기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국고보조사업(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을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 • 사회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대한 국고보조를 상향
송상훈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송상훈·류민정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75% 이상(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상향 • 보육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의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율 100% 적용
서정섭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 •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판단기준 제시
이재원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5~100%까지 8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계별 차이에 대한 유의미한 원칙이 없음 •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기초생활보장과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해 10%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비 비중이 2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등보조율의 차등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재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사업의 하향식 접근방법 제시 • 예를 들어, 보육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 5조 원 규모를 지방으로 이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3

주요 국가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의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제3장

주요 국가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

제1절 미국

1. 국고보조사업 개요

1) 연방보조금 연혁

미국의 보조금은 법이 정하는 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타 기관(non-federal entity)으로 이전되는 자원(anything of value)을 의미한다(Grants.gov, 2017).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은 18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보조금이 공동의 복지 증진(promote the general welfare)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뉴딜시대(New Deal Era)부터이다(박세경, 2009). 1930년대 미국을 덮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는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후 존슨 대통령이 선언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및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추진은 1960년대 말까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240억 달러로 크게 증가시켰다. 1960년대 초 70억 달러 규모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며, 이 과정에서 100개 이상의 보조금을 신설하였다.

연방보조금 정책이 지금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연방보조금 및 협력적 합의법(The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이 1977년 제정되면서 연방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계약(contracts), 협력적 합의(cooperative agreements)와 보조금(grants) 등의 방식을 규정하였다(grants.gov, n.d.). 계약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계약을 통해 서로 무언가를 얻는 관계를 의미하지만, 보조금이나 협력적 합의는 연방정부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예산관리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연방보조금이 지원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만 쓰이도록 하는 지침을 1978년에 마련하였다. 1970년대 이후 연방보조금의 준비와 집행은 정책형성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의회가 보조금과 관련한 법과 규제를 정하면, 예산관리처가 속해있는 대통령실(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은 행정명령과 지침을 통해서 보조금 관련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는 예산관리처의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출을 준비한다.

표 3-1. 미국 연방보조금 정책수립 과정

단계	주요 역할 (Key Roles)	법체계 (Legal Hierarchy)	예시 (Example)
1	의회는(보조금으로 사용할) 기금을 책정하여 연방정부 부처에 제공한 뒤 보조금과 관련한 법을 수립	법조항(Statues) 규제조항(Regulations)	의회는 정보법(DATA Act)을 수립하고 모든 연방지출 데이터가 한 웹사이트에서 접속가능하도록 할 것을 명령함
2	대통령실은 법안 집행을 위한 지침을 수립함	행정명령 (Executive Orders) 각서(Memoranda) 회람(circulars)	대통령실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보법을 어떻게 집행할지 결정함
3	보조금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는 지침에 근거하여 행정 정책을 마련	행정정책 및 과정 (Administrative Policies & Procedures)	각 정부부처는 대통령이 제시하는 지침에 맞춰 내적/외적 정책과 과정을 조정함

자료: <https://www.grants.gov/documents/19/137715/infographic-making-grant-policies.png>

현재 연방보조금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2002년에 설치된 Grants.gov의 프로그램 관리실(Program Management Office)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 Grants.gov는 1,000개가 넘는 연방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해마다 5,0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웹사이트이다. 이 웹사이트는 보조금 관리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개별 보조금의 운영방식을 통일하여 지원 및 배부 과정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보조금 접수 처리 및 집행과정을 빠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제도

현재의 연방보조금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예산관리처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제도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Grants.gov, n.d.). 연방보조금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법률과 행정명령(지침)은 다음과 같다.

표 3-2. 미국 연방보조금 관련 법률 및 행정명령

구분	연도	법률 및 행정명령
법률	1977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1995	Lobbying Disclosure Act
	1996	Single Audit Act Amendments of 1996
	1999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2006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200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14	DATA Act
행정명령 (지침)	2011	Executive Order 13576
	2014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niform Guidance

이러한 법률과 행정명령(지침)은 연방정부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연방 재정지원관리 개선법(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연방보조금 제도의 변천과정을 검토하였다(GAO, 2013; Grants.gov, n.d.; 한승희, 2017).

1999년의 「연방 재정지원관리 개선법」을 통해 시작된 연방보조금 개혁은 2006년까지 연방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 법률은 연방보조금을 운영하는 정부부처 간의 조정과정을 개선하여 보조금 제도의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한승희, 2017).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연방보조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금 정책 위원회(Grants Policy Committee, GPC)가 설치되었으며, 2002년에는 연방정부 고위

관리자로 구성된 보조금 집행 위원회(Grant Executive Board, GEB)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2003년에 신설된 Grants.gov 홈페이지의 기획과 감독 등을 담당하였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방기금 책임성 및 투명성법(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의 제정을 시작으로 연방보조금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이 추진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연방기금에 대한 사용 정보가 웹페이지를 통해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USAspending.gov라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 2007년 이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009년에 「미국 경기부양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기존의 보조금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특별보조금처럼 주어진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Federal Stimulus Package)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웹사이트인 Recovery.gov와 FederalReporting.gov라는 웹페이지를 운영하게 하였다. 그리고 경기부양법과 관련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복 책임성 및 투명성 위원회(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를 설치하였다. 2011년에는 전체 연방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성 및 투명성 위원회(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 GATB)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예산관리처가 정책메모(M-17-26)를 통해 보조금 정책 위원회(GPC)와 보조금 집행 위원회(GEB)를 하나로 통합하여 연방지원 개혁 위원회(the Council on Financial Assistance Reform, COFAR)를 설치하였다.

2011년에 설치된 책임성 및 투명성 위원회(GATB)와 연방지원 개혁 위원회(COFAR)의 연구는 2014년에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법(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DATA Act)」의 제정을 야기하였다. 이 법률은 예산관리처 지침(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niform Guidance)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연방보조금 제도를 설계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14년에 제정된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법」은 2006년 제정된 「연방기금 책임성 및 투명성법」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연방보조금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의회는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예산관리처(OMB)로 하여금 연방보조금 지출 데이터와 관련한 범정부 보고기준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법률의 시행은 2014년에 예산관리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시작하여, 2017년에 시범사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실

시되었다. 2014년 5월에 법률이 통과된 후, 2014년 12월에 예산관리처가 연방보조금을 위한 공통 행정요건, 비용 원칙, 회계감사 요건(Unifor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Cost Principles, and Audit Requirements for Federal Awards, Uniform Guidance)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침의 오류를 수정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예산 낭비 및 사기 등에 초점을 맞춘 회계감사요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의 부처들이 보조금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수령인들에게 비용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5년 5월에 보건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을 파트너로 하는 초기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보조금 데이터를 저장할 공통 온라인 라이브러리(Common Data Element Repository, CDER)를 설치하고, Grant.gov 웹사이트 내에 보조금 학습 센터(Grants Learning Center) 페이지를 설치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집된 운영 결과와 사용자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의회는 「보조금 관리 및 효율성법(Grants Oversight and New Efficiency Act, GONE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연방정부에게 집행되지 않고 개별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연방보조금 재원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지급기간이 종료된 보조금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예산관리처는(OMB)는 연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계속 새로운 정책메모를 발표하고 있다. M-17-26 연방정부부처의 부담경감을 위한 예산관리처 정책메모 수정 및 폐지 방안(Reducing Burden for Federal Agencies by Rescinding and Modifying OMB Memorandum, 2017)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업무를 복잡하게 하는 연방규제를 찾아내어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M-18-18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소액결제 및 단순구매제한 제도 변화 실시(Implementing Statutory Changes to the Micro-Purchase and the Simplified Acquisition for Financial Assistance, 2018)는 소액결제 규모의 규모를 \$10,000로 단순구매 규모를 \$25,000로 증가시켜 보조금 업무의 행정처리 부담을 경감시켰다. M-18-24 보조금 수령인의 행정보고 부담 경감 전략(Strategies to Reduce Grant Recipient Reporting Burden, 2018)은 DATA ACT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 및 우수 사례를 문서화하였다.

3) 연방보조금 유형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목표는 공공서비스 제공, 경제 활성화, 일반 시민에 대한 지원 등으로 다양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들도 혁신적인 연구 지원, 재난이나 경제 위기로부터의 극복, 기반시설 건설 등으로 다양하다. 연방보조금 관련 사업은 연방정부의 국내 지원 사업 목록(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CFDA)⁷⁾을 통해서 제공된다.

보조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나 포괄보조금(block grant), 재량보조금(discretionary grant), 의무보조금(mandatory grant), 공식보조금(formula grant) 등의 4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다. 첫째, 포괄보조금은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능(broadly defined function)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이다.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보조금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개념이다. 즉, 재량보조금처럼 특정한 세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포괄보조금으로 명명하고 있다. 목표가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만큼 보조금 수령기관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주택 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지역사회 개발 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프로그램이 있다.

둘째, 재량보조금은 보조금 수령자의 업무수행 재량(merit and eligibility)을 고려한 경쟁심사과정을 통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제공 기관에 따라서 심사 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별한 유형의 연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서류들은 먼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한 철저한 동료 심사(peer review)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도 보조금 지원 서류를 검토하며, 동료 심사와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령인을 추천하게 된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서류의 품질과 제안된 사업의 기대효과를 고려한 최종 심사결정을 내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7) www.cfda.gov를 통해서 제공되었으나, 현재 beta.sam.gov로의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다(접속일: 2020년 4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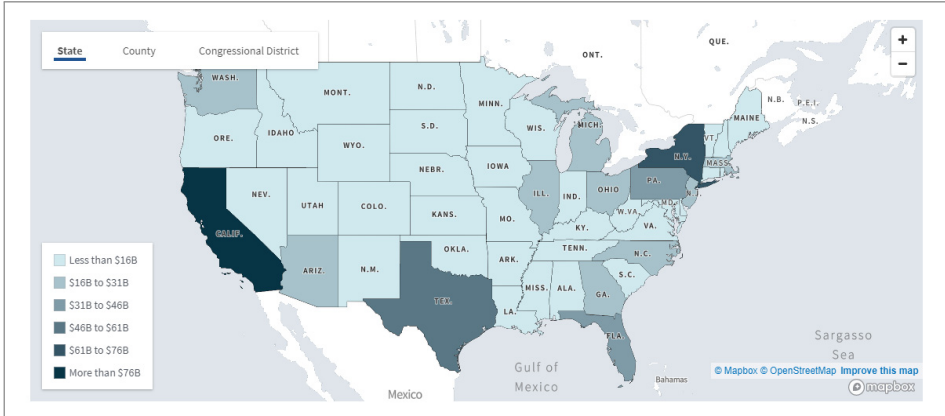
셋째, 의무보조금은 법률이 정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보조금이다. 의무보조금과 관련된 법률(authorizing statute)은 ① 보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② 보조금 수령을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지, ③ 얼마만큼의 보조금이 제공될지를 규정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등이 있다.

넷째, 공식보조금은 의무보조금의 일종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계산식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료 보장제도(Medicaid)는 일정한 계산식을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결정한다.

4) 연방보조금 현황

연방보조금은 2011년 5,701억 달러에서 2013년 5,249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총 지출예정액이 7,665억 달러이다. 지역별 연방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각 주정부 인구나 연방보조금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는 3천 9백만 명이며, 연방보조금은 877억 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하였다. 그 다음으로 뉴욕 주(711.7억 달러, 1천 900만 명), 텍사스 주(507.8억 달러, 2천 9백만 명), 펜실베이니아 주(332.7억 달러, 1천 3백만 명), 플로리다 주(314.5억 달러, 2천 1백만 명)의 순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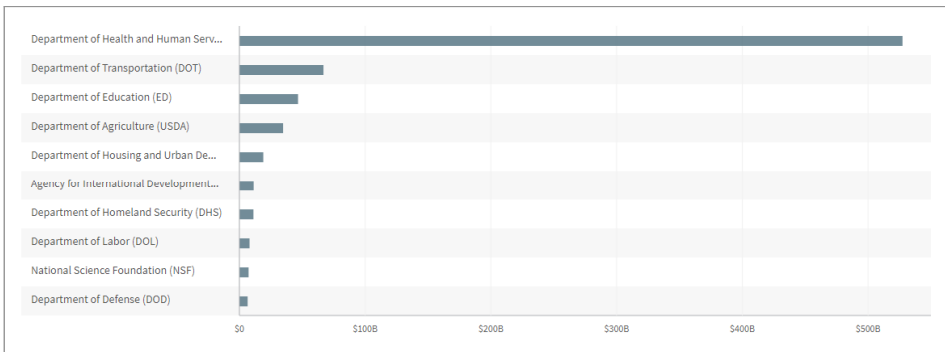
그림 3-1. 지역별 연방보조금 규모(FY2019)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2019년 기준 부처별 연방보조금 규모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후생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보건후생부는 5,27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부(669억 달러)와 교육부(466억 달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3-2. 부처별 연방보조금 지출 규모(FY2019)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보건후생부 산하 기관들 중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4,12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하여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지출한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보다 6배 이상 큰 규모이다.

표 3-3. 보건후생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구분	연방보조금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 412,515,524,624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61,280,210,310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 28,925,609,627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 9,937,180,272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5,613,691,088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교통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출하는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도 보건후생부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지출하는 보조금의 약 1/9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교통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구분	연방보조금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45,509,632,726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 15,355,395,929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3,420,675,475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 1,136,436,544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790,725,426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농무부 산하 기관 중 Food and Nutrition Service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매우 적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표 3-5. 농무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구분	연방보조금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45,509,632,726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 15,355,395,929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3,420,675,475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 1,136,436,544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790,725,426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기관 중 Assistant Secretary for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84억 달러)와 Assistant Secretary for Public and Indian Housing(846억 달러)이 많은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주택도시개발부 산하 기관의 보조금 집행 순위(FY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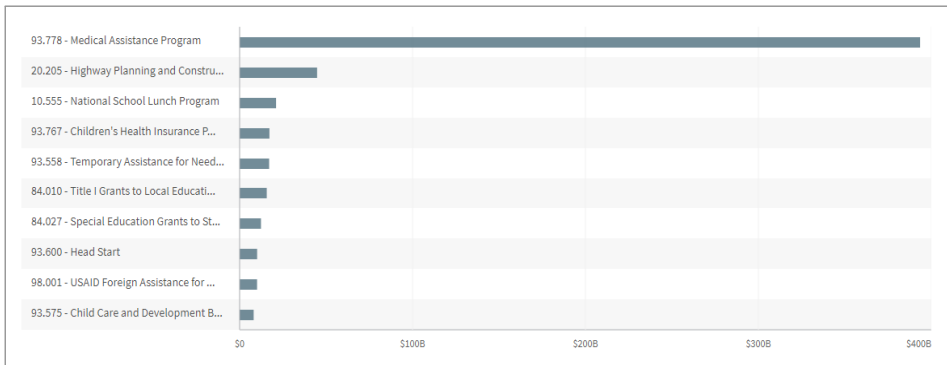
구분	연방보조금
Assistant Secretary for Community Planning and Development	\$ 9,843,880,368
Assistant Secretary for Public and Indian Housing	\$ 8,464,549,764
Office of Lead Hazard Control and Healthy Homes	\$ 448,952,185
Assistant secretary for Housing - Federal Housing Commissioner	\$ 187,966,035
Assistant Secretary for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 66,182,446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2019년 기준 국내 지원 사업 목록(CFDA)에 수록된 프로그램별 연방보조금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지원 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Program, 사업번호 93.779)은 의료 보장제도(Medicaid)를 의미하며, 보조금 규모는 3,935.6억 달러로 보건후생부가 지출하는 총 보조금의 74.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교통부의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 프로그램(Highway Planning and Construction, 사업번호 20.205)이 448.0억 달러(교통부 보조금의 67.0%), 농무부의 스쿨런치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사업번호 10.555)이 210.8억 달러(농무부 보조금의 45.2%)로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 보건후생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중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사업번호 93.767)과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사업번호 93.558)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프로그램별 연방보조금 지출 규모(FY2019)



자료: usaspending.gov 홈페이지

2.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

1) 보건후생부 연방보조금 프로그램

(1) 의료지원 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Program)

연방보조금 프로그램 중 상위 10개 사업 내에 보건후생부 프로그램이 3개(의료지원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의료지원 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Program, 사업번호 93.779)⁸⁾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지급되나, 계산식에 의해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식보조금의 일종이다. 현금성 지원의 수혜자, 어린이, 임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 그리고 프로그램이 정하는 다른 수혜 계층을 대상

8) <https://beta.sam.gov/fal/69e4a37958b94a409b3a4fc4ef24b141/view>.

으로 주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정을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보조금 총액은 2018년 4,414억 달러에서 2020년(추정) 4,613억 달러로 약 4.5% 증가하였다. 주정부는 분기별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하며, 보조금 수혜자인 개인은 주정부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는다. 주정부의 보조금 신청은 최장 60일 내에 결정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수혜자들은 즉각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으며 조건이 유지되는 한 제한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 프로그램 관련 지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담률⁹⁾(Medicaid's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FMAP)은 각 주의 평균 소득과 미국 전체의 평균소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며, FMAP의 최대값은 83%이고 최소값은 50%로 법률¹⁰⁾로 규정되어 있다. 부담률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의 마지막에 0.45를 곱하는 이유는 주정부 평균 소득이 미국 평균 소득과 같은 주정부가 전체 비용의 45%(연방정부가 55%)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정부 평균소득에 제곱을 취한 이유는 평균소득이 낮은 주정부들도 더 높은 FMAP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표 3-7.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주정부 부담 비율 공식

$$FMAP_{state} = 1 - ((\text{주정부 평균 소득})^2 / (\text{국가 전체 평균 소득})^2 * 0.45)$$

9) Mitchel, Alison(2018). Medicaid's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FMA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0) Social Security Act §1905.

표 3-8.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 부담률 변화(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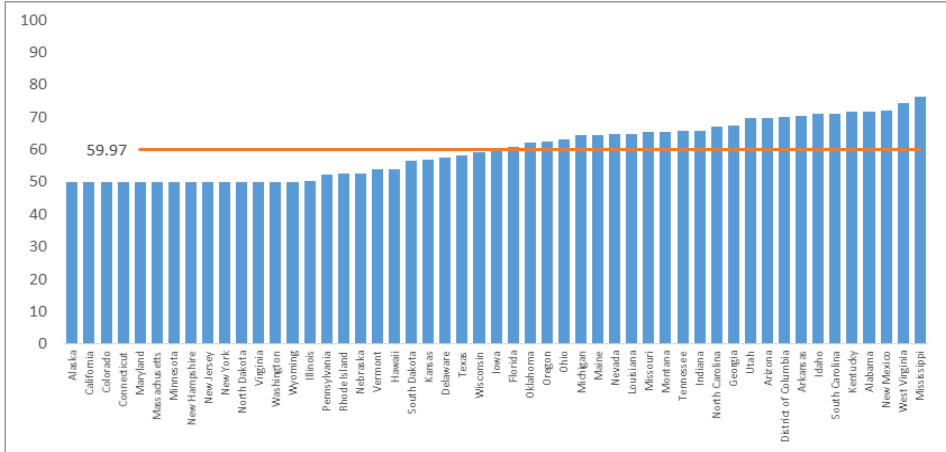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18~19)
Alabama	68.12	68.99	69.87	70.16	71.44	71.88	0.44
Alaska	50	50	50	50	50	50	0
Arizona	67.23	68.46	68.92	69.24	69.89	69.81	-0.08
Arkansas	70.1	70.88	70	69.69	70.87	70.51	-0.36
California	50	50	50	50	50	50	0
Colorado	50	51.01	50.72	50.02	50	50	0
Connecticut	50	50	50	50	50	50	0
Delaware	55.31	53.63	54.83	54.2	56.43	57.55	1.12
District of Columbia	70	70	70	70	70	70	0
Florida	58.79	59.72	60.67	61.1	61.79	60.87	-0.92
Georgia	65.93	66.94	67.55	67.89	68.5	67.62	-0.88
Hawaii	51.85	52.23	53.98	54.93	54.78	53.92	-0.86
Idaho	71.64	71.75	71.24	71.51	71.17	71.13	-0.04
Illinois	50	50.76	50.89	51.3	50.74	50.31	-0.43
Indiana	66.92	66.52	66.6	66.74	65.59	65.96	0.37
Iowa	57.93	55.54	54.91	56.74	58.48	59.93	1.45
Kansas	56.91	56.63	55.96	56.21	54.74	57.1	2.36
Kentucky	69.83	69.94	70.32	70.46	71.17	71.67	0.5
Louisiana	62.11	62.05	62.21	62.28	63.69	65	1.31
Maine	61.55	61.88	62.67	64.38	64.34	64.52	0.18
Maryland	50	50	50	50	50	50	0
Massachusetts	50	50	50	50	50	50	0
Michigan	66.32	65.54	65.6	65.15	64.78	64.45	-0.33
Minnesota	50	50	50	50	50	50	0
Mississippi	73.05	73.58	74.17	74.63	75.65	76.39	0.74
Missouri	62.03	63.45	63.28	63.21	64.61	65.4	0.79
Montana	66.33	65.9	65.24	65.56	65.38	65.54	0.16
Nebraska	54.74	53.27	51.16	51.85	52.55	52.58	0.03
Nevada	63.1	64.36	64.93	64.67	65.75	64.87	-0.88
New Hampshire	50	50	50	50	50	50	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18~19)
New Jersey	50	50	50	50	50	50	0
New Mexico	69.2	69.65	70.37	71.13	72.16	72.26	0.1
New York	50	50	50	50	50	50	0
North Carolina	65.78	65.88	66.24	66.88	67.61	67.16	-0.45
North Dakota	50	50	50	50	50	50	0
Ohio	63.02	62.64	62.47	62.32	62.78	63.09	0.31
Oklahoma	64.02	62.3	60.99	59.94	58.57	62.38	3.81
Oregon	63.14	64.06	64.38	64.47	63.62	62.56	-1.06
Pennsylvania	53.52	51.82	52.01	51.78	51.82	52.25	0.43
Rhode Island	50.11	50	50.42	51.02	51.45	52.57	1.12
South Carolina	70.57	70.64	71.08	71.3	71.58	71.22	-0.36
South Dakota	53.54	51.64	51.61	54.94	55.34	56.71	1.37
Tennessee	65.29	64.99	65.05	64.96	65.82	65.87	0.05
Texas	58.69	58.05	57.13	56.18	56.88	58.19	1.31
Utah	70.34	70.56	70.24	69.9	70.26	69.71	-0.55
Vermont	55.11	54.01	53.9	54.46	53.47	53.89	0.42
Virginia	50	50	50	50	50	50	0
Washington	50	50.03	50	50	50	50	0
West Virginia	71.09	71.35	71.42	71.8	73.24	74.34	1.1
Wisconsin	59.06	58.27	58.23	58.51	58.77	59.37	0.6
Wyoming	50	50	50	50	50	50	0
전년 대비 FMAP 비율이 증가한 주	14	21	22	25	25	23	
전년 대비 FMAP 비율이 변화없는 주	14	12	12	13	13	14	
전년 대비 FMAP 비율이 감소한 주	22	17	16	12	12	13	

자료: Mitchell(2018)

2019년 기준 주정부별 FMAP 부담률의 평균은 59.97이며, 최대값과 최소값은 76.97(미시시피주)와 50.00(알래스카 주 외 13개 주정부)이다.

그림 3-4. 주정부별 FMAP 부담률(FY2019)



자료: Mitchell(2018)

(2)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은 CFDA 프로그램들 중 4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지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제공되는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보험 미가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을 유지·확장하는 것으로, 주정부에 따라 저소득 임신부나 합법적 이민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각 주정부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가지 방법(기존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독립적인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보조금 총액은 2018년 173.1억 달러에서 2020년(추정) 183.7억 달러로 약 6.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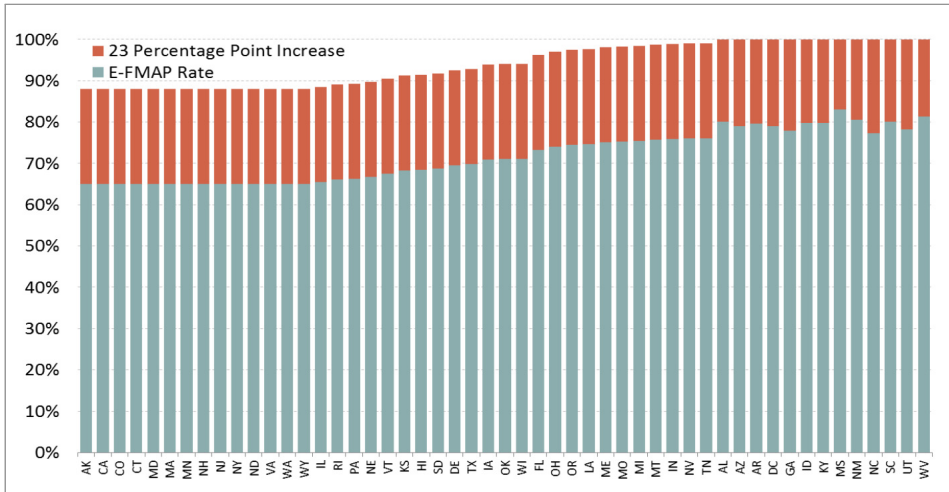
50개 주정부 및 워싱턴 D.C.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은 FMAP에 기반한 Enhanced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¹¹⁾(E-FMAP)에 의해서 각 주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FMAP 기준 주정부의 부담률을 30% 줄여주는 것을 목표¹²⁾로 하며, E-FMAP는

11) Mitchell, Alison(2018). Federal Financing for 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y 23.

12) FMAP가 60%인 주의 경우, 연방정부는 주의 부담 40% 중 30%, 즉 12%, 더한 72%를 E-FMAP로

65%에서 85% 사이에서 결정된다.¹³⁾ 그러나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 재인증법(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등에 인해서 매년 다른 금액의 예산과 예외 규정 적용이 이루어져 모두에게 적용될 계산식을 도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개혁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L. 111-148, as amended)」의 경우 2006년부터 2019년 사이에 E-FMAP를 연방 보조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괄적으로 23%p 상향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2019년까지 1년 연장하기도 했지만, 2020년에는 11.5%포인트로 바꾸는 등 잦은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이러한 인상분은 특정 서비스(통역, 행정지원 등)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23%p 상향 조정 규정은 법률로 정해진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 비율을 88%에서 100%로 높였다. 아래 그림에서 하늘색은 E-FMAP의 기준율이고, 주황색은 23%p 증가분을 나타낸다.

그림 3-5. 주정부별 E-FMAP 비율(FY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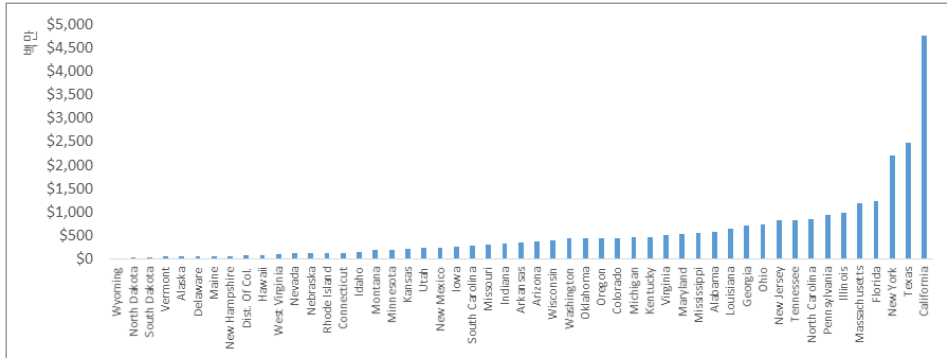
자료: Mitchell(2018)

부담하게 된다.

13) §2105(b) of the Social Security Act(SSA).

2018년 상반기 기준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보조금 중 최소는 와이오밍 주가 받은 \$2,254,713이고, 최대는 캘리포니아 주가 받은 \$475,776,383이다.

그림 3-6. 주정부별 어린이 대상 의료보장 프로그램 보조금 규모(FY2018 상반기)



자료: CHIP Funding Allotments(Medicaid.gov, n.d.)

2) 아동 대상 연방보조금 프로그램

(1) 아동 대상 사회복지제도 개요

미국의 아동복지는 민간 기관과 몇몇 주정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시작은 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노동의 근절이었다. 미국 이주 초기인 1700년대부터 고아를 위한 시설들이 설립되었으며, 1854년에는 동부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다른 지역의 가정으로 이송하는 고아열차(Orphan train)라는 것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1904년에는 아동노동 근절을 목표로 국가 아동노동위원회(National Child Labor Committee)가 설립되었으며, 1909년에는 양육을 위한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the Care of Dependent Children)가 개최되었다.

1912년에는 태프트 대통령에 의해 아동과 아이를 가진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동국(U.S. Children's Bureau)이 설립되었다. 초기 아동국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① 영아 사망 및 임산부 사망 방지, ② 아동노동 근절, ③ 고아원 지원, ④ 청소년 비행 방지 및 소년 법정, ⑤ 가족의 경제보장, ⑥

아동학대 및 방임 방지, ⑦ 양호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926년에 아동국이 발표한 자녀가 있는 엄마들을 위한 공공지원(Public Aid to Mothers with Dependent Children)은 아동복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였다. 이는 1935년에 수립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부양아동에 대한 지원부서(the Aid to Dependent Children Section)를 추가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국을 통해 각 주정부에 지급 되는 보조금이 1930년 33만 달러에서 1930년대 말에는 1천 1백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46년에는 아동국의 소속이 노동부에서 사회보장국이 소속되어 있던 연방안전청(Federal Security Agency)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어린이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했던 아동국에서 도움이 필요한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1953년에는 연방안전청의 해체에 따라 건강, 교육,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소속이 되었다.

1962년에 통과된 공공복지 수정안(Public Welfare Amendments of 1962)은 「사회보장법」의 아동복지 규정(Title V)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안은 위탁가정 아이들(children in foster care)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에게 대응 교부금(matching grant)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주정부는 위탁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계획, 예를 들어 보육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집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와 공공지원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행정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4년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추진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은 아동복지 보조금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medicaid)와 헤드스타트(headstart)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하였다. 이후 아동국은 아이들의 입양, 학대 및 방임 방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보조금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¹⁴⁾.

14) 1978년에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및 입양 개혁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doption Reform Act)」의 제2장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입양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들의 입양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펀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984년에는 「아동학대 방지 연방 도전 보조금법(Child Abuse Prevention Federal Challenge Grants Act)」을 제정하여 보조금을 통해 각 주정부로 하여금 관련 기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2) 빈곤 아동 현황

2018년 기준 미국의 총 인구는 약 3억 2천 7백 만 명으로 추산되며,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약 7천 3백 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2.4%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의 추세를 보면 18세 미만 아동인구와 전체 인구대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아동인구의 비율은 2011년 23.7%에서 2018년 22.4%로 1.3%p(약 50만 명) 감소하였다.

표 3-9. 18세 미만 아동인구 및 비율(2011~2018)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인구(천명)	311,580	313,874	316,057	318,386	320,742	323,071	325,147	327,167
아동인구(천명)	73,908	73,697	73,569	73,565	73,619	73,649	73,583	73,399
및 비율	23.7%	23.5%	23.3%	23.1%	23.0%	22.8%	22.6%	22.4%

자료: Kids Count Data Center(n.d.), <https://datacenter.kidscount.org/>

아동복지의 주요 대상이 되는 18세 미만 빈곤 아동은 차상위층, 빈곤층, 극빈층으로 나눌 수 있다. 2018년 기준 차상위층 아동은 약 2천 1백만 명으로 전체의 29%, 빈곤층 아동은 약 1천 3백만 명으로 전체의 18%, 극빈층 아동은 약 570만 명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다. 18세 미만 빈곤 아동은 2011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표 3-10. 빈곤 수준별 18세 미만 아동인구 및 비율(2011~2018)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차상위층	25,043 (34%)	25,081 (35%)	24,747 (34%)	24,370 (34%)	23,493 (32%)	22,494 (31%)	21,647 (30%)	21,070 (29%)
빈곤층	16,387 (23%)	16,397 (23%)	16,087 (22%)	15,686 (22%)	15,000 (21%)	14,116 (19%)	13,353 (18%)	12,998 (18%)
극빈층	7,336 (10%)	7,354 (10%)	7,188 (10%)	6,949 (10%)	6,618 (9%)	6,204 (9%)	5,883 (8%)	5,716 (8%)

주: 연방정부가 정하는 저소득 기준에 속하는 빈곤층(100%)을 기준으로 차상위층은 저소득 기준 소득의 150% 미만의 소득을, 극빈층은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아이들을 의미함

자료: Kids Count Data Center(n.d.), <https://datacenter.kidscount.org/>

2018년 기준으로 부가수입 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현금성 공공지원(cash public assistance income), 영양 지원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SNAP) 등과 같은 정부의 공공지원을 받는 가정의 아이들은 약 1천 784만 명으로 전체 18세 미만 아동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1천 433만 명(19%)이었던 수급대상 아동은 2013년 2천 130만 명(29%)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11. 정부 공공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아동인구 비율(2011~2018)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동인구	14,332 (19%)	19,714 (27%)	21,307 (29%)	20,753 (28%)	20,336 (28%)	19,617 (27%)	18,580 (25%)	17,842 (24%)

자료: Kids Count Data Center(n.d.), <https://datacenter.kidscount.org/>

(3) 아동복지 프로그램 사례

미국의 아동대상 복지정책은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부가수입보장제(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 등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부조(Medicaid, CHIP), 영양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SNAP, School Lunch) 등의 현물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¹⁵⁾ 이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과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Special Education Grants to States)을 중심으로 아동복지 관련 연방보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정부로 하여금 부양 자녀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금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935년부터 실시된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부양아동가족보조제도(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수급자 규모 증가와 현금급여의 부작용

15)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pWise=sub&pWiseSub=B12>).

대한 우려를 불러오면서, 이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조금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6년 「복지개혁법(the 1996 welfare reform law, P.L. 104-193)」에 근거하여 실시된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은 수급자격이 있는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현금을 지원한 부양 아동가족보조제도(AFDC)와 달리 주정부로 하여금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하고 자동 수급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401조(Sec. 401. [42 U.S.C. 601])의 (a)항은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빈곤가정에 있는 부양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이나 친척의 가정에서 보호·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직업준비, 근로,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궁핍한 부모들이 정부 복지혜택에의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셋째, 혼외 출산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넷째, 양부모 가정의 구성과 유지를 장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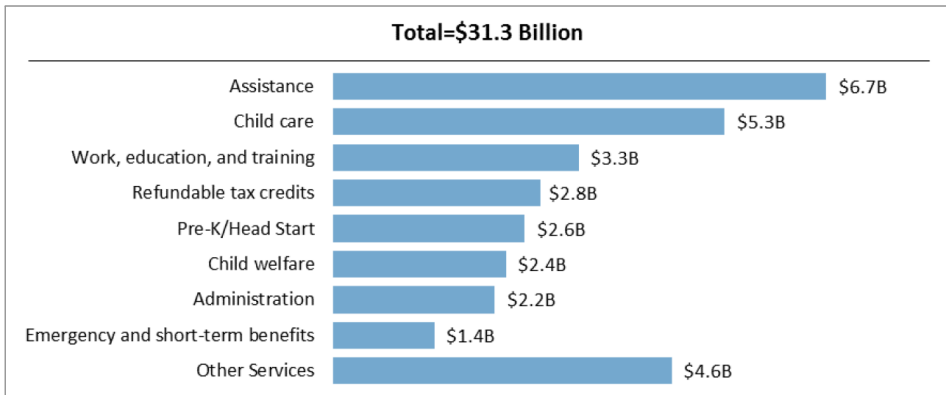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은 기본 포괄보조금(Basic block grant), 경제위기와 연관된 임시 기금(recession-related contingency fund), 그리고 경쟁을 통해 지급되는 결혼 장려 및 책임감 있는 부성 보조금이라는 3가지 유형의 연방보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 기준 기본 포괄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약 16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의미한다. 주정부가 노력의 유지의무(a maintenance-of-effort (MOE) requirement)를 바탕으로 출원하는 기금을 더해서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을 추진한다. 각 주정부가 받는 보조금 금액은 1996년 이전에 받은 부양가족보조제도(AFDC)에 근거하여 지급된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때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매칭 비율이 1대 1이었으나 주정부의 부담률이 점차 감소하였다. 2018년 기준 주정부 부담액은 약 103억 달러로 연방정부 부담액의 약 63.8% 수준이며, 2017 회계연도부터는 연구 활동에 전체 기금의 0.33%를 배정하도록 하였다¹⁶⁾.

2018년 기준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총 예산 313억 달러 중 빈곤 가정을 위한 지원에 67억 달러(21%)를 사용하였으며, 양육보조(child care funding)

16) Falk and Landers(2019: 2)

에 53억 달러 (17%)를 사용하였다. 이는 양육보조 사업에 사용되거나 양육보조와 개발을 위한 포괄보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기금으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의 수혜를 받는 가정을 위한 취업 지원(교육 및 훈련)은 33억 달러(11%)로 3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저임금 부모를 돕기 위해 소득세 환급(Earned Income Tax Credit)을 제공하는 데 28억 달러(9%)를 지출하였다. 또한 빈곤 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은 각 주의 어린이집(pre-kindergarten)과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을 지원하고(26억 달러), 아동학대 및 방임 방지와 위탁가정 지원 등 아동복지(Child welfare)사업에 24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그림 3-7.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지출 내역(FY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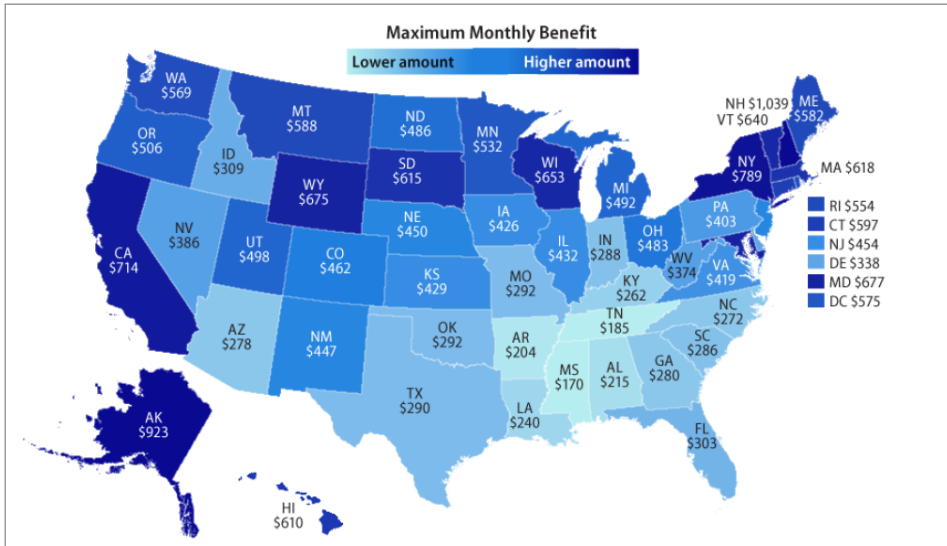


자료: Falk and Landers(2019)

2018년 9월 기준으로 120만 가구의 310만 명이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의 수혜를 받았으며, 이 중 230만 명이 아동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상태의 부양아동이 있는 성인 가정이 31%, 근로 중이지만 현금보조를 받는 가정이 31%를 차지한다. 아동에게 직접 보조금이 제공되는 경우도 38%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는 장애로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부가수입보장제(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의 수혜자인 성인의 자녀인 경우나,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할머니, 고모, 삼촌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 시민권이 없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을 포함한다. 각 주별로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의 프로그램

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가구가 수령하는 현금보조의 금액도 다르다. 2018년 7월 기준 1부모 2자녀 가족에 제공된 최고 보조금액을 보면 뉴햄프셔주의 경우 최고 1,039달러를 수령하는 반면, 미시시피주는 최고 170달러를 수령하였다.

그림 3-8.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주정부별 금액(2018년 7월 기준)



자료: Falk and Landers(2019)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의 수혜자들은 근로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 조항은 각 주정부로 하여금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지원 수혜 건의 50%가 근로 및 근로를 위한 준비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규정을 달성한 연도는 2016년과 2017년에 불과하다.

주정부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은 37억 2,140만 달러를 수령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뉴욕주가 24억 3,486만 달러를 수령하였다. 반면 가장 적은 금액을 수령한 주정부는 와이오밍으로 2,171만 달러를 수령하였다.

표 3-12. 주정부별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보조금 수량액(2017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합계	부족정부 대상 보조금	주정부 대상 보조금
Alabama	\$93.007	\$0.000	\$93.007
Alaska	63.399	19.002	44.397
Arizona	221.686	22.279	199.407
Arkansas	56.546	0.000	56.546
California	3,721.496	82.801	3,638.695
Colorado	135.608	0.000	135.608
Connecticut	265.908	0.000	265.908
Delaware	32.184	0.000	32.184
District Of Columbia	92.304	0.000	92.304
Florida	560.484	0.000	560.484
Georgia	329.650	0.000	329.650
Guam	3.454	0.000	3.454
Hawaii	98.578	0.000	98.578
Idaho	31.833	1.525	30.307
Illinois	583.126	0.000	583.126
Indiana	206.117	0.000	206.117
Iowa	131.091	0.533	130.558
Kansas	101.595	0.117	101.478
Kentucky	180.689	0.000	180.689
Louisiana	163.431	0.000	163.431
Maine	77.863	0.000	77.863
Maryland	228.342	0.000	228.342
Massachusetts	457.855	0.000	457.855
Michigan	772.794	0.000	772.794
Minnesota	267.101	6.503	260.597
Mississippi	86.481	0.000	86.481
Missouri	216.335	0.000	216.335
Montana	45.384	7.495	37.889
Nebraska	57.837	1.195	56.642
Nevada	43.832	0.069	43.762
New Hampshire	38.394	0.000	38.394

구분	합계	부족정부 대상 보조금	주정부 대상 보조금
New Jersey	402.702	0.000	402.702
New Mexico	125.687	15.767	109.920
New York	2,434.869	0.000	2,434.869
North Carolina	301.242	0.805	300.438
North Dakota	26.313	0.000	26.313
Ohio	725.566	0.000	725.566
Oklahoma	147.525	2.732	144.793
Oregon	167.370	1.126	166.244
Pennsylvania	717.125	0.000	717.125
Puerto Rico	71.326	0.000	71.326
Rhode Island	94.708	0.000	94.708
South Carolina	99.638	0.000	99.638
South Dakota	21.821	0.614	21.207
Tennessee	190.892	0.000	190.892
Texas	484.652	0.000	484.652
Utah	76.576	1.220	75.356
Vermont	47.197	0.000	47.197
Virgin Islands	2.837	0.000	2.837
Virginia	157.763	0.000	157.763
Washington	402.997	23.932	379.065
West Virginia	109.813	0.000	109.813
Wisconsin	317.138	4.292	312.846
Wyoming	21.710	3.281	18.429

자료: Falk(2017)

각 주정부가 노력의 유지의무(a maintenance-of-effort (MOE) requirement)를 근거로 해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 보조금의 75% 정도이다.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 (TANF)의 근로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정부의 경우는 규제위반에 대한 벌칙의 개념으로 80%를 부담하게 하며, 부족정부는 노력의 유지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조금 대비 MOE 펀드는 61.1%에 그치고 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수령한 보조금의 57.7%, 뉴욕주는 58.6%만을 부담하고 있다. MOE 펀드

의 규모와는 별개로 보조금 대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주정부는 미시시피 주로 79.9%를 부담하고 있다.

표 3-13. 주정부별 MOE 펀드 비율(2017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보조금	평균 지출액의 75%	평균 지출액의 80%	보조금 대비 주정부 MOE 비율 (75% 기준)
Alabama	\$93.007	\$39.214	\$41.828	70.3%
Alaska	44.397	34.274	36.559	56.4
Arizona	199.407	85.478	91.176	70.0
Arkansas	56.546	20.839	22.228	73.1
California	3,638.695	2,666.220	2,843.968	57.7
Colorado	135.608	82.871	88.396	62.1
Connecticut	265.908	183.421	195.649	59.2
Delaware	32.184	21.771	23.222	59.6
District Of Columbia	92.304	70.449	75.146	56.7
Florida	560.484	368.363	392.921	60.3
Georgia	329.650	173.369	184.926	65.5
Guam	3.454	0.888	0.947	79.5
Hawaii	98.578	71.150	75.893	58.1
Idaho	30.307	13.023	13.891	69.9
Illinois	583.126	430.088	458.761	57.6
Indiana	206.117	113.526	121.094	64.5
Iowa	130.558	61.711	65.825	67.9
Kansas	101.478	61.678	65.790	62.2
Kentucky	180.689	67.418	71.913	72.8
Louisiana	163.431	55.415	59.109	74.7
Maine	77.863	37.524	40.026	67.5
Maryland	228.342	176.965	188.763	56.3
Massachusetts	457.855	358.948	382.877	56.1
Michigan	772.794	468.518	499.753	62.3
Minnesota	260.597	175.369	187.060	59.8
Mississippi	86.481	21.724	23.173	79.9

구분	보조금	평균 지출액의 75%	평균 지출액의 80%	보조금 대비 주정부 MOE 비율 (75% 기준)
Missouri	216.335	120.121	128.129	64.3
Montana	37.889	13.121	13.995	74.3
Nebraska	56.642	28.038	29.907	66.9
Nevada	43.762	25.449	27.145	63.2
New Hampshire	38.394	32.115	34.256	54.5
New Jersey	402.702	300.160	320.171	57.3
New Mexico	109.920	32.661	34.839	77.1
New York	2,434.869	1,718.578	1,833.150	58.6
North Carolina	300.438	153.764	164.015	66.1
North Dakota	26.313	9.069	9.674	74.4
Ohio	725.566	390.831	416.887	65.0
Oklahoma	144.793	60.116	64.124	70.7
Oregon	166.244	91.634	97.743	64.5
Pennsylvania	717.125	407.126	434.267	63.8
Puerto Rico	71.326	21.185	22.598	77.1
Rhode Island	94.708	60.367	64.392	61.1
South Carolina	99.638	35.927	38.322	73.5
South Dakota	21.207	8.527	9.096	71.3
Tennessee	190.892	82.810	88.331	69.7
Texas	484.652	235.726	251.441	67.3
Utah	75.356	24.888	26.547	75.2
Vermont	47.197	25.550	27.253	64.9
Virgin Islands	2.837	0.589	0.628	82.8
Virginia	157.763	128.173	136.718	55.2
Washington	379.065	255.904	272.964	59.7
West Virginia	109.813	32.294	34.446	77.3
Wisconsin	312.846	166.938	178.067	65.2
Wyoming	18.429	9.054	9.657	67.1
Total	16,316.584	10,330.929	11,019.658	61.2

자료: Falk(2017)

②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Special Education Grants to States)

교육부의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Special Education Grants to States)은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지급되지만, 계산식에 의해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식보조금의 일종이다. 보조금 기준은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의해서 규정된다. 2018년에는 120억 달러가 집행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조금 더 늘어난 123억 6천만 달러가 집행되었다. 50개 주와 DC,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여 최소 1,890만 달러에서 최대 12억 달러까지 배분되었으며, 평균 보조금 수령액은 2억 2,800만 달러이다.

1975년의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은 처음으로 보조금 계산식을 제시하였으며,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숫자와 각 학생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1997년에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각 주정부로 하여금 최소한 기준년도 보조금 수령액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계산 공식을 수정하였다. 새로운 보조금 계산 공식은 기준년도(1999년) 보조금 수령액에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과 3세부터 21세 인구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주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조금을 규정하였다. 2014년에는 「장애인 교육법」을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계산 공식을 수정하였다. 1997년에 수정된 보조금 계산 공식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계산 공식을 사용하나 최소 수령액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주정부별 보조금 최소 수령액은 3가지 계산 공식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주정부별 최대 보조금 수령액은 전년도 보조금 수령액과 증가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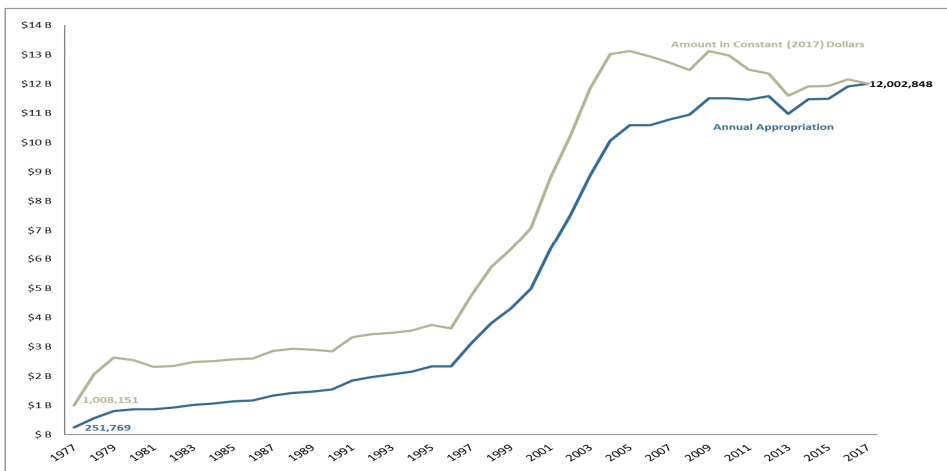
표 3-14.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계산 공식

구분	보조금 공식
1975년	주정부 보조금 = 장애를 가진 학생 수 * 국가가 k-12교육에 사용하는 각 학생별 지출 평균액의 40%
1997년	주정부 보조금 = 기준년도 보조금 수량액(1999년) + 기준년도 보조금을 배분하고 남은 예산 * 0.85 * 각 주의 학령인구(3-21세) 비율 + 기준년도 보조금을 배분하고 남은 예산 * 0.15 * 각 주의 저소득층 학생 인구 비율
2014년	최소 공식 1 = 기준년도 보조금 수량액(1999년) + (주의 전년도 수량액 - 기준년도 보조금 수량액) * 0.01 * 1/3
	최소 공식 2 = 전년도 보조금 수량액 + 전년도 보조금 수량액 * (전체 IDEA 펀딩 증가율 - 1.5%)
	최소 공식 3 = 전년도 보조금 수량액 + 전년도 보조금 수량액 * 0.9 * 특수교육보조금 수량액 증가율
	최대 공식 = 전년도 보조금 수량액 + 전년도 보조금 수량액 * (전년대비 보조금 수량액 증가율 + 의회가 결정한 IDEA 보조금 증가율)

자료: Dragoo(2019)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은 계산 공식이 수정된 199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 3-9. 특수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액 추이(1977~2017)



자료: Dragoo(2019)

제2절 독일

1. 국고보조사업 개요

1) 연방보조금 유형

독일의 연방보조금은 크게 4개 영역으로 분류된다. 연방재무성이 발행하는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Bund·Länder 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에서는 연방보조금을 영역을 공동사무 연방부담금,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연방지원금, 연방보충교부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3-15. 독일 「연방헌법」상 연방보조금 유형

구분	연방보조금	「연방헌법」상 근거
공동사무 연방부담금	지역경제구조개선 부담금	제91a조 제1항, 제3항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부담금	
	대형연구시설 부담금	제91b조 제1항, 제3항
	학술공동체연구시설 부담금	
	연구진흥 부담금	제91b조 제2항, 제3항
교육성취도국제비교·확인 부담금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연방교육교부금	제104a조 제3항
	주거교부금	
	부모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주·자치단체 투자사업 연방지원금	도시건설지원금	제104b조
	철도인프라지원금	
	기타지원금	
연방보충교부금	일반보충교부금	제107조 제2항
	특별보충교부금	

자료: 연방재무성(2020),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Bund·Länder 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

첫째, 공동사무 연방부담금은 지역경제구조개선,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대형연구시설, 학술공동체연구시설, 교육성취도국제비교·확인 등 6개의 부담금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은 연방교육교부금, 주거교부금, 부모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등 6개의 교부금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주·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한 연방지원금으로는 도시건설지원금, 철도인프라지원금, 기타지원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방보충교부금은 일반보충교부금, 특별보충교부금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별보충교부금은 다시 특별행정수요교부금, 사회기반취약교부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공동사무 연방부담금

공동사무 연방부담금은 「연방헌법」 제91a조와 제91b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다.¹⁷⁾ 공동사무(Gemeinschaftsaufgaben)는 1969년에 「연방헌법」상의 제도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방부담금 역시 당시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역 간의 산업·경제적 격차(regionale disparität) 완화를 통한 국토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및 삶의 동질적 수준 유지에 있다. 공동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사무 재원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부담하게 되는지를 「연방헌법」 제91a조 제3항과 제91b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7) 「연방헌법」에서는 제91a조, 제91b조뿐만 아니라, 제91c조, 제91d조, 제91e조 등에서도 공동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재무성의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Bund·Länder 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는 제91a조, 제91b조 두 규정과 관련한 재정사항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이들 두 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연방·주정부 간의 재정관계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연방헌법」 제91c조는 정보기술시스템의 계획수립·설치·운영과 관련한 공동사무이며, 재정부담은 연방·주정부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91d조는 행정능률성비교·촉진과 관련한 공동사무이며, 연방·주정부 재정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91e조는 실업자의 기본생활보장(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과 관련한 공동사무이며, 재정부담은 연방정부가 모두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91a조 제3항은 지역경제구조개선(「연방헌법」 제91a조 제1항 제1문)과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연방헌법」 제91a조 제1항 제2문)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부담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구조개선 사업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절반(1/2)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구조개선 사업에서 연방정부의 부담금은 각 주정부 사업재원의 50%이다. 즉, 이 사업에서 연방정부부담금은 50%의 정률보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사업재원은 연방정부가 최소 절반(1/2)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에서 연방정부부담금은 각 주정부 사업재원의 50% 이상이다. 이 사업에서 연방정부부담금은 역시 정률보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경제구조개선과 농업구조·해변보호개선 사업의 재원은 모든 주정부에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된다. 즉, 각 주정부의 재정격차에 따른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제91b조 제3항은 대형연구시설, 학술공동체연구시설, 교육성취도국제비교·확인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제91b조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3가지 사업의 재원부담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양자의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담비율은 개별 사업마다 매년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2)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은 「연방헌법」 제104a조 제3항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연방 위임사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제104a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부의 연방위임사무는 다양한 법률에 기초하여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사무이다. 이러한 현금급여 사무는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정책은 연방교육교부금, 주거교부금, 부모교부금, 아동생계교부금,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 등 여섯 영역이다. 또한 이들 사회복지정책은 각각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첫째, 연방교육교부금은 학생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연방교육육성법(BAföG¹⁸⁾」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정책대상자인 학생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교육교부금은 직접적으로 「연방교육육성법

(BAföG)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사회복지법 I (SGB I)」¹⁹⁾ 제68조 제1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학생의 생계·학업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BAföG」 제1조). 이러한 현금급여를 통해 학생이 부업(Nebenarbeit) 없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교육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연방교육교부금의 수혜자는 일반학교 10학기 이상의 학생, 전문학교·직업전문학교 학생, 아카데미·대학교의 학생 등이다(「BAföG」 제2조). 여기서 아카데미(Akademien)는 일반 학교·대학교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하여 졸업장을 수여하는 기관으로 제한된다. 한편 박사과정 학생은 정책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방교육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100%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다(연방재무성, 2019)²⁰⁾.

둘째, 주거교부금은 개인에게 임대주거시설비용·소유주거시설비용²¹⁾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이며, 예를 들어 임대료 등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주거교부금은 「주거급여법률(WoGG²²⁾)」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정책대상자인 각 개인에게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주거교부금은 직접적으로는 「주거급여법률(WoGG)」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사회복지법 I (SGB I)」 제68조 제10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각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주거공간시설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있다(「WoGG」 제1조 제1항). 주거교부금의 수혜자는 임대주거시설비용·소유주거시설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개인(natürliche personen)이다(「WoGG」 제3조 제1항). 그러므로 교부대상시설은 임대주거시설(Mietwohnung)과 소유주거시설(Eigentumswohnung) 모두 포함된다. 교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① 가구원수, ② 부담수준, ③ 수입수준 등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이다. 주거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다.

셋째, 부모교부금은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18)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의 약칭이다.

19) 첫 번째 사회복지법률 -일반사항부분-(Das Erste Buch Sozialgesetzbuch-Allgemeiner Teil-)이다.

20) 연방정부가 100% 재정부담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21) 본인 스스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주거(ein selbst genutzter Wohneigentum)에 대한 부담을 연방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Wohngeldgesetz”의 약칭이다.

로 지원하는 급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모급여법률(BEEG²³)」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정책대상자인 각 영·유아부모에게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부금은 직접적으로는 「부모급여법률(BEEG²⁴)」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5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영·유아보육에 따른 부모생업활동제한·표준생활유지 수입의 감소문제 해결 및 출산장려와 가족정책목적 실현 등에 있다.²⁵⁾ 이 제도는 기존의 보육교부금(Erzehungsgeld)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2006년에 입안되고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모교부금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생후 12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이며, 한부모의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BEEG」 제4조 제3항). 부모교부금 수혜자의 핵심요건은 ① 주거지, ② 동거, ③ 돌봄, ④ 생업활동, ⑤ 기타 등 5가지 사항²⁶⁾이다(「BEEG」 제1조 제1항). 부모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100%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재정부담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다(연방재무성, 2019).

넷째, 아동생계교부금은 아동의 생계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아동생계교부금법(UnterhaltsVG²⁷)」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정책대상자인 각 아동·청소년에게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생계교부금은 직접적으로는 「아동생계교부금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4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생계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다. 아동생계교부금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아동이며, 교부금 수혜자의 핵심요건은 ① 연령, ② 부모혼인

23) “Bundeselterngeld-und Elternzeitgesetz”의 약칭이다.

24)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의 약칭이다.

25) 이 제도의 취지를 BEEG에서 직접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법률의 전반적 내용으로 볼 때, 이 제도는 이들 두 가지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6) 영·유아와 부모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유아와 부모가 동일한 가족 공간에 있어야 한다. 부모가 영·유아를 직접 돌봐야 하며, 영·유아보육으로 인해 부모의 생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부모는 아니지만 앞의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부모교부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27) “Gesetz zur Sicherung des Unterhalts von Kindern alleinstehender Mütter und Väter durch Unterhaltsvorschüsse oder-ausfalleistungen”의 약칭이다.

관계, ③ 생활비관계, ④ 「연방사회복지법Ⅱ(SGB Ⅱ)」상의 규정 등 4가지 사항²⁸⁾이다 (「UnterhaltsVG」 제1조 제1항, 제1a항). 아동생계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40%, 주정부가 60%를 부담하고 있다(연방재무성, 2019: 14). 아동생계교부금은 연방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교부금 재원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다섯째,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은 개인에게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이며, 주거임대료와 같은 시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교부금(WoG)과는 구분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양한 「사회복지관계법(Fürsorgerecht)」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개인에게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KdU)은 직접적으로는 「연방복지지원법(BSHG)」 제22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연방사회복지법Ⅱ(SGB Ⅱ-실업급여Ⅱ)」 제22조, 「연방사회복지법Ⅱ(SGB Ⅱ-복지지원)」 제35조, 「연방난민지원법(AsylbLG)」 제3조 등 「사회복지관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주거생활과정에 꼭 필요한 전기·가스·수도·난방·온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에 있으며, 나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교부금의 수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을 스스로 지불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지법Ⅱ」 제22조 제7항은 그 수혜자의 예를 열거하여 명시²⁹⁾하고 있다. 각 개인이 지원받는 현금급여는 가구원 수(Haushaltsgröße)와 적정 주거공간규모(Angemessener Wohnraum)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즉,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요구되는 적정 주거공간규모의 범위 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전기·가스·수도·난방·온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여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에 소요되는 자원부담은 주무부처인 연

28) 첫째, 수급아동의 연령기준은 2가지이다. 교부금의 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2세까지의 아동이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은 「연방사회복지법Ⅱ(SGB Ⅱ)」상의 예외적 경우이다. 둘째, 수급대상 아동은 그의 부모가 편부모, 미혼자(예: 미혼모·부), 이혼, 양친의 장기간 별거 등 4가지의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과 함께 동거하는 편부모가 다른 한편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규칙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아동은 아동생계교부금의 수급대상자가 된다. 넷째, 「연방사회복지법Ⅱ」에 따른 사회복지교부금을 받지 않거나, 「연방사회복지법Ⅱ」 제9조에 따라 특별히 도움이 요구되는 등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18세까지 아동생계교부금의 수급대상자가 된다.

29) 이 규정에 의한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생활부가비용을 지불할 능력에 한계가 있어, 주거계약 해지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주거생활과 관련한 각종 사용료를 지불할 능력에 한계가 있어, 전기 공급 절단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 술·마약중독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이다. 넷째, 채무가 많은 경우이다.

방노동·복지성(Bundesministerium für Arbeit·Soziales)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제시되며,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담비율이 결정된다.

표 3-16.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급여수준 결정기준

가구원 수(Haushaltsgröße)	적정 주거공간규모(Angemessener Wohnraum)
1인 가구(1 Person)	방 1개, 50m ² 까지(1 Raum, bis zu 50m ²)
2인 가구(2 Person)	방 2개, 65m ² 까지(2 Räume, bis zu 65m ²)
3인 가구(3 Person)	방 3개, 80m ² 까지(3 Räume, bis zu 80m ²)
4인 가구(4 Person)	방 4개, 95m ² 까지(4 Räume, bis zu 95m ²)
추가 가구원당(jede weitere Person)	방 1개 + 15m ² 면적 추가(+ 1 Raum, + 15m ²)

여섯째,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은 특별한 생계지원이 요구되는 노령계층과 저소득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연방사회복지법XII(SGB XII³⁰⁾」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위임하여 정책대상자인 노령계층·저소득계층에게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은 「연방사회복지법XII(SGB XII)」 제4장 노령·수입감소에 따른 기본생계보장(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노령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수입 감소(Erwerbsminderung)³¹⁾ 부분을 지원하여 기본생계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교부금 수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노령계층과 저소득계층이며, 교부금 수혜의 핵심요건은 연령(「SGB XII」 제41조)과 수입(「SGB XII」 제43조)³²⁾이다.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부담은 주무부처인 연방노동·복지성(Bundesministerium für Arbeit·Soziales)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제시되며,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부담비율이 확정된다. 2019년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재정부담은 없다.

30) “Sozialgesetzbuch Zwölftes Buch(XII)-Sozialhilfe-”의 약칭이다.

31) 특히 직업·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32) 노령계층의 교부금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며, 저소득계층은 18세 이상이다. 그리고 연간 총수입이 100,000EU 이하인 가구(부양의무가 있는 연령의 아이·부모)는 해당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방지원금

연방지원금은 「연방헌법」 제104b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investitionen)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이다. 「연방헌법」 제104b조는 투자사업 중 지역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경제발전 촉진에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경우에,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 제104b조 규정상 연방지원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규정은 ① 경제균형의 장애요소 제거(제1항 제1문), ② 연방전체의 경제력 격차 조정(제1항 제2문), ③ 경제발전 촉진(제1항 제3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원금을 1차적으로 주정부에 제공하며, 주정부가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주정부가 직접 투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방지원금은 주정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다. 헌법상 지원대상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방재무성보고서에 의하면 실질적인 연방지원금 대상은 도시건설(Städtebauförderung)과 철도인프라(Schieneninfrastruktur)의 2가지이다.

도시건설연방지원금은 연방·주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각각의 재정부담에 대한 사항은 도시건설행정협정(Verwaltungsvereinbarung Städtebauförderung: VwvStädtebau)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정은 연방내무성과 주정부³³⁾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방상원(Bundesrat)의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도시건설연방지원금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원칙적으로 도시건설사업 전체예산의 33%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최소한 연방정부와 동일 수준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VwvStädtebau 제2조 제1항). 그러나 주요 사업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택(Altbau)수리의 경우 연방정부가 45%를 부담하고, 주정부는 최소한 연방정부와 동일한 비중(45%)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제1문단). 그리고 문화재 건축물(städtebauliches Denkmalschutz) 수리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주정부는 최소한 연방정부와 동일한 비중(4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

33) 이 협정은 연방내무성 장관과 16개 주의 해당 부처 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새롭게 체결하게 된다.

단체의 재정부담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제2문단). 한편 동독지역에서 일반주택의 재건축,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고택수리, 도시인프라의 재건설 등은 연방정부가 전체예산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동시에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동일한 비중(50%)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제3문단 a·b·c 문장).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

(4) 연방보충교부금

연방보충교부금은 「연방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재정조정제도이다. 연방보충교부금은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연방보충교부금은 크게 일반보충교부금(Allgemeine BEZ: AgBEZ), 특별보충교부금(Sonderbedarfs BEZ: SoBEZ)으로 구분된다(「FAG」³⁴⁾ 제11조 제1항). 이 제도의 기본적 성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방보충교부금은 주정부 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대표적 재정조정제도이다³⁵⁾. 연방보충교부금은 공동세원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주정부별 차등배분과 주정부 간 재정조정³⁶⁾ 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각 지역재정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연방교부금이다. 연방보충교부금을 통한 재정조정 수준은 연방보충교부금에 의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각 주정부의 재정력 순위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4) 「연방·주정부 간의 재정조정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Finanzausgleich zwischen Bund und Ländern)」의 약칭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9년까지의 「재정조정법(FAG)」을 기준으로 연방보충교부금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35) 물론, 부가가치세의 각 주정부별 안분에서 재정력을 기준으로 각 주정부의 부가가치세 몫을 배분하는 재정조정과정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일 16개 주정부 전체 부가가치세 몫의 일부(25%)를 재정조정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안분은 16개 주정부 재원으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각 주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연방보충교부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36) 이 제도는 2020년부터 그 근간이 폐지되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연방보충교부금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연방보충교부금 중에서 일반보충교부금은 주정부의 재정력지수가 평균 이하인 주정부의 재정력보완 및 재정격차해소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보충교부금의 수급대상은 재정력지수가 평균 이하인 주정부이며, 주정부의 재정력은 해당 주의 주민 1인당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전국 평균 주민 1인당 재정력지수(100%) 대비 99.5% 이하인 주정부가 일반보충교부금의 교부대상이다. 일반보충교부금은 주정부 재정부족분의 77.5%까지 교부할 수 있지만, 일반보충교부금을 수단으로 한 재정조정 수준은 최대 98.5%까지이다. 다만, 주정부 간 재정력 순위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특별보충교부금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 재정력 격차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보충교부금과는 차이가 있다. 특별보충교부금은 특별행정수요교부금과 사회기반취약교부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특별행정수요교부금은 규모가 작은 주정부, 인구밀도가 낮은 주정부, 특별한 정치·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주정부가 교부대상이다. 규모와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한 특별행정수요교부금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작거나 인구밀도가 낮아서, 주민 1인당 재정지출이 특별하게 많은 지역의 주정부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 사회기반취약교부금은 구조적 실업문제가 심각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수입은 적고, 반면 재정지출은 많은 지역의 주정부에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

독일의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은 「연방헌법」 제104a조 제3항 규정상 크게 6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모두 사회복지 분야 사무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은 모두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하며, 이 중 부모교부금과 아동생계교부금은 아동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집행에 있어 개별 사무의 유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정부담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의 정부 계층 간 재정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17.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주정부 간 재정부담 현황

구분	연방정부	주정부	법률근거
연방교육교부금	100	0	「BAföG」, 「SGB I」 제68조 제1문
주거교부금	50	50	「WoGG」, 「SGB I」 제68조 제15문
부모교부금	100	0	「BEEG」, 「SGB I」 제68조 제15문
아동생계교부금	40	60	「UnterhaltsVG」, 「SGB I」 제68조 제14문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 교부금 ³⁷⁾	58.3(최고)	41.7(최저)	「BSHG」, 「SGB II」, 「SGB XII」, 「AsylbLG」
	43.6(최저)	56.4(최고)	
노령·기본생계보장 교부금	100	0	「SGB XII」 제4장

자료: 연방재무성, 각 회계연도별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먼저 연방교육교부금은 「연방교육육성법(BAföG)」과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문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교부금은 100% 연방정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정부는 재원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주거교부금은 「주거급여법률(WoGG)」과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0문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주거교부금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교부금은 「부모급여법률(BEEG)」과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5문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부모교부금의 재원은 연방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재원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연방재무성, 2019). 아동생계교부금은 「아동생계교부금법(UnterhaltsVG)」과 「연방사회복지법 I(SGB I)」 제68조 제14문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동생계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40%, 주정부가 60%를 부담하고 있다(연방재무성, 2019).

다음으로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은 「연방복지지원법(BSHG)」 제22조, 「연방사회복지법 II(SGB II-실업급여 II)」 제22조, 「연방사회복지법 XII(SGB XII-복지지원)」 제35조, 「연방난민지원법(AsylbLG)」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의 재원부담 비율은 주정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37) 회계연도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 3-18.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의 연방정부 재원부담 비율(2018년 기준)

주정부	연방정부 부담	주정부	연방정부 부담
Baden-Württemberg(BW)	53,9	Niedersachsen(NI)	49,9
Bayern(BY)	50,3	Nordrhein-Westfalen(NW)	46,8
Berlin(BE)	46,9	Rheinland-Pfalz(RP)	58,3
Brandenburg(BB)	43,6	Saarland(SL)	52,9
Bremen(HB)	49,3	Sachsen(AN)	45,1
Hamburg(HH)	55,9	Sachsen-Anhalt(ST)	44,8
Hessen(HE)	51,0	Schleswig-Holstein(SH)	49,4
Mecklenburg-Vorpommern(MV)	44,9	Thüringen(TH)	47,8

자료: Verordnung zur Festlegung und Anpassung der Bundesbeteiligung an den Leistungen für Unterkunft und Heizung für das Jahr 2019

마지막으로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은 「연방사회복지법XII(SGB XII)」 제4장 노령·수입감소에 따른 기본생계보장(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방정부가 100% 부담하고 있으며, 2013년 이전까지는 연방정부가 75%, 주정부가 25%를 부담하였다(「SGB XII」 제46a조 제1항 제1문).

사회복지 분야 연방위임사무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원부담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 위임사무 연방교부금 총액은 250억 유로이며, 2014년의 193억 유로와 비교하면 29.5% 증가하였다. 6개 사회복지 분야 연방교부금 중에서 연방정부의 재원부담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은 70억 유로이며, 6개 위임사무 연방교부금의 2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부모교부금은 67억 유로(26.8%)이며, 노령·기본생계보장교부금은 59억 유로(26.6%)로 나타났다.

표 3-19. 연방위임사무(사회복지 연방교부금)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부담 추이 (단위: 억 유로)

구분	14년	16년	17년	18년	증가율(%) 14년~18년	비중(%) 18년 기준
합계	193	226	238	250	29.5	100
연방교육교부금 (「BAföG」)	16	24	24	22	37.5	8.8
주거교부금 (「WoGG」)	4	6	6	5	25.0	2.0
부모교부금 (「BEEG」)	57	61	65	67	17.5	26.8
아동생계교부금 (「UnterhaltsVG」)	3	3	4	9	200.0	3.6
주거생활부가·난방비용교부금 (「BSHG」 등)	42	54	68	70	66.7	28.0
노령·기본생계보장 교부금 (「SGB XII」 제4장)	54	62	55	59	9.3	23.6
기타	17	17	18	19	11.8	7.6

자료: 연방재무성, 각 회계연도별 「연방·주정부 재정관계보고서」

제3절 일본의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1. 국고보조사업 개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도도부현 및 시정촌)로 배분된 국고지출금에 대한 현황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도부현의 경우 총 6조 758억 엔의 국고지출금이 투입되었는데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무교육비 부담금으로 도도부현 총 국고지출금의 20.8%인 1조 2630억 엔이 배분되었다. 이 밖에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1조 1,264억 엔, 18.5%)과 사회자본 정비 종합 부담금(9,521억 엔, 15.7%)도 도도부현에 배분된 국고지출금 항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3-20. 국고지출금 현황

(단위: 백만 엔, %)

구분	평성29년도(2017)						평성28년도 (2016) 순계액		비교		
	도도부현		시정촌		순계액		증감액	증감률	전년도 증감률		
의무교육비부담금	1,263,075	20.8	-	-	1,263,075	8.1	1,526,626	9.7	△ 263,551	△ 17.3	0.0
생활보호비부담금	140,408	2.3	2,666,669	28.2	2,807,077	18.1	2,817,074	18.0	△ 9,997	△ 0.4	0.1
아동보호비등부담금	105,257	1.7	916,521	9.7	1,021,778	6.6	884,384	5.6	137,394	15.5	13.3
장애인자립지원금부 비등부담금	77,497	1.3	1,187,480	12.6	1,264,977	8.2	1,195,894	7.6	69,083	5.8	5.8
사립고등학교등경상비 조성비보조금	105,577	1.7	-	-	105,577	0.7	98,417	0.6	7,160	7.3	△ 8.4
아동수당등교부금	-	-	1,360,477	14.4	1,360,477	8.8	1,376,011	8.8	△ 15,534	△ 1.1	△ 1.5
공립고등학교수업료 불상수교부금	12	0.0	9	0.0	21	0.0	494	0.0	△ 473	△ 95.7	△ 99.4
고등학교등취학 지원금교부금	328,549	5.4	-	-	328,549	2.1	329,256	2.1	△ 707	△ 0.2	22.0
보통건설사업비지출금	1,126,487	18.5	632,481	6.7	1,758,968	11.3	1,564,612	10.0	194,356	12.4	△ 0.7
재해복구 사업비 지출금	417,136	6.9	108,694	1.2	525,829	3.4	499,789	3.2	26,040	5.2	5.3
실업대책 사업비 지출금	-	-	3	0.0	3	0.0	17	0.0	△ 14	△ 82.4	240.0

구분	평성29년도(2017)						평성28년도 (2016) 순계액		비교		
	도도부현		시정촌		순계액				증감액	증감률	전년도 증감률
위탁금	124,453	2.0	94,993	1.0	219,447	1.4	225,492	1.4	△ 6,045	△ 2.7	△ 2.6
보통 건설 사업	4,316	0.1	7,265	0.1	11,581	0.1	11,857	0.1	△ 276	△ 2.3	10.0
재해 복구 사업	32	0.0	1,161	0.0	1,193	0.0	2,027	0.0	△ 834	△ 41.1	△ 22.8
기타	120,105	1.9	86,567	0.9	206,673	1.3	211,608	1.3	△ 4,935	△ 2.3	△ 3.0
재정 보급금	3,851	0.1	3,691	0.0	7,542	0.0	7,031	0.0	511	7.3	0.2
국유 제공 시설등 소재 시정촌 조성 교부금	30	0.0	35,510	0.4	35,540	0.2	35,540	0.2	-	-	2.9
교통 안전 대책 특별 교부금	31,962	0.5	23,382	0.2	55,344	0.4	58,011	0.4	△ 2,667	△ 4.6	△ 4.8
전원(電源) 입지 지역 대책 교부금	94,421	1.6	30,887	0.3	125,308	0.8	124,574	0.8	734	0.6	△ 8.9
특정 방위 시설 주변 정비 조정 교부금	-	-	20,742	0.2	20,742	0.1	20,708	0.1	34	0.2	1.7
석유저장시설 입지 대책 등 교부금	5,318	0.1	-	-	5,318	0.0	5,306	0.0	12	0.2	2.5
사회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	952,189	15.7	751,400	8.0	1,703,589	11.0	1,680,589	10.7	23,000	1.4	6.1
지방 창생 관계 교부금	45,000	0.7	63,116	0.7	108,117	0.7	111,544	0.7	△ 3,427	△ 3.1	-
동일본 대지진 부흥 교부금	13,658	0.2	95,234	1.0	108,892	0.7	163,656	1.0	△ 54,764	△ 33.5	△ 46.4
기타	1,240,930	20.5	1,453,258	15.4	2,694,187	17.4	2,962,124	19.1	△ 267,937	△ 9.0	21.5
합계	6,075,810	100.0	9,444,547	100.0	15,520,357	100.0	15,687,149	100.0	△ 166,792	△ 1.1	2.7

시정촌의 국고지출금은 9조, 4,445억 엔으로 도도부현에 투입된 국고지출금보다 약 3조 3600억 엔 정도 더 많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시정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생활보호비 부담금으로 시정촌 총 국고지출금의 28.2%인 2조 6,666억 엔이 배분되었다. 이를 이어 아동수당 등 교부금(1조 3,604억 엔, 14.4%)과 장애인 자립지원금부비 등 부담금(1조 1,874억 엔, 12.6%)의 규모도 다른 항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시정촌에 투입된 국고지출금의 주요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3-21. 도도부현 지출금 현황

(단위: 백만 엔, %)

구분	결산액				비교		
	평성29년도(2017)		평성28년도(2016)		증감액	증감률	전년도증감률
국고 재원을 수반하는 것	2,484,793	62.3	2,513,427	63.6	△ 28,634	△ 1.1	△ 1.1
아동보호비 등 부담금	390,872	9.8	330,377	8.4	60,495	18.3	14.6
장애인 자립 지원 급부비 등 부담금	561,558	14.1	530,485	13.4	31,073	5.9	5.8
아동수당 등 교부금	288,029	7.2	292,084	7.4	△ 4,055	△ 1.4	△ 1.7
보통 건설사업비 지출금	303,836	7.6	272,750	6.9	31,086	11.4	△ 10.8
재해복구 사업비 지출금	62,198	1.6	64,499	1.6	△ 2,301	△ 3.6	△ 8.3
위탁금	58,530	1.5	58,833	1.5	△ 303	△ 0.5	△ 13.0
보통 건설 사업	11,478	0.3	8,943	0.2	2,535	28.3	18.8
재해 복구 사업	1,395	0.0	470	0.0	925	196.8	109.8
기타	45,657	1.2	49,420	1.3	△ 3,763	△ 7.6	△ 17.5
전원 입지 지역 대책 교부금	17,854	0.4	20,055	0.5	△ 2,201	△ 11.0	△ 13.6
석유저장시설 입지 대책 등 교부금	4,755	0.1	4,788	0.1	△ 33	△ 0.7	0.7
기타	797,161	20.0	939,556	23.8	△ 142,395	△ 15.2	△ 4.3
도도부현비만의 것	1,505,269	37.7	1,440,553	36.4	64,716	4.5	2.6
보통 건설사업비 지출금	192,344	4.8	177,805	4.5	14,539	8.2	6.5
재해복구 사업비 지출금	3,755	0.1	1,752	0.0	2,003	114.3	9.4
기타	1,309,170	32.8	1,260,996	31.9	48,174	3.8	2.0
합계	3,990,062	100.0	3,953,979	100.0	36,083	0.9	0.2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배분된 지출금에 대한 현황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에 총 3조 9,900억 엔의 지출금이 시정촌으로 배분되었다. 먼저 도도부현 지출금을 국고 재원의 수반 여부에 따라 나누었을 때 국고 재원을 수반하는 금액은 전체의 62.3%인 2조 4,847억 엔이고 도도부현의 비용만으로 지출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37.7%인 1조 5,052억 엔으로 국고 재원을 수반하는 지출금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봤을 경우,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항목은 장애인 자립 지원 급부비 등 부담금으로 총 지출금의 14.1%인 5,615억 엔이 투입되었다. 다음으로는 아동보호비 등 부담금에 3,908억 엔(9.8%) 그리고 보통 건설사업비 지출금

에 3,038억 엔(7.6%)이 투입되어 도도부현 지출금 항목 중 규모가 큰 항목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재해 복구 사업(0.0%), 석유저장시설 입지 대책 등 교부금(0.1%) 그리고 보통 건설 사업(0.3%)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년도(2016년)의 지출금 수준과 비교했을 경우, 전체적인 지출금 액수는 361억 엔 증가하였다. 국고 재원을 수반하는 금액은 286억 엔 감소한 반면 도도부현의 비용만으로 지출된 금액은 647억 엔 증가하여 전체적인 지출금 증가 액수는 도도부현의 비용만으로 지출된 금액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금 항목들의 경우, 아동보호비 등 부담금과 장애인 자립지원 급부비 등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각각 18.3%와 5.9% 증가한 반면 아동수당 등 교부금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

1) 야마나시현

(1) 개요

2019년 기준 야마나시현의 국고지출금 사업은 총 345개이며, 이를 세출 분야별³⁸⁾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123개(35.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이 74개(21.4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2. 분야별 국고지출금 사업 수 및 비중

분야	사업 수	비중
공공질서 및 안전	74	21.45%
과학기술	7	2.03%
교육	27	7.83%

38) 분야별 현황은 야마나시현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세출 분야와 유사하게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일본에서 분류하는 분야별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분야	사업 수	비중
국토 및 지역개발	8	2.32%
농림해양수산	25	7.25%
문화 및 관광	6	1.74%
보건	27	7.83%
사회복지	123	35.65%
산업중소기업	4	1.16%
수송 및 교통	3	0.87%
일반공공행정	15	4.35%
환경보호	21	6.09%
기타	5	1.45%
합계	345	100%

자료: 아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전체 345개 국고지출금 사업 중에서 아동복지 관련 국고지출금 사업은 57개로 추정할 수 있으며, 아마나시현의 교육위원회와 사회보건국 소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위원회 소관 아동복지 국고지출금 사업의 경우 직접사업이 13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건국 소관 아동복지 국고지출금 사업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간접사업이 1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아마나시현 아동복지 관련 국고지출금 사업 수, 비중 및 예산

아마나시현 소관부처	주관성청	구분	사업 수	비중(%)
교육위원회	문부과학성	간접 ³⁹⁾	2	3.51
		직접	13	22.81

39) 국고지출금의 사업유형은 크게 단독사업, 직접사업, 간접사업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단독사업은 국고지출금을 수반하지 않거나, 국고지출금을 수반하더라도 법령으로 정한 국고보조 비율 이상을 교부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직접사업은 국고지출금이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간접사업은 국고지출금이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거나 국고지출금에 광역자치단체의 보조 부담분을 더해 광역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사업을 의미한다(홍근석·김성주, 2018).

아마나시현 소관부처	주관성청	구분	사업 수	비중(%)
사회보건국	내각부	간접	1	1.75
		단독	1	1.75
		직접	1	1.75
		직접단독	1	1.75
	현	단독	9	15.79
		직접	1	1.75
	후생노동성	간접	12	21.05
		직접	10	17.54
		직접단독	6	10.53
	합계			57

자료: 아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아동복지 관련 국고지출금 사업 중 중앙정부와 기초가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1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광역과 기초가 50%씩 부담하는 아동복지 국고지출금 사업이 8개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하고 광역과 기초가 25%씩 부담하는 아동복지 국고지출금 사업이 7개이며, 중앙-광역-기초가 1/3씩 부담하는 아동복지 국고지출금 사업도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아동복지 관련 국고지출금 사업은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아동 관련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재원부담 비율(보조율별)

중앙정부	보조율		사업 수	비율(%)
	광역	기초		
0.33	-	-	1	1.75
0.95	-	-	1	1.75
1/2	1/2	1/2	1	1.75
1/2	1/4	1/4	7	12.28
1/2	-	1/2	14	24.56
1/2	-	1/4	4	7.02
1/3	1/3	1/3	7	12.28
1/3	2/3	-	1	1.75
1/3	-	2/3	3	5.26

중앙정부	보조율		사업 수	비율(%)
	광역시	기초		
1/4	1/4	1/2	1	1.75
10/10	-	-	4	7.02
2/3	1/6	1/6	3	5.26
37/45	4/45	4/45	1	1.75
-	1/2	1/2	8	14.04
정액	-	-	1	1.75
합계			57	100.00

자료: 아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2) 아동복지 관련 사업

아동복지 관련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재원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수당의 경우 중앙-광역시-기초 간 재원분담 비율은 2/3, 1/6, 1/6으로 아동수당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대책과 보육시설 정비 등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기초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어린이 교실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광역시-기초가 1/3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본대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취학지원금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마나시현에서 특수하게 추진하는 보육사업의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아동 관련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재원분담 비율(보조율별)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시	기초	
후 생 노 동 청	아동학대 대책 종합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① 市の 부인상담원활동강화대책사업	직접	1/2	1/2		1/2	아동학대 DV대책종합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교부요강
		② 시정촌의 아동학대방지대책지원사업		1/2	1/2		1/2	
		③ 市の 아동양호시설환경개선사업 (縣보조 2/3)		1/2	1/2		1/2	
		④ 시정촌의 지역보육지원거점환경개선 사업 (縣보조 2/3)		1/2	1/2		1/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아동수당교부금 縣부담금	• 피용자(0~3세 미만)	직접 단독	41/45	37/45	4/45	4/45	「아동수당법」 제18조 1항, 2항, 3항
		• 피용자(3~중학교 수료 전)		5/6	2/3	1/6	1/6	
		• 비피용자(중학교 수료 전)		5/6	2/3	1/6	1/6	
		• 특례급부(중학교 수료 전)		5/6	2/3	1/6	1/6	
	아동부양수당급부 비 국고부담금	아동부양수당급부사업	직접	1/3	1/3		2/3	「아동부양수당법」 제21조
	아동보호조치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입소시설조치비 부담금	직접	3/4	1/2	1/4	1/4	
	보육대책종합지원 사업비 보조금	대기아동해소 촉진에 필요한 사업 조성	간접	2/3	1/3	1/3	1/3	아마나시현 보육대책종합지원 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의료제공체제 시설정비 교부금	병아·병후아 보육시설정비사업	간접	0.33* 0.95	0.33* 0.95			「의료법」 제30조의 4 등
후 생 노동 청	아마나시현 안심아동기금 보육서비스 충실사업비 보조금	• 보육소 긴급정비사업	간접	1/2	1/2		1/4	아마나시현 방과후아동 건전육성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 임대물건에 의한 보육소 정비사업	간접	1/2	1/2		1/4	
		• 인증어린이집 정비사업비	간접	1/2	1/2		1/4	
		• 가정내 보육 개수사업	간접	1/2	1/2		1/4	
	재난피해 아동의 건강생활대책 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	동일본대지진으로 보육료 및 아동입소 시설 징수금감면 지원	간접	10/10	10/10			아마나시현 피해 아동 건강생활지원 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아동·보육지원체 제정비 종합추진사업비 보조금	보육지원원 연수사업 직원질향상,인재확보연수사업	직접	1/2	1/2		1/2	아동·보육지원체제 정비종합추진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요강
	아동후생시설 정비비 보조금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시정 촌이 책정한 계획에 근거한 시설정비 보조	직접 단독	1/3	1/3	1/3	1/3	아마나시현 아동후생시설 정비비 보조금 교부요강, 아동보육지원정비교 부금 교부요강
	내 각 부	아동후생시설 정비비 보조금	시정촌 아동보육지원사업계획에 근거한 방과후 아동수업 및 병아보육사업 실시 를 위한 시설정비 보조	직접 단독	1/3	1/3	1/3	1/3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현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급부 부담금	교육표준시간 인정 및 보육인정을 받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유치원, 인종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필요한 비용 급부	직접	10/10	1/2	1/4	1/4	「아동보육지원법」 등
	아마나시현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급부비 지방단독 보조금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급부비 지방단독비용보조금 교부요강
	아마나시 보육안심보육추진 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보육소, 인증어린이집에 간호사 배치에 필요한 경비의 1/2 보조	간접	1/2	1/4	1/4	1/2	아마나시 보육안심보육 추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아동·보육지원 교부금	시정촌이 실시하는 지역아동·보육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조	직접	1/3	1/3	1/3	1/3	아동보육지원교부금 교부요강 등
	아마나시현 지역아동·보육사업비 보조금		단독		정액			
	아마나시현 보육소특별보육사업추진비 보조금	산후, 육후 이후 특별보육추진위해 보육사고용 경비조성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유유아의료비조성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지급하는 유유아의료비조성금 보조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유유아의료대책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심사지불기관에 위탁하는 의료비 심사지불사업 경비 보조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유유아의료지급사무비 보조금	시정촌 국민건강보험국보부담금 감면에 상당경비 보조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한부모가정의료비 조성사업비 보조금	유유아의료비 현물급부(국민건강보험국 고부담금 감면 상당) 경비보조	단독	1/2		1/2	1/2	
후 생 노 동 성	아마나시 보육응원사업 보조금	둘째 이후 3세 미만아 보육료 무료화 경비 보조	단독	1/2		1/2	1/2	
	장애아 입소급부비 부담금 및 장애아 입소의료비 부담금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아 통원급부	직접	3/4	1/2	1/4	1/4	장애아입소급부비 부담금 및 장애아입소의료비 부담금 교부요강
	소아구급의료체제 정비비 보조금	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구급의료 체제 운영비(약제대응사업, 연락조정사업은 단독사업)	간접	2/3	1/3	1/3	1/3	의료제공체제추진사업비 보조금 교부요강 등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아마나시현 소아만성특정질환 아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비 보조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현저히 지장이 있는 재택의 소아만성특정질환아에 대 해 시정촌이 일상생활용구를 급부하는 사업 보조	간접					소아만성특정질환아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 실시요강
		복지사무소 설치		1/2	1/2		1/2	
		복지사무소 마설치		3/4	1/2	1/4	1/4	
	미숙아양육의료비 국고부담금	미숙아 양육의료 급부 필요비용	직접	3/4	1/2	1/4	1/4	미숙아양육의료비 국고부담금 교부요강
현	난청아 보청기구입사업비 보조금	경도, 중도 난청아에게 보청기구입비용 조성	단독	1/2		1/2	1/2	
	아마나시현 양육의료비 부담금	미숙아 양육의료 급부 필요비용	단독	3/4	1/2	1/4	1/4	아마나시현 양육의료비 부담금 교부요강
문 화 과 학 성	벽지아동학생원조 비 보조금	스쿨버스, 보트 구입비	직접	1/2	1/2		1/2	벽지교육진흥법
		기숙사설비 정비비		1/2	1/2		1/2	
		원거리 통학비		1/2	1/2		1/2	
		기숙사 거주비		1/2	1/2		1/2	
		의사, 치과의사 파견		1/2	1/2		1/2	
		벽지학교심장검진사업		1/3	1/3		2/3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금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시정 촌이 실시하는 취원장려사업 경비 보조	직접	1/3	1/3		2/3	보조금교부요강	
요보호아동학생원 조비 보조금 및 특별지원교육취학 장려비 보조금	경제적 이유로 취학곤란이 인정된 학생 및 예정자 보호자에게 필요 원조 시 경 비보조	직접	1/2	1/2		1/2	취학곤란 아동 및 학생에 관한 취학장려에 관한 국가원조 법률 등	
아마나시현 재해유아아동학생 취원취학지원사업 비 보조금	동일본대지진으로 취원, 취학이 곤란해 진 유아아동학생 보호자에 대한 원조사 업 보조	간접	10/10	10/10			보조금교부요강	
고등학교 취학지원금 교부금		직접	국가가 정하는 산식 및 비율	10/10			고등학교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	
고등학교 취학지원사업비 보조금		직접	국가가 정하는 산식 및 비율	10/10			보조금교부요강	

주관 성청	보조금명	보조내용	구분	보조율	부담비율			근거법령
					국가	광역	기초	
	고등학교 수학지원사업비 보조금(장학위한 급부금)	수업이외 교육비에 경제적 부담경감 위 해 고등학생이 있는 저소득세대에 광역 이 장학급부금 지급	직접	국가가 정하는 산식 및 비율	1/3	2/3		고등학교 수학지원사업비 보조금교부요강
	고등학교 수학지원사업비 보조금(가계급변 세대 지원)	취학지원금 소득기준(시정촌민세 소득 할액 304,200엔 이상) 해당하고 취학 지원금을 받지 않는 학생이 가계급변상 황으로 수업이 격감한 경우 취학지원금 에 반영될 때까지 동안 지자체가 수업 료 감면조치	직접	국가가 정하는 산식 및 비율	1/2	1/2	1/2	고등학교 수학지원사업비보조 금 교부요강
	방과후 어린이교실 추진사업비 보조금	방과후 어린이종합플랜 추진	간접	2/3	1/3	1/3	1/3	아마나시현 방과후 어린이교실추진사업 비 보조금교부요강
	오보호아동학생원 조비 보조금	취학원조	직접	1/2	1/2		1/2	「학교보건안전법」, 「학교급식법」 등

자료: 아마나시현(2019), 시정촌의 국현지출금 개요

2) 사이타마현

(1) 개요⁴⁰⁾

2019년 기준 사이타마현의 국고지출금 사업은 총 251개이며, 예산액은 49,451,958천 엔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서별로 살펴보면, 소자정책과 소속 국고지출금이 2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가지정비과와 지역정책과가 23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 실제 사업은 총 241개이지만, 세부사업별 보조금 비율이 다른 경우 분리하여 집계하여 총 251개의 사업으로 기록하였다. 단, 예산은 한 번만 반영하여 중복되지 않게 처리하였다(▲공조사회만들기과(1), ▲공원스타지움과(2), ▲농업정책과(2), ▲농업비즈니스지원과(1), ▲소비생활과(1), ▲전원도시만들기과(2), ▲정보시스템과(1)).

표 3-26. 사이타마현 분야별 국고지출금 사업 수, 비중 및 예산 (단위: 천 엔, %)

분야	사업 수	비중(%)	예산	예산 비중
건강장수과	18	7.17	819,612	1.66
건축안전과	3	1.20	-	-
고령자복지과	2	0.80	6,361	0.01
고용노동과	1	0.40	25,626	0.05
공원스타지움과	4*	1.59	-	-
공조사회만들기과	4*	1.59	33,552	0.07
교통정책과	7	2.79	544,953	1.10
국보의료과	3	1.20	10,172,797	20.57
국토수정정책과	2	0.80	92,900	0.19
기업입지과	1	0.40	4,000	0.01
녹색자연과	3	1.20	131,900	0.27
농산물안전과	1	0.40	14,400	0.03
농업비즈니스지원과	5*	1.99	221,076	0.45
농업정책과	3*	1.20	441,310	0.89
농업지원과	5	1.99	218,203	0.44
농촌정리과	10	3.98	1,235,117	2.50
도로가로과	8	3.19	-	-
도시계획과	2	0.80	-	-
문화자원과	2	0.80	66,270	0.13
방범·교통안전과	1	0.40	27,000	0.05
보건체육과	2	0.80	35,435	0.07
사회복지과	2	0.80	555,819	1.12
산업·서비스 산업지원과	1	0.40	12,760	0.03
삼림만들기과	11	4.38	713,821	1.44
색채의 나라 사이타마 만들기 광역연합 인재개발부	2	0.80	527	0.00
생도지도과	1	0.40	255,600	0.52
생애학습추진과	2	0.80	14,761	0.03
생활위생과	4	1.59	1,554,240	3.14
소방방재과	7	2.79	911,130	1.84
소비생활과	2*	0.80	100,000	0.20

분야	사업 수	비중(%)	예산	예산 비중
소자정책과	24	9.56	14,888,814	30.11
소중학교인사과	2	0.80	80,321	0.16
수환경과	1	0.40	500,800	1.01
시가지정비과	23	9.16	861,248	1.74
아동안전과	2	0.80	10,556	0.02
약무과	1	0.40	2,892	0.01
위기관리과	2	0.80	8,000	0.02
의료인재과	1	0.40	8,000	0.02
의료정비과	4	1.59	252,298	0.51
의무교육지도과	2	0.80	11,860	0.02
인권교육과	1	0.40	400	0.00
인권추진과	1	0.40	35,015	0.07
자원순환추진과	2	0.80	-	-
장애인복지추진과	3	1.20	1,643,374	3.32
장애인지원과	8	3.19	494,329	1.00
재무과	8	3.19	26,463	0.05
전원도시만들기과	3*	1.20	14,134	0.03
정보시스템과	5*	1.99	-	-
주택과	5	1.99	-	-
지역정책과	23	9.16	12,037,400	24.34
지역포괄케어과	1	0.40	26,050	0.05
질병대책과	1	0.40	4,829	0.01
토지수정정책과	4	1.59	308,005	0.62
하수도사업과	1	0.40	-	-
하천사방과	3	1.20	28,000	0.06
학사과	1	0.40	-	-
합계	251*	100.00	49,451,958	100.00

자료: 사이타마현(2020), 시정촌에 대한 지원제도

보조율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광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47개(18.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기초가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30개(12.0%), 중앙-광역-기초가 1/3씩 부담하는 사업이 17개(6.8%)로 나타났다.

표 3-27. 사이타마현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자원부담 비율(보조율별) (단위: 천 엔, %)

보조율				사업 수	비율	예산	비율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1/2	0.2/10	4.8/10		1	0.40	25,272	0.05
1/2	1/2			2	0.80	3,764	0.01
1/2	1/2 등			2	0.80	-	-
1/2	1/4	1/4		16	6.37	2,285,652	4.62
1/2	1/4	1/8	1/8	1	0.40	124,353	0.25
1/2	1/5	2/15	1/6	1	0.40	-	-
1/2		1/2		30	11.95	574,887	1.16
1/2		1/4	1/4	3	1.20	2,274,237	4.60
1/2			1/2	1	0.40	-	-
1/2 등	1/2 등			1	0.40	57,331	0.12
1/2 등		1/2 등		12	4.78	500,800	1.01
1/3	1/3	1/3		17	6.77	8,490,264	17.17
1/3	1/6	1/2		1	0.40	4,461	0.01
1/3	1/6	1/6	1/3	2	0.80	382,561	0.77
1/3	1/9	2/9	1/3	1	0.40	680,035	1.38
1/3		2/3		11	4.38	832,399	1.68
1/3 등	1/6 등	1/6 등	1/3 등	2	0.80	60,900	0.12
1/3 등		1/3 등	1/3 등	3	1.20	-	-
1/4	1/8	1/8	1/2	2	0.80	6,361	0.01
2/3	1/3			1	0.40	26,050	0.05
2/3	2/15	4/45	1/9	1	0.40	-	-
2/3		1/3		2	0.80	-	-
2/3~10/10		0~1/3		1	0.40	26,463	0.05
2/5		3/5		1	0.40	-	-
2/9	4/9	1/3		1	0.40	70,632	0.14
3/4	1/8	1/8		1	0.40	418,635	0.85
3/10	0.1/10	6.9/10		1	0.40	26,959	0.05
3/20		17/20		1	0.40	200,000	0.40
4/9	2/9	3/9		1	0.40	153,222	0.31
7/10		3/10		1	0.40	-	-

보조율				사업 수	비율	예산	비율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10/10				8	3.19	1,690,993	3.42
5.5/10		4.5/10		7	2.79	-	-
5.5/10~1/2	1/3~1/5	3/10~3.5/30		1	0.40	181,213	0.37
정액				3	1.20	658,291	1.33
정액		정액		1	0.40	-	-
정액 등				1	0.40	-	-
	1/2	1/2		47	18.73	23,251,826	47.02
	1/2		1/2	1	0.40	900	0.00
	1/2 등	1/2 등		2	0.80	1,514,134	3.06
	1/2~2/3	1/2~2/3		1	0.40	27,000	0.05
	1/3	2/3		6	2.39	403,613	0.82
	1/3	1/3	1/3	1	0.40	12,760	0.03
	2/3	1/3		5	1.99	3,112,774	6.29
	3/10	7/10		2	0.80	11,842	0.02
	9/10	1/10		1	0.40	5,400	0.01
	10/10			20	7.97	909,030	1.84
	정액			3	1.20	442,865	0.90
		1/2 이상	1/2 이하	1	0.40	3,552	0.01
		1/3	2/3	2	0.80	-	-
		1/3 등	2/3 등	2	0.80	-	-
			3/5	1	0.40	-	-
			10/10	13	5.18	527	0.00
				1	0.40	-	-
합계				251	100.00	49,451,958	100.00

자료: 사이타마현(2020), 시정촌에 대한 지원제도

251개의 국고지출금 사업 중 57개(22.7%)는 예산액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194개는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251개 사업 중 2019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165개(65.7%)로 나타났다.

표 3-28. 사이타마현 국고보조금의 예산, 상한액 및 예산액 여부

예산 여부	상한액 여부	예산액 여부			총계	예산액(천 엔)
		있음	없음	합계		
있음	있음	3	36	39	165	49,451,958
	없음	9	117	126		
없음	있음	2	16	18	86	0
	없음	5	63	68		
합계		19	232	251	251	49,451,958

자료: 사이타마현(2020), 시정촌에 대한 지원제도

(2) 아동복지 관련 사업

아동복지 관련 국고지출금의 정부 간 자원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 등에 대한 보조금인 시설형 급부비는 중앙-광역-기초가 1/2, 1/4, 1/4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교실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광역-기초가 1/3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자녀세대 보육료 경감 사업이나 다자녀세대 응원 쿠폰 사업 등과 같은 특수한 사업은 광역과 기초가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사이타마현 아동관련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부담비율

현 담당과	제도명칭	제도개요	예산	부담비율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소자 정책과	인가 외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비 보조금 (아동을 위한 교육, 보육급부비 보조금, 보육대책종합지원)	아동·육아 지원의 새로운 제도에 따라, 인가보육소 등을 목표로 하는 인가 외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17,839	1/2	1/4	1/4	
학사과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금	시정촌이 실시하는 유치원의 입학료·보육료를 감면하는 사업(취원장려비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1/3		2/3	
소자 정책과	시설형 급부비 (유치원 등 보조금)	시정촌이 교육표준시간 인정을 받은 아동을 시설형 급부비를 받은 유치원등에 입학시키는 경우, 사립유치원 등에 한하여 소요 경비를 보조한다.	1,223,687	1/2	1/4	1/4	
소자 정책과	대기아동대책 활용사업비 (유치원보육실축진사업)	유치원을 11시간 이상 운영하여, 통상 교육시간 전후나, 장 기 휴업기간 중 등에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돌볼 때에는 운영비를 보조한다(대상시설 수 7개소).	23,232	1/2	1/4	1/4	
건강 장수과	자립지원료 (육성의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방치하면 장애로 남을 것으로 인정된 질환이 있는 아동 중, 확실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자에 대해서 의료급부. 급부는 시정촌이 행해, 현은 그 비용의 1/4을 부담한다.	73,509	1/2	1/4	1/4	

제3장 | 주요 국가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실태

현 담당과	제도명칭	제도개요	예산	부담비율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재무과		시정촌이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아동, 생도의 보호자에 대하여 행하는 취학원조사업(학용품비 등) 중 보호 필요 아동, 생도에 대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1/2		1/2	
소자 정책과	사이타마현 패밀리서포트 센터사업비 보조금	시정촌이 실시(위탁 또는 보조를 포함한다)하는 패밀리서포트 센터사업 및 환우아동 긴급대응 강화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98,210	1/3	1/3	1/3	
아동 안전과	보호필요 아동 대책 지원협의회지원사업 (아동을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 기능강화사업)	시정촌이 설치하는 보호필요 아동 대상지원협의회의 체재강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8,184	1/3	1/3	1/3	
건강 장수과	유아가정 전세대방문·보육지원 방문사업비보조	유아가 있는 전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정보제공을 행하는 유아가정 전세대방문사업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육아·가정지원 등을 행하는 보육지원 방문사업을 행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113,059	1/3	1/3	1/3	
생애 학습 추진과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 보조금	방과 후 등에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장소 만들기를 추진함과 동시에, 토요일에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활용한 학습 등 프로그램을 기획·실시하는 시도, 학력향상을 과제로 안고 있는 중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 토요일의 교육지원사업 및 중학생 학력 업 교실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정령지정도시 및 중핵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인재가 확보되지 않아, 실시일 수, 교실수를 확대할 수 없는 시정촌에 대한 어드바이저 배치에 보조부담비율은 국가 1/3, 현 2/3).	318,085	1/3	1/3	1/3	
소자 정책과	사이타마현 방과 후 아동 전육성사업비 보조금	취업 노동 등으로 인해 주간에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초등학생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 후 아동클럽의 운영(위탁 또는 보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한다.	4,770,656	1/3	1/3 (1/3)	1/3 (1/3)	
소자 정책과	보육사 연수 등 사업 (보 육보조자 고용강화사업)	보육소 등에 있어 보육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사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사의 고용 관리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보육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육사자격을 갖지 않는 단시간 근무의 보육보조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	418,635	3/4	1/8	1/8	
소자 정책과	사이타마현 아동·육아지원 정비교부금	취업 노동 등으로 인해 주간에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초등학생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 후 아동 클럽의 신설정비, 기존설비의 개수정비, 필요한 설비의 정비와 동시에 장애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수를 행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379,908	1/3 (2/9)	1/3 (2/9)	1/3 (2/9)	(1/3)
소자 정책과	보육소 지역육아지원사업비 (아동·육아지원교부금, 피해자건강·생활지원종합교부금, 보육대상 종합지원사업비 보조금)	육아 지원 및 보육에 대한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환우아동 보육사업, 연정보육축진사업, 일시보육사업, 보육료영감면제 지원사업, 실비징수 등에 따른 보육급부사업, 다양한 사업자의 신규참여·능력활용사업 및 의료적 케어아동보육지원모델사업에 대하여 보조한다.	1,511,587	1/3 10/10 1/2	1/3 1/4	1/3 1/4	
재무과	학교시설환경 개선교부금	공립유치원, 공립학교시설(圖書·校舍·체육관등)의 개축, 보강, 정수명화개량, 대규모 개조, 옥외 교육환경, 나무교육환경, 지역·학교연계시설, 방재기능강화, 태양열발전 등의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교부한다. ※ 기본적인 부담비율은 1/30이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담비율이 1/2, 2/3	-	1/3~ 2/3		1/3~ 2/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현 담당과	제도명칭	제도개요	예산	부담비율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부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					
재무과	피해아동, 생도 취학 등 지원 사업비 보조금	동일본대지진 혹은 그 외의 대규모재해로 인해 취학 등이 곤란해진 유아아동생도의 보호자에 대하여 시정촌이 교육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를 보조한다.	26,463	2/3-10/10		0-1/3	
장애인지원과	재택 중증심신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하여 (respit care 7) 사업 ① 쇼트스테이 촉진사업비, ② 데이서비스 촉진사업비	의료적 케어를 필요로 하는 중증심신장애아동 등을 자택에서 간호하는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아동에게 쇼트스테이 및 데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을 지원한다. ① 쇼트스테이 촉진사업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재택의 중증 심신장애아동 등에게 쇼트스테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형 단기입소시설에 보조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데이서비스 촉진사업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재택의 중증심신장애아동에게 데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간호스테이션 등에 보조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2,815		1/2	1/2	
장애인지원과	데이서비스 제공 촉진사업	방과 후 등 데이서비스 등의 사업소에,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장애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병상 설치 등의 보조를 행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7,500		1/2	1/2	
소자정책과	안심·건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비 보조금	사립 인가보육소등에 저연령 유아나 장애아동,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의 수용이나, 1세 아동 보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사를 증원함에 따른 경비를 보조한다(보조율: 현 1/2, 시정촌 1/2).	1,355,275		1/2	1/2	
소자정책과	사이타마현 편모가정 등 대책비 보조금 (편모가정 등 일상생활지원사업)	시정촌에서 실시하는 편모가정 등 일상생활지원사업(편모가정에 가정생활지원 직원을 파견하여 가사와 육아를 지원한다)에 대해,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180	1/2	1/4	1/4	
소자정책과	가정보육실 등 운영사업비 보조금	양질의 인가와 보육시설로, 시정촌의 지정을 받은 가정보육실(기업등이 설치하는 기업 내 보육시설로 종업원의 아동에 지역아동을 수용하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0-2세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장시간 보육추진비, 장애아동 보육추진비)를 보조한다(보조율 현 1/2, 시정촌 1/2).	20,220		1/2	1/2	
소자정책과	다자녀세대 보육료 경감 사업	다자녀세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보육소 등에 입소하는 셋째 이후의 아동(만 3세 미만)의 보육료를 보조한다. ※시정촌이 부담을 하지 않고, 현만으로 사업실시도 가능하다. 보조율 1/2(시정촌 부담은 필수가 아니다)	1,067,643		1/2	1/2	
소자정책과	다자녀세대 응원 쿠폰사업	시정촌이 셋째 아동 이후를 대상으로 추가 시행하는 상품권, 축하금, 쿠폰 등의 급부사업에 대하여 조성한다.	35,000		1/2	1/2	
소자정책과	경도·중급도 난청아동 보청기구입 등 조성사업	경도·중급도 난청아동의 언어습득과 교육 등에 있어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청기 구입 비용 등의 조성을 행하는 시정촌(사이타마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3,833		1/3	1/3	
소자정책과	사이타마현 특별지원 학교방과후 아동대책사업비 보조금	장애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지원학교에 통학하는 아동으로 조직된 특별지원학교 방과 후 아동클럽의 운영(위탁 또는 보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한다.	3,948		1/3	2/3	

현 담당과	제도명칭	제도개요	예산	부담비율			
				국가	현	시정촌	그 외
국보 의료과	유아의료비 지급사업 보조금	보호자의 경험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취약 전 유아에 관한 각종 의료보험의 일부를 보조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해당 경비의 1/2를 보조한다.	2,713,044		1/2	1/2	
		재정력지수 1을 넘는 시정촌 (정령시는 보조대상 외)			5/12	7/12	
		재정력지수 1.1 이상의 시정촌 (정령시는 보조대상 외)			1/3	2/3	

자료: 사이타마현(2020), 시정촌에 대한 지원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 및 주요 쟁점

제1절 재원분담 현황

제2절 주요 쟁점

제4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 및 주요 쟁점

제1절 재원분담 현황

1. 개요

1) 부처별 현황

2019년 기준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개 부처가 42개 아동복지사업에 약 11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9개의 사업에 9조 8,813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 등 16개 사업에 1조 207억 원(9.2%)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7개 사업에 약 1,4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총사업비 기준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2019년 기준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소관 부처별) (단위: 백만 원, %)

소관부처	사업수	총사업비	대표사업
보건복지부	19	9,881,300(89.5)	영유아보육료 지원
여성가족부	16	1,020,680(9.2)	아이돌봄 지원
기획재정부	3	92,448(0.8)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	1	7,660(0.1)	직장어린이집지원
법무부	1	41,802(0.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경찰청	2	102(0.0)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합계	42	11,043,994(100.0)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2019년 기준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사업비 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은 약 5조 1,254억 원으로, 전체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2조 9,657억 원, 26.9%),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조 1,944억 원, 10.8%), 지역아동센터 지원(3,640억 원, 3.3%),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3,393억 원, 3.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3,346억 원, 3.0%) 등 상위 6개 사업이 전체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의 9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 2019년 기준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사업비 규모별)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소관부처	총사업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5,125,391(46.4)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2,965,735(26.9)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194,391(10.8)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363,972(3.3)
아이돌봄 지원	여성가족부	339,253(3.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334,594(3.0)
장애아동가족 지원	보건복지부	148,454(1.3)
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118,277(1.1)
공공형어린이집	보건복지부	111,912(1.0)
청소년시설확충(지역자율, 세종, 제주)	여성가족부	110,270(1.0)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	86,318(0.8)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59,371(0.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기획재정부	52,057(0.5)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45,492(0.4)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42,643(0.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무부	41,802(0.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37,040(0.3)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보건복지부	30,183(0.3)
입양아동가족 지원	기획재정부	27,382(0.2)
시간제보육 지원	보건복지부	21,683(0.2)

사업명	소관부처	총사업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보건복지부	20,500(0.2)
다함께 돌봄 사업	보건복지부	18,930(0.2)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18,734(0.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보건복지부	14,045(0.1)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가족부	13,747(0.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13,743(0.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보건복지부	13,300(0.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기획재정부	13,009(0.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10,760(0.1)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여성가족부	10,353(0.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여성가족부	10,118(0.1)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7,660(0.1)
청소년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7,106(0.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여성가족부	5,531(0.1)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보건복지부	2,501(0.0)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여성가족부	2,438(0.0)
가정위탁 지원·운영	보건복지부	1,663(0.0)
청소년 참여지원	여성가족부	1,353(0.0)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여성가족부	703(0.0)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경찰청	101(0.0)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1(0.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1(0.0)
합계	6개 부처	11,043,994(100.0)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2) 지방자치단체별 재원분담 현황

본청과 기초를 포함한 시도별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와 서울의 사업비가 각각 3.08조 원과 1.26조 원으로 많으며, 세종과 제주가 각각 1,148억 원과 1,841조 원으로 가장 적다.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은

전국 평균 국비 70.0%, 시도비 17.1% 그리고 시군구비 12.9%이다. 제주(64.95%), 충남(65.18%), 전남(65.74%), 세종(67.33%), 강원(68.08%), 서울(68.7%)이 전국 평균 국비 비율보다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평균적으로 시도비 부담비율(19.5%)이 높은 반면, 도는 시군구비 부담비율(17.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본청 + 기초) (단위: 백만 원, %)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특별시	1,264,195 (100.00)	868,538 (68.70)	284,207 (22.48)	111,450 (8.82)
부산광역시	665,224 (100.00)	492,404 (74.02)	129,740 (19.50)	43,079 (6.48)
대구광역시	501,846 (100.00)	370,541 (73.84)	88,915 (17.72)	42,391 (8.45)
인천광역시	639,780 (100.00)	476,125 (74.42)	113,003 (17.66)	50,653 (7.92)
광주광역시	387,441 (100.00)	281,398 (72.63)	74,848 (19.32)	31,196 (8.05)
대전광역시	380,417 (100.00)	271,339 (71.33)	81,253 (21.36)	27,826 (7.31)
울산광역시	284,796 (100.00)	206,617 (72.55)	53,629 (18.83)	24,550 (8.62)
세종특별자치시	114,823 (100.00)	77,314 (67.33)	37,509 (32.67)	0 (0.00)
경기도	3,077,373 (100.00)	2,154,881 (70.02)	447,919 (14.56)	474,573 (15.42)
강원도	343,600 (100.00)	233,919 (68.08)	47,591 (13.85)	62,090 (18.07)
충청북도	390,106 (100.00)	274,420 (70.35)	51,235 (13.13)	64,451 (16.52)
충청남도	528,928 (100.00)	344,734 (65.18)	86,394 (16.33)	97,800 (18.49)
전라북도	422,678 (100.00)	298,228 (70.56)	53,509 (12.66)	70,940 (16.78)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라남도	428,122 (100.00)	281,457 (65.74)	65,620 (15.33)	81,045 (18.93)
경상북도	615,027 (100.00)	423,762 (68.90)	83,102 (13.51)	108,163 (17.59)
경상남도	815,481 (100.00)	558,015 (68.43)	120,936 (14.83)	136,531 (16.74)
제주특별자치도	184,156 (100.00)	119,618 (64.95)	64,538 (35.05)	0 (0.00)
합계	11,043,994 (100.00)	7,733,308 (70.02)	1,883,948 (17.06)	1,426,737 (12.92)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다음으로 13개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합계는 총 10,188,124백만 원으로 국비 6,995,315백만 원(68.66%), 시도비 1,879,389백만 원(18.45%), 시군구비 1,313,422백만 원(12.89%)로 구성되어 있다. 합계 규모는 경기도 2,826,204백만 원, 서울시 1,506,675백만 원, 경상남도 732,914백만 원 등의 순서이다. 전체 합계 중 국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75.49%), 부산광역시(75.32%), 대구광역시(74.99%), 광주광역시(74.96%) 대전광역시(74.84%) 등 주로 광역시의 국비 지원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서울특별시(52.93%)는 국비의 비중이 가장 낮고 시도비 및 시군구비의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시도비가 16~18%이고 시군구비는 7~8%로 시도비의 비중이 시군구비보다 높다. 반면 도의 경우 시도비가 11~16%, 시군구비도 13~17%로 시도와 시군구의 재원부담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13개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본청 + 기초) (단위: 백만 원, %)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특별시	1,506,675 (100.00)	797,491 (52.93)	486,406 (32.28)	222,780 (14.79)
부산광역시	592,623 (100.00)	446,371 (75.32)	104,632 (17.66)	41,621 (7.02)
대구광역시	444,929 (100.00)	333,639 (74.99)	75,335 (16.93)	35,956 (8.08)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인천광역시	580,276 (100.00)	438,063 (75.49)	97,209 (16.75)	45,003 (7.76)
광주광역시	327,978 (100.00)	245,842 (74.96)	58,987 (17.99)	23,151 (7.06)
대전광역시	328,405 (100.00)	245,778 (74.84)	59,185 (18.02)	23,443 (7.14)
울산광역시	262,677 (100.00)	193,109 (73.52)	46,115 (17.56)	23,458 (8.93)
세종특별자치시	105,155 (100.00)	70,008 (66.58)	35,149 (33.43)	(0.00)
경기도	2,826,204 (100.00)	2,005,555 (70.96)	424,131 (15.01)	396,516 (14.03)
강원도	281,720 (100.00)	194,264 (68.96)	40,180 (14.26)	47,274 (16.78)
충청북도	337,972 (100.00)	242,521 (71.76)	43,634 (12.91)	51,820 (15.33)
충청남도	468,089 (100.00)	309,514 (66.12)	77,584 (16.57)	80,993 (17.30)
전라북도	353,821 (100.00)	257,537 (72.79)	41,603 (11.76)	54,683 (15.45)
전라남도	347,236 (100.00)	233,725 (67.31)	52,608 (15.15)	60,905 (17.54)
경상북도	535,576 (100.00)	374,566 (69.94)	73,950 (13.81)	87,060 (16.26)
경상남도	732,914 (100.00)	504,970 (68.90)	109,174 (14.90)	118,766 (16.20)
제주특별자치도	155,876 (100.00)	102,361 (65.67)	53,514 (34.33)	(0.00)
합계	10,188,124 (100.00)	6,995,315 (68.66)	1,879,389 (18.45)	1,313,422 (12.89)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그리고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비 비중의 경우 특광역시와 도는 약 65% 내외, 군과 구는 67% 내외이나, 시는 70.64%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국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비의 경우 특광역시 및 도는 약 35%이며 시군구비는 거의 없다. 시군의 경우 시도비 및 시군구비의 비중이 약 14~17%로 유사하다. 반면 구의 경우 시도비의 비중이 22.67%이고 시군구비의 비중이 10.16%로 나타나 시도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13개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시도, 시군구별) (단위: 백만 원, %)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특별·광역시	137,909 (100.00)	89,080 (64.59)	48,804 (35.39)	25 (0.02)
도	172,460 (100.00)	113,493 (65.81)	58,917 (34.16)	50 (0.03)
시	5,484,142 (100.00)	3,874,272 (70.64)	800,611 (14.60)	809,259 (14.76)
군	696,713 (100.00)	470,531 (67.54)	107,089 (15.37)	119,093 (17.09)
구	4,069,708 (100.00)	2,733,683 (67.17)	922,643 (22.67)	413,382 (10.16)
합계	10,560,932 (100.00)	7,281,059 (68.94)	1,938,064 (18.35)	1,341,809 (12.71)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유아보육료의 재원분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 및 도의 경우 국비의 비중이 약 65%, 시도비는 약 35% 수준으로 나타난다. 구의 경우 국비의 비중이 63.65%로 가장 낮고 시도비는 25.45%, 시군구비가 10.91%로 나타난다. 시의 경우 국비의 비중이 69.86%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비는 16.86%, 시군구비는 13.28%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사업별 재원분담 현황

주요 사업별 재원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합계는 총 5,125,392백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3,428,777백만 원 (66.90%), 시도비는 1,062,464백만 원(20.73%), 시군구비는 634,150백만 원(12.37%)로 구성되어 있다. 합계 규모는 경기도 1,448,232백만 원, 서울시 775,324백만 원, 경상남도 379,220백만 원 등의 순서이다. 국비 비중이 높은 곳은 주로 광역시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가 모두 75%로 나타났으며 도에서는 전라북도가 7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도 국비의 비중이 45.0%로 가장 낮다. 시도비를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광역 시도 대부분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라북도의 경우 시도비가 10.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의 경우 시군구비가 7~9% 범위이며, 도의 경우 13~16%로 광역시도에 비해 시군구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4-6.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현황(본청 + 기초) (단위: 백만 원, %)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특별시	775,324 (100.00)	348,896 (45.00)	298,500 (38.50)	127,929 (16.50)
부산광역시	271,851 (100.00)	203,888 (75.00)	47,574 (17.50)	20,389 (7.50)
대구광역시	207,460 (100.00)	155,595 (75.00)	36,305 (17.50)	15,559 (7.50)
인천광역시	289,289 (100.00)	216,635 (74.89)	50,626 (17.50)	22,029 (7.61)
광주광역시	169,344 (100.00)	127,008 (75.00)	29,635 (17.50)	12,701 (7.50)
대전광역시	171,256 (100.00)	128,442 (75.00)	29,970 (17.50)	12,844 (7.50)
울산광역시	126,208 (100.00)	92,612 (73.38)	22,086 (17.50)	11,510 (9.12)
세종특별자치시	47,063 (100.00)	30,866 (65.58)	16,197 (34.42)	0 (0.00)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경기도	1,448,232 (100.00)	1,015,560 (70.12)	253,441 (17.50)	179,231 (12.38)
강원도	134,020 (100.00)	91,744 (68.46)	23,454 (17.50)	18,822 (14.04)
충청북도	172,250 (100.00)	123,076 (71.45)	24,587 (14.27)	24,587 (14.27)
충청남도	241,875 (100.00)	157,219 (65.00)	42,328 (17.50)	42,328 (17.50)
전라북도	178,332 (100.00)	129,721 (72.74)	19,444 (10.90)	29,166 (16.36)
전라남도	164,119 (100.00)	109,523 (66.73)	28,721 (17.50)	25,875 (15.77)
경상북도	270,661 (100.00)	188,306 (69.57)	45,622 (16.86)	36,733 (13.57)
경상남도	379,220 (100.00)	258,409 (68.14)	66,363 (17.50)	54,447 (14.36)
제주특별자치도	78,888 (100.00)	51,277 (65.00)	27,611 (35.00)	0 (0.00)
합계	5,125,392 (100.00)	3,428,777 (66.90)	1,062,464 (20.73)	634,150 (12.37)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아동수당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합계는 총 3,088,581백만 원이고, 그중 국비는 2,265,697백만 원(73.36%), 시도비는 431,488백만 원(13.97%), 시군구비는 391,396백만 원(12.67%)를 차지하고 있다. 합계 규모는 경기도 880,365백만 원, 서울시 482,225백만 원, 인천광역시 205,715백만 원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국비를 살펴보면 비중이 높은 곳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가 모두 80.00%인 등 광역시의 국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는 국비의 비중이 59.99%로 가장 낮다. 도에서는 전라북도 77.27%로 가장 높고 충청북도 75.98%, 경기도가 75.0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비 및 시군구비 비중을 살펴보면 광역시에서는 서울 및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14%대, 시군구비의 경우 6~7%대의 분포를 보인다. 도는 시도비 7~15%, 시군구비 11~20%의 분포를 보이며 특히 전라남도는 20.06%, 경상남도 18.84%, 강원도 18.77%, 경상북도

18.21% 등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비는 없이 시도비만 30%의 구성비를 나타낸다.

표 4-7. 아동수당 자원부담 현황(본청 + 기초) (단위: 백만 원, %)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특별시	482,225 (100.00)	289,297 (59.99)	135,069 (28.01)	57,859 (12.00)
부산광역시	188,864 (100.00)	151,087 (80.00)	26,448 (14.00)	11,329 (6.00)
대구광역시	163,774 (100.00)	131,015 (80.00)	22,932 (14.00)	9,828 (6.00)
인천광역시	205,715 (100.00)	164,274 (79.86)	28,830 (14.01)	12,611 (6.13)
광주광역시	88,549 (100.00)	70,630 (79.76)	12,544 (14.17)	5,376 (6.07)
대전광역시	87,662 (100.00)	70,126 (80.00)	12,275 (14.00)	5,261 (6.00)
울산광역시	74,277 (100.00)	58,071 (78.18)	10,534 (14.18)	5,673 (7.64)
세종특별자치시	33,874 (100.00)	23,712 (70.00)	10,162 (30.00)	0 (0.00)
경기도	880,365 (100.00)	661,007 (75.08)	79,233 (9.00)	140,125 (15.92)
강원도	75,956 (100.00)	55,587 (73.18)	6,111 (8.04)	14,258 (18.77)
충청북도	92,505 (100.00)	70,287 (75.98)	7,770 (8.40)	14,448 (15.62)
충청남도	130,189 (100.00)	91,133 (70.00)	19,528 (15.00)	19,528 (15.00)
전라북도	94,841 (100.00)	73,281 (77.27)	10,778 (11.36)	10,782 (11.37)
전라남도	98,988 (100.00)	70,624 (71.35)	8,509 (8.60)	19,855 (20.06)
경상북도	144,510 (100.00)	106,909 (73.98)	11,280 (7.81)	26,321 (18.21)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경상남도	202,490 (100.00)	148,001 (73.09)	16,347 (8.07)	38,142 (18.84)
제주특별자치도	43,797 (100.00)	30,658 (70.00)	13,139 (30.00)	0 (0.00)
합계	3,088,581 (100.00)	2,265,697 (73.36)	431,488 (13.97)	391,396 (12.67)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가정양육수당 사업의 재원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합계는 총 1,194,391백만 원이고, 그중 국비는 861,821백만 원(72.16%), 시도비는 200,754백만 원(16.81%), 시군구비는 131,816백만 원(11.04%)을 차지하고 있다. 합계 규모는 경기도가 362,863백만 원, 서울특별시 131,824백만 원, 부산광역시 82,125백만 원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체 합계 중 국비 비중을 살펴보면 광역시는 주로 73~75%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83.30%로 나타난다. 도의 경우 전라북도가 72.03%, 경기도가 69.99%로 높고 나머지 도는 65~69%에 분포하여 있다. 시도비의 경우 광역 시도 대부분 약 17%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전라북도 13.99%와 충청북도는 14.37% 등으로 시도비 비중이 낮은 곳도 있었다. 서울의 시도비 비중은 9.35%로 가장 낮다. 시군구비의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 약 7%대의 분포로 나타나며 울산광역시는 9.18%로 나타난다. 도의 경우 13%~17%대에 분포하여 있으며 충청남도가 17.5%로 높게 나타난다.

표 4-8. 가정양육수당 재원분담 현황(본청 + 기초)

(단위: 백만 원, %)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특별시	131,824 (100.00)	109,804 (83.30)	12,319 (9.35)	9,701 (7.36)
부산광역시	82,125 (100.00)	61,594 (75.00)	14,372 (17.50)	6,159 (7.50)
대구광역시	58,693 (100.00)	44,020 (75.00)	10,271 (17.50)	4,402 (7.50)
인천광역시	78,401 (100.00)	58,651 (74.81)	13,720 (17.50)	6,029 (7.69)

지역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광주광역시	34,791 (100.00)	26,094 (75.00)	6,089 (17.50)	2,609 (7.50)
대전광역시	35,794 (100.00)	26,845 (75.00)	6,264 (17.50)	2,685 (7.50)
울산광역시	34,341 (100.00)	25,180 (73.32)	6,010 (17.50)	3,151 (9.18)
세종특별자치시	14,177 (100.00)	9,215 (65.00)	4,962 (35.00)	0 (0.00)
경기도	362,863 (100.00)	253,975 (69.99)	63,501 (17.50)	45,387 (12.51)
강원도	30,758 (100.00)	20,904 (67.96)	5,383 (17.50)	4,471 (14.54)
충청북도	40,043 (100.00)	28,532 (71.25)	5,755 (14.37)	5,755 (14.37)
충청남도	55,940 (100.00)	36,361 (65.00)	9,790 (17.50)	9,790 (17.50)
전라북도	35,783 (100.00)	25,774 (72.03)	5,005 (13.99)	5,005 (13.99)
전라남도	40,537 (100.00)	26,848 (66.23)	7,095 (17.50)	6,595 (16.27)
경상북도	57,985 (100.00)	40,186 (69.30)	9,793 (16.89)	8,007 (13.81)
경상남도	83,945 (100.00)	57,185 (68.12)	14,690 (17.50)	12,070 (14.38)
제주특별자치도	16,391 (100.00)	10,654 (65.00)	5,737 (35.00)	0 (0.00)
합계	1,194,391 (100.00)	861,821 (72.16)	200,754 (16.81)	131,816 (11.04)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 회계연도 보조금 확정내시 현황

제2절 주요 쟁점

1.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

1)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필요성

영유아 보육서비스 관련 기준보조율은 50%, 65%, 70%, 80% 및 범위(30~70%)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장애아동 가족지원,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간제보육 지원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단수보조율을, 나머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여 보조한다. 그중에서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가정양육수당,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율이 인상 및 인하된다.

표 4-9.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유형구분

보조형태	보조율 수	보조율 구분방식	사업명
정액보조	-	-	-
정률보조	단수 보조율	단수보조율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간제보육, 직장 어린이집 지원
	복수 보조율	일반 복수보조율	-
		서울-지방 차등보조율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공공형 어린이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입양아 동가족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차등보조율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가족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35%, 지방 65%이고, 아동수당 지급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이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이다. 네 개의 사업 모두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및 재정자주도 80 미만일 경우 10% 인상, 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 및 재정자주도 85 이상인 경우 10% 인하된다.

표 4-10.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기준

구분	국비		
	서울	지방	비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5	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	45	75	
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 재정자주도 85 이상	25	55	
아동수당 지급	50	70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사업설명자료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	60	80	
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 재정자주도 85 이상	40	60	
가정양육수당	35	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	45	75	
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 재정자주도 85 이상	25	55	
아이돌봄 지원	30	70	여성가족부 세입세출 사업설명자료
장애아동가족 지원	3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어린이집 확충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형 어린이집	2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	30	60	
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 재정자주도 85 이상	10	40	
어린이집 기능보강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0	50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사업설명자료
입양아동가족 지원(기재부)	40	70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세부내용
시간제보육 지원	50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사업설명자료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0	50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사업설명자료(기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20	50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사업설명자료
직장어린이집 지원(고용노동부)	100		e나라도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과 관련하여 강혜규 외(2016)의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수급자의 복지이력 패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업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미취학아동 연령층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가족양육수당,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연관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 유형별로 동일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근거 법령을 기준으로 사무수행 및 비용부담 주체와 지자체 자율성에 따라 구분하면, 13개의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모두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그중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공형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수행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기준 보조율 적용 현황(사업 수)

구분	사무수행 및 비용부담 주체							소계
	국가		공동			지방		
지자체 자율성	강행	-	-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공형 어린이집 아이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	-	10

구분	사무수행 및 비용부담 주체							소계
	국가		공동			지방		
임의	-	-	-	장애아동가족 지원 시간제보육* 입양아동가족 지원	-	-	-	3
소계	-	-	10	3	-	-	-	13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기준에 따른 국비 금액과 평균 실질 보조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수행 및 비용부담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에는 7조 1,507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국가가 평균 47.67%, 지방이 평균 58.91%를 부담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있는 사업에는 1,283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국가가 49.4%, 지방이 65.14%를 부담한다. 국비의 규모에서는 두 사업 유형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실질 보조율 측면에서는 두 사업 유형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률이나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갖을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보조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2.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기준 보조율 적용 현황(국고보조금)(단위: 백만 원)

		사무수행 및 비용부담 주체						소계
		국가		공동		지방		
지자체 자율성	강행	-	-	7,150,716	-	-	-	7,150,716
	임의	-	-	-	128,343	-	-	128,343
	소계	-	-	7,150,716	128,343	-	-	7,279,059

표 4-13.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기준 보조율 적용 현황(평균 실질 보조율)

		사무수행 및 비용부담 주체					
		국가		공동(서울/지방)		지방	
지자체 자율성	강행	-	-	47.67% / 58.91%	-	-	-
	임의	-	-	-	49.4% / 65.14%	-	-

2)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

먼저 국비 규모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준수 여부를 파악한 결과, 국비 규모가 큰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보조율이 준수되지 않는 것⁴¹⁾으로 나타났다.

표 4-14. 국비 규모에 따른 영유아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적용 실태 (단위: 백만 원)

사업명	보조율 구분방식	국비	보조율 이행여부			
			전체	미달	준수	초과
영유아보육료	차등보조율	3,428,777	228	36	191	1
아동수당	차등보조율	2,167,423	228	35	193	0
가정양육수당	차등보조율	861,821	228	36	171	21
아이돌봄서비스	서울-지방 차등보조율	219,195	226	2	222	2
공공형 어린이집	차등보조율	62,047	180	35	143	2
어린이집 확충	단수보조율	61,110	165	5	141	19
어린이집 기능보강	단수보조율	29,976	229	1	225	3
입양아동가족 지원	서울-지방 차등보조율	17,993	204	1	202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울-지방 차등보조율	17,361	228	0	228	0
시간제보육	단수보조율	10,872	166	0	165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지방 차등보조율	9,742	119	1	103	15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울-지방 차등보조율	9,519	229	0	229	0

주. 1: 장애아동가족지원의 기준보조율은 30~70%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 실태 분석에서 제외함

2: 직장어린이집지원의 경우, 3개의 지역에서만 지원하고 있어 적용 실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영유아보육료의 기준보조율과 실질보조율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적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는 228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91곳은 보조율을 준수하였으

41) 다만,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등보조율 계산 방식에 따라 보조율 준수 여부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들 4개 사업 중 대부분은 인상보조율이 적용되지 않아 10%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1곳은 초과, 36곳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지역의 모든 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과 같은 보조율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세종은 기준보조율을 초과한 보조율로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일부 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보다 낮은 보조율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영유아보육료 보조율 적용 실태

(단위: 백만 원)

지역	현행			보조율 (현행)	보조율 (실질)	보조율 이행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전체	미달	준수	초과
서울	775,324	348,896	426,429	35±10%	45%	25	0	25	0
부산	271,851	203,888	67,963	65±10%	75%	16	0	16	0
대구	207,460	155,595	51,864	65±10%	75%	8	0	8	0
인천	289,289	216,635	72,655	65±10%	73%	10	0	10	0
광주	169,344	127,008	42,336	65±10%	75%	5	0	5	0
대전	171,256	128,442	42,814	65±10%	75%	5	0	5	0
울산	126,208	92,612	33,596	65±10%	73%	5	1	4	0
세종	47,063	30,866	16,197	65±10%	66%	1	0	0	1
경기	1,448,232	1,015,560	432,672	65±10%	69%	31	14	17	0
강원	134,020	91,744	42,276	65±10%	67%	18	2	16	0
충북	172,250	123,076	49,174	65±10%	66%	11	2	9	0
충남	241,875	157,219	84,656	65±10%	65%	15	3	12	0
전북	178,332	129,721	48,610	65±10%	67%	14	2	12	0
전남	164,119	109,523	54,596	65±10%	65%	22	3	19	0
경북	270,661	188,306	82,355	65±10%	67%	23	3	20	0
경남	379,220	258,409	120,810	65±10%	66%	18	6	12	0
제주	78,888	51,277	27,611	65±10%	65%	1	0	1	0
합계	5,125,392	3,428,777	1,696,614			228	36	191	1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과 실질보조율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적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지원을 받는 228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93곳은 보조율을 준수하였으며, 35곳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지역의 모든 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과 같은 보조율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일부 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보다 낮은 보조율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아동수당 보조율 적용 실태

(단위: 백만 원)

지역	현행			보조율 (현행)	보조율 (실질)	보조율 이행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전체	미달	준수	초과
서울	482,225	289,297	192,928	50±10%	60%	25	0	25	0
부산	174,032	139,222	34,810	70±10%	80%	16	0	16	0
대구	133,667	106,930	26,737	70±10%	80%	8	0	8	0
인천	173,169	138,238	34,931	70±10%	78%	10	0	10	0
광주	88,549	70,630	17,920	70±10%	80%	5	0	5	0
대전	87,662	70,126	17,536	70±10%	80%	5	0	5	0
울산	74,277	58,071	16,207	70±10%	78%	5	1	4	0
세종	33,874	23,712	10,162	70±10%	70%	1	0	1	0
경기	835,004	624,718	210,285	70±10%	74%	31	14	17	0
강원	75,956	55,587	20,369	70±10%	72%	18	2	16	0
충북	92,505	70,287	22,218	70±10%	71%	11	2	9	0
충남	130,189	91,133	39,056	70±10%	70%	15	3	12	0
전북	94,841	73,281	21,560	70±10%	72%	14	2	12	0
전남	98,988	70,624	28,364	70±10%	70%	22	3	19	0
경북	144,510	106,909	37,601	70±10%	71%	23	3	20	0
경남	202,490	148,001	54,489	70±10%	71%	18	6	12	0
제주	43,797	30,658	13,139	70±10%	70%	1	0	1	0
합계	2,965,735	2,167,423	798,312			228	36	192	0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가정양육수당의 기준보조율과 실질보조율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적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228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1곳은 보조율을 준수하였으며, 21곳은 초과, 36곳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지역의 모든 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과 같은 보조율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준보조율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21곳은 모두 서울 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일부 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 보다 낮은 보조율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가정양육수당 보조율 적용 실태

(단위: 백만 원)

지역	현행			보조율 (현행)	보조율 (실질)	보조율 이행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전체	미달	준수	초과
서울	131,824	109,804	22,020	35±10%	86%	25	0	4	21
부산	82,125	61,594	20,531	65±10%	75%	16	0	16	0
대구	58,693	44,020	14,673	65±10%	75%	8	0	8	0
인천	78,401	58,651	19,749	65±10%	73%	10	0	10	0
광주	34,791	26,094	8,698	65±10%	75%	5	0	5	0
대전	35,794	26,845	8,949	65±10%	75%	5	0	5	0
울산	34,341	25,180	9,161	65±10%	73%	5	1	4	0
세종	14,177	9,215	4,962	65±10%	65%	1	0	1	0
경기	362,863	253,975	108,888	65±10%	69%	31	13	18	0
강원	30,758	20,904	9,854	65±10%	67%	18	2	16	0
충북	40,043	28,532	11,510	65±10%	66%	11	2	9	0
충남	55,940	36,361	19,580	65±10%	65%	15	3	12	0
전북	35,783	25,774	10,010	65±10%	67%	14	2	12	0
전남	40,537	26,848	13,690	65±10%	65%	22	3	19	0
경북	57,985	40,186	17,800	65±10%	67%	23	3	20	0
경남	83,945	57,185	26,760	65±10%	66%	18	6	12	0
제주	16,391	10,654	5,737	65±10%	65%	1	0	1	0
합계	1,194,391	861,821	332,570			228	35	172	21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회계연도 보조금확정내시현황

3) 서울-지방 간 이원적 기준보조율 체계의 적절성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서울과 지방 간 기준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서울과 지방의 기준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손인호·김재덕(2019)의 연구에서는 2018년 기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126개 사업에서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특히 68개 사업이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 자의적으로 서울과 지방을 차등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력지수와 기준재정수요액의 통합재정지출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유사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서울-지방 간 이원적 기준보조율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4-18.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현황

구분	보조금법 시행령	중앙부처 지침	개별 법령	계
보건복지부	39	43	1	83
여성가족부	6	11	-	17
식품의약품안전처	-	2	-	2
법무부	-	5	-	5
국토교통부	4	-	3	7
환경부	4	1	-	5
문화체육관광부	-	2	-	2
고용노동부	-	2	-	2
산업통상자원부	1	2	-	3
계	54	68	4	126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손인호·김재덕(2019)에서 재인용

2. 차등보조율 관련 쟁점

1) 산정기준의 적절성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자주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를 대표하는 사회복지비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차등보조율의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결과 2019년 차등보조율 산정을 위해 사용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은 각각 65.0과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보조율의 인상 구간을 결정하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값이 각각 80.0 미만과 25.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보조율을 적용받도록 만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7년 지역별 재정자주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2곳으로 충청남도 계룡시(81.44%)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82.55%) 등이 있으며, 80% 이상 85% 미만인 곳은 2곳으로 서울특별시 본청(86.02%)과 경기도 과천시(88.05%)가 포함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36.84%), 경기도 광주시(79.48%) 등 지방자치단체 233곳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0% 인상보조율 적용 구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상보조율 단계 내 재정자주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0~79%에 86곳, 60~69%에 8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9. 지역별 재정자주도와 차등보조율 분포(2017년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	재정자주도		해당 지자체(개수)		
	단계별 범위	최대/최소값	서울	지방	합계
10% 인하보조율	85% 이상	86.02~89.67%	1	1	2
표준보조율	80~84%	81.44~82.55%	0	3	3
10% 인상보조율	70~79%	36.84~79.48%	2	84	86
	60~69%		9	79	88
	50~59%		14	15	29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	재정자주도		해당 지자체(개수)		
	단계별 범위	최대/최소값	서울	지방	합계
	40~49%		0	32	32
	30~39%		0	3	3
	30% 미만		0	0	0

2017년 지역별 사회복지비지수에 따른 차등보조율 분포는 <표 4-20>과 같다.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인 지자체는 59곳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20.04%), 강원도 본청(24.99%) 등이 있으며, 20% 이상~25% 미만인 곳은 43곳으로 경상북도 울릉군(7.87%), 강원도 홍천군(19.39%) 등을 포함한다. 경기도 양평군(25.17%), 광주광역시 북구(64.41%) 등 141곳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지수는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지수 분포를 살펴보면, 지방과 다르게 서울시 기초단체 26곳 모두가 10% 인상보조율 구간에 있다.

표 4-20. 지역별 사회복지비지수와 차등보조율 분포(2017년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	사회복지비지수		해당 지자체(수)		
	단계별 범위	최소/최대값	서울	지방	합계
10% 인하보조율	20% 미만	8.72~19.92%	0	59	59
표준보조율	20~24%	20.02~24.91%	0	43	43
10% 인상보조율	25~29%	25.27~65.71%	0	26	26
	30~39%		3	42	45
	40~49%		11	16	27
	50~59%		12	26	38
	60~69%		0	5	5
	70% 이상		0	0	0

지방자치단체를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10% 인하보조율을 적용받는 재정자주도 85% 이상, 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10% 인상보조율을 적용받는 재정자주도 80% 미만, 사회복지비지수 25%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138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이천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4-21.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류(2017년 기준)

구분		사회복지비지수		
		20% 미만	20~25% 미만	25% 이상
재 정 자 주 도	85% 이상	0	0	2 (서울본청, 경기 과천시)
	80~85% 미만	0	2 (세종본청, 충남 계룡시)	1 (경기 안산시)
	80% 미만	59 (경북 영덕군, 전북 부안군, 전남 함평군 등)	41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여주시 등)	138 (서울 강남구, 서울 동작구, 경기 이천시 등)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을 적용하여 차등보조 구간을 설정할 경우에는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유사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9개의 모든 구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게 구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차등보조율 조정안 적용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류(2017년 기준)

구분		사회복지비지수		
		30% 미만	30~34% 미만	35% 이상
재 정 자 주 도	70% 이상	65	11	15
	65~70% 미만	47	10	6
	65% 미만	16	9	64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가 차등보조율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설정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와 보조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와 아동수당 보조율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높은 보조율을 설정한다는 차등보조율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비지수와 아동수당 보조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복지 관련 재정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높은 보조율을 설정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23. 차등보조율 산정기준과 보조율 간 상관관계

구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0.097	0.027
아동수당	-0.200**	0.215**

다음으로 차등보조율 산정기준과 실제 국고보조금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자주도는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에는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24. 차등보조율 산정기준과 국고보조금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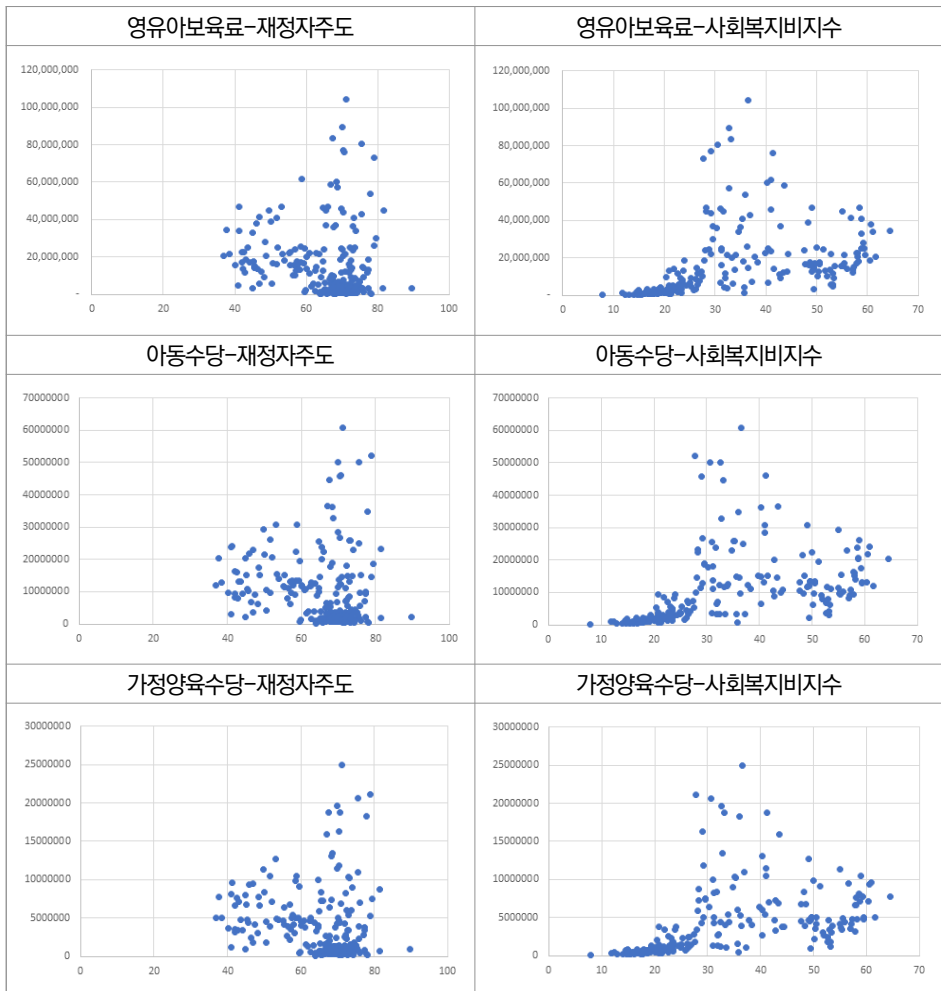
구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영유아보육료	-0.129	0.434**
아동수당	-0.147*	0.478**
가정양육수당	-0.142*	0.473**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재정자주도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의 보조율 및 국고보조금과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에는 영유

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보조율과 상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이외의 차등보조율 산정기준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0%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등보조율을 폐지하고 기준보조율을 10%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다.

그림 4-1. 차등보조율 산정기준과 국고보조금 간의 관계





2) 시군구 유형화 필요성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은 시군구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군구 간에는 세입·세출구조, 인구구조 등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 여건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세입 여건이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대도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복지 관련 세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에 대한 시군구별 비교·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을 구분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재정자주도의 경우 시군은 각각 71.3과 69.4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자치구는 52.8로 시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에도 시군은 각각 29.7과 18.7로 유사한 반면, 자치구는 51.1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분산 분석을 통해 시군구 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자주도는 시군구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Scheffe 검정)을 통한 집단구분 결과 시군이 하나의 집단 자치구가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즉,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시와 군은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자치구는 시군과 다른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복지비지수의 경우에도 시군구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Scheffe 검정)을 통한 집단구분 결과 시군구가 모두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4-25.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차등보조율 산정기준 차이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집단구분
재정자주도	시	75	71.3241	5.12344	184.399**	2
	군	82	69.3929	3.81880		2
	자치구	69	52.8261	9.25947		1
사회복지비 지수	시	75	29.6925	6.56962	508.325**	2
	군	82	18.7066	4.23653		1
	자치구	69	51.1036	7.80178		3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를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와 도 간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의 경우, 5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인상보조율을 적용받지만, 도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표준보조율을 적용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경기의 경우, 타 도와 다르게 표준보조율보다 인상보조율을 적용받는 기초자치단체가 많다.

표 4-26. 시도별 차등보조율 적용 결과(2017년 기준)

지자체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		
	인하	표준	인상
서울특별시	0	1	25
부산광역시	0	0	17
대구광역시	0	0	9
인천광역시	0	2	9
광주광역시	0	0	6
대전광역시	0	0	6
울산광역시	0	1	5
세종특별자치시	0	1	0
경기도	0	4	28
강원도	0	14	5
충청북도	0	8	4
충청남도	0	13	3

지자체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		
	인하	표준	인상
전라북도	0	11	4
전라남도	0	19	4
경상북도	0	18	6
경상남도	0	12	7
제주특별자치도	0	1	0
합계	0	105	138

시군구로 나눠 살펴보면, 시군구에 따른 적용보조율에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 82곳 중 76곳이 표준보조율에 해당하지만, 반대로 모든 자치구는 인상보조율에 해당한다.

표 4-2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차등보조율 적용 결과(2017년 기준)

지자체	차등보조율 적용 단계		
	인하	표준	인상
특·광역시	0	2	6
도	0	2	7
시	0	25	50
군	0	76	6
구	0	0	69
계	0	105	138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적용하여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모두에서 시군과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군과 자치구는 구분하여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차등보조율 산정에 있어서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5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제1절 대안 및 평가기준 설정

제2절 대안별 분석결과

제3절 종합 및 개선방안

제5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제1절 대안 및 평가기준 설정

1. 대안 설정

1)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은 ① 현행 기준보조율 수준의 적절성, ② 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 구분의 적절성, ③ 서울과 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의 적절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4가지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국고보조금 총액과 수혜자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재원확충 효과와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대상 국고보조사업은 아동복지 분야 중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시나리오 1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을 현행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은 모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형 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2개 사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보조율보다는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서울 35%, 지방 65%로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료의 기준보조율을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서울 50%, 지방 70%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 서울 50%, 지방 70%로 인상(현행 아동수당 기준)

다음으로 시나리오 2는 기준보조율 설정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는 차등적 기준보조율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서울과 지방 간 이원적 기준보조율 적용과 관련한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수혜대상자에게 수당 성격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기준보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 영유아보육료 65%, 아동수당 70% 인상
- 서울, 지방 구분 기준 보조율 폐지

시나리오 3은 현행 기준보조율을 5% 인상하는 방안이다.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과 같은 현금 급여형 복지사업의 경우 국가의 재원부담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보조율을 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 현행 기준보조율 5% 인상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4는 기준보조율을 10%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통해 대부분의 시군구가 10%씩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보조율 수준의 적절성과 차등보조율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보조율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 현행 기준보조율 10% 인상

2)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시나리오 1은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한 후, 현행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영유아인구비율을 새로운 선정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현행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대신하여 영유아인구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26개 시군구 영유아인구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3단계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였다.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 ▶ 현행 기준보조율 10% 인상
- ▶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율 적용
- ▶ 226개 시군구 영유아인구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시나리오 2는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한 후,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영유아인구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및 인구구조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산정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분산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해서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 현행 기준보조율 10% 인상
-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를 적용
- 시군, 자치구 구분해서 각각의 영유아인구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시나리오 3은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한 후 기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226개 시군구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 현행 기준보조율 10% 인상
- 226개 시군구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4는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한 후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즉,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분하여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 현행 기준보조율 10% 인상
- 시군과 자치구로 지방자치단체 유형 구분
-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이 연구에서는 2017년 기준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 영유아인구비율을 사용하여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영유아인구비율의 경우 전국, 시군, 자치구로 구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는 시군과 자치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차등보조율의 경우 각각의 평균에서 ± 1 표준편차⁴²⁾를 기준으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영유아인구비율,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5-1. 영유아인구비율,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지수의 기술통계

구분	영유아인구비율(2017)				재정자주도(2017)				사회복지비지수(2017)			
	평균	표준편차	인상	인하	평균	표준편차	인상	인하	평균	표준편차	인상	인하
전국	0.0439	0.0125	0.0564	0.0314	64.98	10.28	54.70	75.25	32.24	14.73	46.98	17.51
시군	0.0432	0.0131	0.0564	0.0301	70.32	4.58	65.74	74.89	23.95	7.75	31.71	16.20
구	0.0455	0.0109	0.0564	0.0346	52.83	9.26	43.57	62.09	51.10	7.80	58.91	43.30

2. 평가기준 설정

이 연구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재원확충 효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기준으로 대안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재원확충 효과는 시나리오별 국비 지원 규모(총액,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증감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자원분담체계의 조정으로 인해 국비 지원 규모가 현행보다 지나치게 많이 감소하는 시군구가 없도록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measure)의 증감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226개 전체 시군구 및 개별 시도 내의 시군구에서의 형평화계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의 현행 대비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조정

42)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할 경우 1 표준편차 이내에 68.3%가 포함된다.

시나리오별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니계수, 변이계수, 엔트로피를 활용하였다.

먼저, 지니계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평등의 단일척도로, 특정 변수의 분포를 동등성을 나타내는 균일 분포와 비교하는 누적빈도 곡선인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한다. 지니계수는 균등분배가 행해진 것을 나타내는 선(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A)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삼각형 면적(S)을 대비시킨 비율로, 값은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된다.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을 의미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Gini = \frac{A}{B} = \frac{\text{불평등면적}}{\text{삼각형 } ABC\text{면적}}$$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며, 상대적인 산포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다.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평균값에 밀집되어 있고, 클수록 흩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또한 불평등의 척도 중 하나로 일반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bar{y} 는 평균 임금(혹은 1인당 지출)을 의미한다.

$$GE(\alpha) = \frac{1}{\alpha(\alpha-1)} \left[\frac{1}{N} \sum_{i=1}^N \left(\frac{y_i}{\bar{y}} \right)^\alpha - 1 \right]$$

GE 값은 0과 무한대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며, 0은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값이 커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α 는 소득 분배의 다른 부분에서 소득 간의 거리에 주어진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어떤 실제 값도 취할 수 있다. α 값이 낮으면 GE는 하단 분포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높은 경우에는 상단 분포의 변화에 더 민감하다. 가장 일반적인 α 값은 0, 1 또는 2로, 본 연구에서는 Theil's L 또는 평균대수편차(mean log deviation measure)라고 불리는 α 값이 0인 GE(0)일 때의 공식을 활용하여 형평성을 분석하려 한다.

$$GE(0) = \frac{1}{N} \sum_{i=1}^N \ln\left(\frac{y_i}{\bar{y}}\right)$$

제2절 대안별 분석결과

1.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1)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90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지역은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38,766백만 원)과 충남(12,094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현행보다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9개 지역은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14,132백만 원)과 부산(13,593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현행보다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의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영유아보육료(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단위: 백만 원, 원)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50.96	387,662	38,766	1,047.91	104.79
부산	203,888	1,522.96	190,295	-13,593	1,419.13	-101.37
대구	155,595	1,554.58	145,222	-10,373	1,411.96	-100.85
인천	216,635	1,524.54	202,503	-14,132	1,520.02	-106.08
광주	127,008	1,788.48	118,541	-8,467	1,758.27	-125.59
대전	128,442	1,977.68	119,879	-8,563	1,808.02	-129.14
울산	92,612	1,609.66	88,346	-4,266	1,527.89	-73.79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경기	1,015,560	1,575.58	1,013,762	-1,798	1,556.59	-2.76
강원	91,744	1,330.04	93,814	2,070	1,587.48	35.02
충북	123,076	1,347.48	120,575	-2,501	1,699.73	-35.25
충남	157,219	1,420.66	169,313	12,094	1,699.64	121.40
전북	129,721	1,299.29	124,832	-4,889	1,732.53	-67.85
전남	109,523	1,105.67	114,884	5,360	1,520.77	70.96
경북	188,306	1,213.04	189,463	1,157	1,713.94	10.47
경남	258,409	1,332.17	265,454	7,045	1,719.84	45.64
전국	3,346,634	1,354.04	3,344,544	-2,090	1,503.13	-0.94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0.94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지역은 현행보다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121.40원)과 서울(104.79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대전(129.14원)과 광주(125.59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256(-0.0035), 지니계수는 0.1457(-0.0207), 엔트로피는 0.0370(-0.0103)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등 6개 지역은 시군구 간 차이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149	0	0.0825	0	0.0110	0
부산	0.0139	0.0756	0.0091	0.0139	0	0.0756	0	0.0091	0
대구	0.0217	0.0918	0.0170	0.0217	0	0.0918	0	0.0170	0
인천	0.0281	0.1351	0.0417	0.0248	-0.0033	0.1226	-0.0125	0.0303	-0.0114
광주	0.0157	0.0778	0.0103	0.0157	0	0.0778	0	0.0103	0
대전	0.0061	0.0270	0.0014	0.0061	0	0.0270	0	0.0014	0
울산	0.0139	0.0674	0.0083	0.0096	-0.0043	0.0468	-0.0206	0.0038	-0.0046
경기	0.0149	0.0652	0.0113	0.0135	-0.0014	0.0582	-0.0070	0.0087	-0.0026
강원	0.0247	0.1345	0.0280	0.0202	-0.0045	0.1118	-0.0227	0.0198	-0.0082
충북	0.0229	0.1223	0.0237	0.0199	-0.0030	0.1082	-0.0141	0.0189	-0.0048
충남	0.0149	0.0803	0.0105	0.0149	0	0.0803	0	0.0105	0
전북	0.0379	0.2079	0.0801	0.0341	-0.0038	0.1824	-0.0255	0.0676	-0.0125
전남	0.0384	0.2048	0.0663	0.0361	-0.0023	0.1959	-0.0089	0.0610	-0.0053
경북	0.0396	0.2080	0.0822	0.0364	-0.0032	0.1909	-0.0171	0.0715	-0.0107
경남	0.0248	0.1365	0.0299	0.0235	-0.0013	0.1291	-0.0074	0.0274	-0.0025
전국	0.0291	0.1664	0.0473	0.0256	-0.0035	0.1457	-0.0207	0.0370	-0.0103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87,853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48,184백만 원)과 경기(40,216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70.76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110.30원)과 서울(109.77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아동수당(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241,112	-48,184	549.27	-109.77
부산	139,222	870.37	121,823	-17,399	761.60	-108.77
대구	106,930	870.07	93,567	-13,363	761.34	-108.73
인천	138,238	870.22	121,219	-17,020	763.08	-107.14
광주	70,630	869.49	61,985	-8,646	763.06	-106.43
대전	70,126	882.68	61,363	-8,763	772.38	-110.30
울산	58,071	842.55	51,994	-6,077	754.38	-88.17
경기	624,718	804.42	584,502	-40,216	752.64	-51.78
강원	55,587	787.61	53,169	-2,418	753.35	-34.26
충북	70,287	831.49	64,753	-5,533	766.03	-65.46
충남	91,133	765.90	91,133	0	765.90	0.00
전북	73,281	842.45	66,389	-6,892	763.21	-79.24
전남	70,624	783.01	69,292	-1,333	768.24	-14.78
경북	106,909	810.89	101,157	-5,752	767.27	-43.63
경남	148,001	800.36	141,743	-6,258	766.52	-33.84
전국	2,113,053	795.90	1,925,200	-187,853	725.14	-70.76

다음으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097(0.0008), 지니계수는 0.0430(-0.0065), 엔트로피는 0.00548(0.00147)로 나타났다. 즉, 시나리오 1의 경우 변이계수와 엔트로피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니계수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034	0	0.0193	0.0003	0.00057	0.00002
부산	0.0033	0.0172	0.00053	0.0033	0	0.0172	0	0.00053	0
대구	0.0044	0.0222	0.00083	0.0044	0	0.0222	0	0.00083	0
인천	0.0072	0.0347	0.00249	0.0048	-0.0024	0.0248	-0.0099	0.00104	-0.00145
광주	0.0033	0.0155	0.00046	0.0034	0.0001	0.0155	0	0.00046	0
대전	0.0009	0.0043	0.00003	0.0009	0	0.0043	0	0.00003	0
울산	0.0075	0.0373	0.00229	0.0048	-0.0027	0.0236	-0.0137	0.00092	-0.00137
경기	0.0075	0.0331	0.00268	0.0026	-0.0049	0.0109	-0.0222	0.00032	-0.00236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25	-0.0027	0.0133	-0.0132	0.00029	-0.00097
충북	0.005	0.0226	0.00107	0.0024	-0.0026	0.0122	-0.0104	0.00025	-0.00082
충남	0.0017	0.0085	0.00014	0.0017	0	0.0085	0	0.00014	0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21	-0.004	0.0111	-0.0191	0.00021	-0.00144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53	-0.0006	0.0293	-0.0034	0.00136	-0.00031
경북	0.005	0.0235	0.00114	0.0022	-0.0028	0.0115	-0.012	0.00023	-0.00091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2	-0.0018	0.0108	-0.0064	0.00019	-0.00047
전국	0.0089	0.0495	0.00401	0.0097	0.0008	0.0430	-0.0065	0.00548	0.00147

2) 시나리오 2

(1) 영유아보육료

먼저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96,997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155,065백만 원)은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74,209백만 원)와 인천(28,597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현행보다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43.59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서울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419.16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혜자 1인당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영유아보육료(국비) 기준보조를 조정: 시나리오 2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43.12	503,961	155,065	1,362.28	419.16
부산	203,888	1,520.50	176,703	-27,185	1,317.76	-202.73
대구	155,595	1,512.82	134,849	-20,746	1,311.11	-201.71
인천	216,635	1,626.10	188,038	-28,597	1,411.44	-214.65
광주	127,008	1,883.86	110,074	-16,934	1,632.68	-251.18
대전	128,442	1,937.17	111,316	-17,126	1,678.88	-258.29
울산	92,612	1,601.67	82,035	-10,577	1,418.75	-182.92
경기	1,015,560	1,559.35	941,351	-74,209	1,445.41	-113.95
강원	91,744	1,552.46	87,113	-4,631	1,474.09	-78.37
충북	123,076	1,734.98	111,963	-11,113	1,578.32	-156.66
충남	157,219	1,578.23	157,219	0	1,578.23	0.00
전북	129,721	1,800.38	115,916	-13,805	1,608.78	-191.60
전남	109,523	1,449.81	106,678	-2,845	1,412.14	-37.67
경북	188,306	1,703.48	175,930	-12,376	1,591.52	-111.96
경남	258,409	1,674.20	246,493	-11,916	1,596.99	-77.20
전국	3,346,634	1,504.07	3,249,637	-96,997	1,460.47	-43.59

다음으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237(-0.0054), 지니계수는 0.1332(-0.0332), 엔트로피는 0.0330(-0.0143)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등 6개 지역은 시군구 간 차이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149	0	0.0825	0	0.0110	0
부산	0.0139	0.0756	0.0091	0.0139	0	0.0756	0	0.0091	0
대구	0.0217	0.0918	0.0170	0.0217	0	0.0918	0	0.0170	0
인천	0.0281	0.1351	0.0417	0.0248	-0.0033	0.1226	-0.0125	0.0303	-0.0114
광주	0.0157	0.0778	0.0103	0.0157	0	0.0778	0	0.0103	0
대전	0.0061	0.0270	0.0014	0.0061	0	0.0270	0	0.0014	0
울산	0.0139	0.0674	0.0083	0.0096	-0.0043	0.0468	-0.0206	0.0038	-0.0046
경기	0.0149	0.0652	0.0113	0.0135	-0.0014	0.0582	-0.0070	0.0087	-0.0026
강원	0.0247	0.1345	0.0280	0.0202	-0.0045	0.1118	-0.0227	0.0198	-0.0082
충북	0.0229	0.1223	0.0237	0.0199	-0.0030	0.1082	-0.0141	0.0189	-0.0048
충남	0.0149	0.0803	0.0105	0.0149	0	0.0803	0	0.0105	0
전북	0.0379	0.2079	0.0801	0.0341	-0.0038	0.1824	-0.0255	0.0676	-0.0125
전남	0.0384	0.2048	0.0663	0.0361	-0.0023	0.1959	-0.0089	0.0610	-0.0053
경북	0.0396	0.2080	0.0822	0.0364	-0.0032	0.1909	-0.0171	0.0715	-0.0107
경남	0.0248	0.1365	0.0299	0.0235	-0.0013	0.1291	-0.0074	0.0274	-0.0025
전국	0.0291	0.1664	0.0473	0.0237	-0.0054	0.1332	-0.0332	0.0330	-0.0143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자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91,408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서울과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48,261백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40,216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34.43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서울과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110.30원)과 부산(108.77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아동수당(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337,557	48,261	768.98	109.94
부산	139,222	870.37	121,823	-17,399	761.60	-108.77
대구	106,930	870.07	93,567	-13,363	761.34	-108.73
인천	138,238	870.22	121,219	-17,020	763.08	-107.14
광주	70,630	869.49	61,985	-8,646	763.06	-106.43
대전	70,126	882.68	61,363	-8,763	772.38	-110.30
울산	58,071	842.55	51,994	-6,077	754.38	-88.17
경기	624,718	804.42	584,502	-40,216	752.64	-51.78
강원	55,587	787.61	53,169	-2,418	753.35	-34.26
충북	70,287	831.49	64,753	-5,533	766.03	-65.46
충남	91,133	765.90	91,133	0	765.90	0.00
전북	73,281	842.45	66,389	-6,892	763.21	-79.24
전남	70,624	783.01	69,292	-1,333	768.24	-14.78
경북	106,909	810.89	101,157	-5,752	767.27	-43.63
경남	148,001	800.36	141,743	-6,258	766.52	-33.84
전국	2,113,053	795.90	2,021,645	-91,408	761.47	-34.43

다음으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

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033(-0.0056), 지니계수는 0.0178(-0.0317), 엔트로피는 0.00054(-0.00347)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034	0	0.0193	0.0003	0.00057	0.00002
부산	0.0033	0.0172	0.00053	0.0033	0	0.0172	0	0.00053	0
대구	0.0044	0.0222	0.00083	0.0044	0	0.0222	0	0.00083	0
인천	0.0072	0.0347	0.00249	0.0048	-0.0024	0.0248	-0.0099	0.00104	-0.00145
광주	0.0033	0.0155	0.00046	0.0034	0.0001	0.0155	0	0.00046	0
대전	0.0009	0.0043	0.00003	0.0009	0	0.0043	0	0.00003	0
울산	0.0075	0.0373	0.00229	0.0048	-0.0027	0.0236	-0.0137	0.00092	-0.00137
경기	0.0075	0.0331	0.00268	0.0026	-0.0049	0.0109	-0.0222	0.00032	-0.00236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25	-0.0027	0.0133	-0.0132	0.00029	-0.00097
충북	0.005	0.0226	0.00107	0.0024	-0.0026	0.0122	-0.0104	0.00025	-0.00082
충남	0.0017	0.0085	0.00014	0.0017	0	0.0085	0	0.00014	0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21	-0.004	0.0111	-0.0191	0.00021	-0.00144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53	-0.0006	0.0293	-0.0034	0.00136	-0.00031
경북	0.005	0.0235	0.00114	0.0022	-0.0028	0.0115	-0.012	0.00023	-0.00091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2	-0.0018	0.0108	-0.0064	0.00019	-0.00047
전국	0.0089	0.0495	0.00401	0.0033	-0.0056	0.0178	-0.0317	0.00054	-0.00347

3) 시나리오 3

(1)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79,622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12,094만 원)과 경남(7,045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38,766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현행보다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35.78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충남(121.40원)과 전남(70.96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영유아보육료(국비) 기준보조를 조정: 시나리오 3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43.12	310,130	-38,766	838.33	-104.79
부산	203,888	1,520.50	190,295	-13,593	1,419.13	-101.37
대구	155,595	1,512.82	145,222	-10,373	1,411.96	-100.85
인천	216,635	1,626.10	202,503	-14,132	1,520.02	-106.08
광주	127,008	1,883.86	118,541	-8,467	1,758.27	-125.59
대전	128,442	1,937.17	119,879	-8,563	1,808.02	-129.14
울산	92,612	1,601.67	88,346	-4,266	1,527.89	-73.79
경기	1,015,560	1,559.35	1,013,762	-1,798	1,556.59	-2.76
강원	91,744	1,552.46	93,814	2,070	1,587.48	35.02
충북	123,076	1,734.98	120,575	-2,501	1,699.73	-35.25
충남	157,219	1,578.23	169,313	12,094	1,699.64	121.40
전북	129,721	1,800.38	124,832	-4,889	1,732.53	-67.85
전남	109,523	1,449.81	114,884	5,360	1,520.77	70.96
경북	188,306	1,703.48	189,463	1,157	1,713.94	10.47
경남	258,409	1,674.20	265,454	7,045	1,719.84	45.64
전국	3,346,634	1,504.07	3,267,012	-79,622	1,468.28	-35.78

다음으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

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279(-0.0012), 지니계수는 0.1593(-0.0071), 엔트로피는 0.0446(-0.0027)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등 6개 지역은 시군구 간 차이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149	0	0.0825	0	0.011	0
부산	0.0139	0.0756	0.0091	0.0139	0	0.0756	0	0.0091	0
대구	0.0217	0.0918	0.0170	0.0217	0	0.0918	0	0.017	0
인천	0.0281	0.1351	0.0417	0.0248	-0.0033	0.1226	-0.0125	0.0303	-0.0114
광주	0.0157	0.0778	0.0103	0.0157	0	0.0778	0	0.0103	0
대전	0.0061	0.0270	0.0014	0.0061	0	0.027	0	0.0014	0
울산	0.0139	0.0674	0.0083	0.0096	-0.0043	0.0468	-0.0206	0.0037	-0.0046
경기	0.0149	0.0652	0.0113	0.0135	-0.0014	0.0582	-0.007	0.0087	-0.0026
강원	0.0247	0.1345	0.0280	0.0202	-0.0045	0.1118	-0.0227	0.0198	-0.0082
충북	0.0229	0.1223	0.0237	0.0199	-0.003	0.1082	-0.0141	0.0189	-0.0048
충남	0.0149	0.0803	0.0105	0.0149	0	0.0803	0	0.0105	0
전북	0.0379	0.2079	0.0801	0.0341	-0.0038	0.1824	-0.0255	0.0676	-0.0125
전남	0.0384	0.2048	0.0663	0.0361	-0.0023	0.1959	-0.0089	0.0609	-0.0054
경북	0.0396	0.2080	0.0822	0.0364	-0.0032	0.1909	-0.0171	0.0715	-0.0107
경남	0.0248	0.1365	0.0299	0.0235	-0.0013	0.1291	-0.0074	0.0274	-0.0025
전국	0.0291	0.1664	0.0473	0.0279	-0.0012	0.1593	-0.0071	0.0446	-0.0027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43,450 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는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6,509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16.37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54.71원)과 전남(40.10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아동수당(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265,224	-24,073	604.20	-54.84
부산	139,222	870.37	130,524	-8,697	816.00	-54.37
대구	106,930	870.07	100,250	-6,680	815.72	-54.35
인천	138,238	870.22	129,877	-8,361	817.58	-52.63
광주	70,630	869.49	66,412	-4,218	817.56	-51.93
대전	70,126	882.68	65,746	-4,380	827.55	-55.13
울산	58,071	842.55	55,708	-2,363	808.27	-34.28
경기	624,718	804.42	626,253	1,534	806.40	1.98
강원	55,587	787.61	56,967	1,380	807.16	19.55
충북	70,287	831.49	69,378	-908	820.75	-10.74
충남	91,133	765.90	97,642	6,509	820.60	54.71
전북	73,281	842.45	71,131	-2,150	817.73	-24.72
전남	70,624	783.01	74,241	3,617	823.11	40.10
경북	106,909	810.89	108,383	1,474	822.07	11.18
경남	148,001	800.36	151,867	3,867	821.27	20.91
전국	2,113,053	795.90	2,069,603	-43,450	779.53	-16.37

다음으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091(0.0002), 지니계수는 0.041(-0.0085), 엔트로피는 0.00475(0.00074)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등은 시군구 간 차이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034	0	0.0193	0.0003	0.00057	0.00002
부산	0.0033	0.0172	0.00053	0.0033	0	0.0172	0	0.00053	0
대구	0.0044	0.0222	0.00083	0.0044	0	0.0222	0	0.00083	0
인천	0.0072	0.0347	0.00249	0.0048	-0.0024	0.0248	-0.0099	0.00104	-0.00145
광주	0.0033	0.0155	0.00046	0.0034	0.0001	0.0155	0	0.00046	0
대전	0.0009	0.0043	0.00003	0.0009	0	0.0043	0	0.00003	0
울산	0.0075	0.0373	0.00229	0.0048	-0.0027	0.0236	-0.0137	0.00092	-0.00137
경기	0.0075	0.0331	0.00268	0.0026	-0.0049	0.0109	-0.0222	0.00032	-0.00236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25	-0.0027	0.0133	-0.0132	0.00029	-0.00097
충북	0.005	0.0226	0.00107	0.0024	-0.0026	0.0122	-0.0104	0.00025	-0.00082
충남	0.0017	0.0085	0.00014	0.0017	0	0.0085	0	0.00014	0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21	-0.004	0.0111	-0.0191	0.00021	-0.00144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53	-0.0006	0.0293	-0.0034	0.00136	-0.00031
경북	0.005	0.0235	0.00114	0.0022	-0.0028	0.0115	-0.012	0.00023	-0.00091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2	-0.0018	0.0108	-0.0064	0.00019	-0.00047
전국	0.0089	0.0495	0.00401	0.0091	0.0002	0.041	-0.0085	0.00475	0.00074

4) 시나리오 4

(1)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기준보조를 조정 시나리오 4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70,350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70,614백만 원)와 경남(26,006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은 현행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76.56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충남(242.81원)과 전남(179.59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영유아보육료(국비) 기준보조를 조정: 시나리오 4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43.12	348,896	0	943.12	0.00
부산	203,888	1,520.50	203,888	0	1,520.50	0.00
대구	155,595	1,512.82	155,595	0	1,512.82	0.00
인천	216,635	1,626.10	216,967	332	1,628.59	2.49
광주	127,008	1,883.86	127,008	0	1,883.86	0.00
대전	128,442	1,937.17	128,442	0	1,937.17	0.00
울산	92,612	1,601.67	94,656	2,044	1,637.02	35.35
경기	1,015,560	1,559.35	1,086,174	70,614	1,667.78	108.42
강원	91,744	1,552.46	100,515	8,771	1,700.87	148.42
충북	123,076	1,734.98	129,188	6,112	1,821.13	86.15
충남	157,219	1,578.23	181,407	24,188	1,821.04	242.81
전북	129,721	1,800.38	133,749	4,028	1,856.28	55.90
전남	109,523	1,449.81	123,090	13,566	1,629.40	179.59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경북	188,306	1,703.48	202,996	14,690	1,836.37	132.89
경남	258,409	1,674.20	284,415	26,006	1,842.68	168.49
전국	3,346,634	1,504.07	3,516,984	170,350	1,580.63	76.56

다음으로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274(-0.0017), 지니계수는 0.1563(-0.0101), 엔트로피는 0.0427(-0.0046)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등 6개 지역은 시군구 간 차이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149	0	0.0825	0	0.0110	0
부산	0.0139	0.0756	0.0091	0.0139	0	0.0756	0	0.0091	0
대구	0.0217	0.0918	0.0170	0.0217	0	0.0918	0	0.0170	0
인천	0.0281	0.1351	0.0417	0.0248	-0.0033	0.1226	-0.0125	0.0303	-0.0114
광주	0.0157	0.0778	0.0103	0.0157	0	0.0778	0	0.0103	0
대전	0.0061	0.0270	0.0014	0.0061	0	0.0270	0	0.0014	0
울산	0.0139	0.0674	0.0083	0.0096	-0.0043	0.0468	-0.0206	0.0038	-0.0046
경기	0.0149	0.0652	0.0113	0.0135	-0.0014	0.0582	-0.0070	0.0087	-0.0026
강원	0.0247	0.1345	0.0280	0.0202	-0.0045	0.1118	-0.0227	0.0198	-0.0082
충북	0.0229	0.1223	0.0237	0.0199	-0.0030	0.1082	-0.0141	0.0189	-0.0048
충남	0.0149	0.0803	0.0105	0.0149	0	0.0803	0	0.0105	0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전북	0.0379	0.2079	0.0801	0.0341	-0.0038	0.1824	-0.0255	0.0676	-0.0125
전남	0.0384	0.2048	0.0663	0.0361	-0.0023	0.1959	-0.0089	0.0610	-0.0053
경북	0.0396	0.2080	0.0822	0.0364	-0.0032	0.1909	-0.0171	0.0715	-0.0107
경남	0.0248	0.1365	0.0299	0.0235	-0.0013	0.1291	-0.0074	0.0274	-0.0025
전국	0.0291	0.1664	0.0473	0.0274	-0.0017	0.1563	-0.0101	0.0427	-0.0046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00,953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43,285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38.02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109.41원)과 전남(94.97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아동수당(국비)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289,335	38	659.12	0.09
부산	139,222	870.37	139,226	4	870.40	0.03
대구	106,930	870.07	106,933	4	870.10	0.03
인천	138,238	870.22	138,536	297	872.09	1.87
광주	70,630	869.49	70,840	209	872.07	2.58
대전	70,126	882.68	70,129	3	882.72	0.04
울산	58,071	842.55	59,422	1,351	862.15	19.60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경기	624,718	804.42	668,003	43,285	860.16	55.74
강원	55,587	787.61	60,764	5,177	860.97	73.36
충북	70,287	831.49	74,004	3,717	875.46	43.97
충남	91,133	765.90	104,151	13,019	875.31	109.41
전북	73,281	842.45	75,873	2,592	872.24	29.79
전남	70,624	783.01	79,191	8,566	877.98	94.97
경북	106,909	810.89	115,608	8,699	876.88	65.98
경남	148,001	800.36	161,992	13,991	876.02	75.66
전국	2,113,053	795.90	2,214,006	100,953	833.93	38.02

다음으로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086(-0.0003), 지니계수는 0.0392(-0.0103), 엔트로피는 0.00418(0.00017)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대구, 대전, 충남 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간 차이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034	0	0.0193	0.0003	0.00057	0.00002
부산	0.0033	0.0172	0.00053	0.0033	0	0.0172	0	0.00053	0
대구	0.0044	0.0222	0.00083	0.0044	0	0.0222	0	0.00083	0
인천	0.0072	0.0347	0.00249	0.0048	-0.0024	0.0248	-0.0099	0.00104	-0.00145
광주	0.0033	0.0155	0.00046	0.0034	0.0001	0.0155	0	0.00046	0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대전	0.0009	0.0043	0.00003	0.0009	0	0.0043	0	0.00003	0
울산	0.0075	0.0373	0.00229	0.0004	-0.0071	0.0236	-0.0137	0.00092	-0.00137
경기	0.0075	0.0331	0.00268	0.0026	-0.0049	0.0109	-0.0222	0.00032	-0.00236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25	-0.0027	0.0133	-0.0132	0.00029	-0.00097
충북	0.005	0.0226	0.00107	0.0024	-0.0026	0.0122	-0.0104	0.00025	-0.00082
충남	0.0017	0.0085	0.00014	0.0017	0	0.0085	0	0.00014	0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21	-0.004	0.0111	-0.0191	0.00021	-0.00144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53	-0.0006	0.0293	-0.0034	0.00136	-0.00031
경북	0.005	0.0235	0.00114	0.0022	-0.0028	0.0115	-0.012	0.00023	-0.00091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2	-0.0018	0.0108	-0.0064	0.00019	-0.00047
전국	0.0089	0.0495	0.00401	0.0086	-0.0003	0.0392	-0.0103	0.00418	0.00017

2.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1)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304,279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서울은 현행과 같으나,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124,150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136.75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충남(421.73원)와 경남(270.06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를 조정: 시나리오 1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43.12	348,896	0	943.12	0.00
부산	203,888	1,520.50	206,369	2,482	1,539.00	18.51
대구	155,595	1,512.82	156,746	1,151	1,524.01	11.19
인천	216,635	1,626.10	222,996	6,361	1,673.84	47.74
광주	127,008	1,883.86	133,221	6,213	1,976.01	92.15
대전	128,442	1,937.17	133,618	5,176	2,015.24	78.07
울산	92,612	1,601.67	99,838	7,226	1,726.64	124.96
경기	1,015,560	1,559.35	1,139,710	124,150	1,749.98	190.63
강원	91,744	1,552.46	99,571	7,827	1,684.91	132.45
충북	123,076	1,734.98	140,357	17,281	1,978.59	243.61
충남	157,219	1,578.23	199,230	42,011	1,999.96	421.73
전북	129,721	1,800.38	133,399	3,678	1,851.42	51.04
전남	109,523	1,449.81	125,695	16,172	1,663.89	214.08
경북	188,306	1,703.48	211,174	22,868	1,910.35	206.87
경남	258,409	1,674.20	300,093	41,684	1,944.26	270.06
전국	3,346,634	1,504.07	3,650,913	304,279	1,640.82	136.75

다음으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308(0.0017), 지니계수는 0.176(0.0096), 엔트로피는 0.0549(0.0076)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와 경기의 경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149	0	0.0825	0	0.026	0.015
부산	0.0139	0.0756	0.0091	0.0162	0.0023	0.0872	0.0116	0.0091	0
대구	0.0217	0.0918	0.0170	0.0167	-0.005	0.0833	-0.0085	0.017	0
인천	0.0281	0.1351	0.0417	0.0267	-0.0014	0.1294	-0.0057	0.0303	-0.0114
광주	0.0157	0.0778	0.0103	0.0198	0.0041	0.0994	0.0216	0.0103	0
대전	0.0061	0.0270	0.0014	0.0062	1E-04	0.0298	0.0028	0.0014	0
울산	0.0139	0.0674	0.0083	0.0123	-0.0016	0.0576	-0.0098	0.0037	-0.0046
경기	0.0149	0.0652	0.0113	0.0125	-0.0024	0.0532	-0.012	0.0087	-0.0026
강원	0.0247	0.1345	0.0280	0.0245	-0.0002	0.1359	0.0014	0.0198	-0.0082
충북	0.0229	0.1223	0.0237	0.0268	0.0039	0.145	0.0227	0.0189	-0.0048
충남	0.0149	0.0803	0.0105	0.0247	0.0098	0.1348	0.0545	0.0105	0
전북	0.0379	0.2079	0.0801	0.0357	-0.0022	0.19	-0.0179	0.0676	-0.0125
전남	0.0384	0.2048	0.0663	0.0401	0.0017	0.2123	0.0075	0.0609	-0.0054
경북	0.0396	0.2080	0.0822	0.0427	0.0031	0.2229	0.0149	0.0715	-0.0107
경남	0.0248	0.1365	0.0299	0.0313	0.0065	0.1728	0.0363	0.0274	-0.0025
전국	0.0291	0.1664	0.0473	0.0308	0.0017	0.176	0.0096	0.0549	0.0076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75,743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80,741백만 원)와 충남(22,197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66.2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186.55원)과 충북(110.83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289,335	38	659.12	0.09
부산	139,222	870.37	141,307	2,086	883.41	13.04
대구	106,930	870.07	109,195	2,265	888.50	18.43
인천	138,238	870.22	142,393	4,155	896.37	26.15
광주	70,630	869.49	73,829	3,199	908.87	39.38
대전	70,126	882.68	72,837	2,711	916.80	34.12
울산	58,071	842.55	62,538	4,467	907.37	64.82
경기	624,718	804.42	705,460	80,741	908.39	103.97
강원	55,587	787.61	60,165	4,578	852.48	64.87
충북	70,287	831.49	79,655	9,368	942.32	110.83
충남	91,133	765.90	113,330	22,197	952.45	186.55
전북	73,281	842.45	75,873	2,592	872.24	29.79
전남	70,624	783.01	80,490	9,865	892.39	109.38
경북	106,909	810.89	118,925	12,016	902.03	91.14
경남	148,001	800.36	163,465	15,465	883.99	83.63
전국	2,113,053	795.90	2,288,797	175,743	862.10	66.20

다음으로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11(0.0021), 지니계수는 0.06012(0.01062), 엔트로피는 0.00646(0.00245)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1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034	0	0.01931	0.00031	0.00057	0.00002
부산	0.0033	0.0172	0.00053	0.0084	0.0051	0.04366	0.02646	0.00338	0.00285
대구	0.0044	0.0222	0.00083	0.0051	0.0007	0.02659	0.00439	0.00114	0.00031
인천	0.0072	0.0347	0.00249	0.0091	0.0019	0.04605	0.01135	0.00394	0.00145
광주	0.0033	0.0155	0.00046	0.0074	0.0041	0.03475	0.01925	0.00213	0.00167
대전	0.0009	0.0043	0.00003	0.0054	0.0045	0.02201	0.01771	0.00112	0.00109
울산	0.0075	0.0373	0.00229	0.0091	0.0016	0.04589	0.00859	0.00332	0.00103
경기	0.0075	0.0331	0.00268	0.0056	-0.0019	0.02513	-0.00797	0.00153	-0.00115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72	0.002	0.03728	0.01078	0.00252	0.00126
충북	0.0050	0.0226	0.00107	0.0092	0.0042	0.04726	0.02466	0.00397	0.0029
충남	0.0017	0.0085	0.00014	0.011	0.0093	0.05931	0.05081	0.00582	0.00568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21	-0.004	0.01108	-0.01912	0.00021	-0.00144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75	0.0016	0.04157	0.00887	0.00274	0.00107
경북	0.0050	0.0235	0.00114	0.0083	0.0033	0.04212	0.01862	0.00327	0.00213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98	0.006	0.05314	0.03594	0.0045	0.00384
전국	0.0089	0.0495	0.00401	0.011	0.0021	0.06012	0.01062	0.00646	0.00245

2) 시나리오 2

(1)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3,638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198,860백만 원)와 강원(62,608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74,413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91.52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광주(749.12원)와 경남(482.11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를 조정: 시나리오 2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43.12	334,407	-14,489	903.95	-39.17
부산	203,888	1,520.50	201,561	-2,327	1,503.14	-17.35
대구	155,595	1,512.82	125,709	-29,886	1,222.24	-290.58
인천	216,635	1,626.10	247,800	31,165	1,860.03	233.93
광주	127,008	1,883.86	76,503	-50,505	1,134.74	-749.12
대전	128,442	1,937.17	127,008	-1,434	1,915.54	-21.63
울산	92,612	1,601.67	166,513	73,901	2,879.76	1278.08
경기	1,015,560	1,559.35	1,214,420	198,860	1,864.69	305.34
강원	91,744	1,552.46	154,352	62,608	2,611.89	1059.44
충북	123,076	1,734.98	110,117	-12,959	1,552.30	-182.68
충남	157,219	1,578.23	184,325	27,106	1,850.34	272.10
전북	129,721	1,800.38	164,860	35,139	2,288.07	487.69
전남	109,523	1,449.81	146,986	37,463	1,945.73	495.92
경북	188,306	1,703.48	209,087	20,781	1,891.47	187.99
경남	258,409	1,674.20	183,996	-74,413	1,192.09	-482.11
전국	3,346,634	1,504.07	3,550,272	203,638	1,595.59	91.52

다음으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31(0.0019), 지니계수는 0.177(0.0106), 엔트로피는 0.0617(0.0144)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 경기, 전북 등 3개 지역의 경우에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136	-0.0013	0.0754	-0.0071	0.0254	0.0144
부산	0.0139	0.0756	0.0091	0.0165	0.0026	0.0872	0.0116	0.0145	0.0054
대구	0.0217	0.0918	0.0170	0.0183	-0.0034	0.0925	0.0007	0.0095	-0.0075
인천	0.0281	0.1351	0.0417	0.0281	0	0.1351	0	0.0438	0.0021
광주	0.0157	0.0778	0.0103	0.0173	0.0016	0.0778	0	0.0103	0
대전	0.0061	0.0270	0.0014	0.0062	1E-04	0.0298	0.0028	0.0019	0.0005
울산	0.0139	0.0674	0.0083	0.0078	-0.0061	0.0363	-0.0311	0.0147	0.0064
경기	0.0149	0.0652	0.0113	0.0122	-0.0027	0.0517	-0.0135	0.0069	-0.0044
강원	0.0247	0.1345	0.0280	0.0245	-0.0002	0.1359	0.0014	0.0318	0.0038
충북	0.0229	0.1223	0.0237	0.0253	0.0024	0.1381	0.0158	0.0334	0.0097
충남	0.0149	0.0803	0.0105	0.0232	0.0083	0.1219	0.0416	0.0278	0.0173
전북	0.0379	0.2079	0.0801	0.0364	-0.0015	0.198	-0.0099	0.0734	-0.0067
전남	0.0384	0.2048	0.0663	0.0387	0.0003	0.2071	0.0023	0.0708	0.0045
경북	0.0396	0.2080	0.0822	0.0432	0.0036	0.2258	0.0178	0.1034	0.0212
경남	0.0248	0.1365	0.0299	0.031	0.0062	0.1695	0.033	0.0521	0.0222
전국	0.0291	0.1664	0.0473	0.031	0.0019	0.177	0.0106	0.0617	0.0144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05,480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49,323백만 원)와 경남(12,150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39.73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92.59원)과 전남(77.05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289,335	38	659.12	0.09
부산	139,222	870.37	139,516	294	872.21	1.84
대구	106,930	870.07	108,026	1,096	878.99	8.92
인천	138,238	870.22	139,882	1,644	880.57	10.35
광주	70,630	869.49	73,829	3,199	908.87	39.38
대전	70,126	882.68	72,837	2,711	916.80	34.12
울산	58,071	842.55	62,538	4,467	907.37	64.82
경기	624,718	804.42	674,041	49,323	867.94	63.51
강원	55,587	787.61	58,320	2,732	826.33	38.72
충북	70,287	831.49	73,339	3,053	867.60	36.11
충남	91,133	765.90	102,149	11,017	858.48	92.59
전북	73,281	842.45	73,961	680	850.26	7.82
전남	70,624	783.01	77,574	6,950	860.06	77.05
경북	106,909	810.89	113,035	6,126	857.36	46.46
경남	148,001	800.36	160,151	12,150	866.06	65.70
전국	2,113,053	795.90	2,218,533	105,480	835.63	39.73

다음으로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101(0.0012), 지니계수는 0.0562(0.0067), 엔트로피는 0.00528(0.00127)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를 살펴보면,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2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034	0	0.0193	0.0003	0.00057	0.00002
부산	0.0033	0.0172	0.00053	0.0078	0.0045	0.0411	0.0239	0.00293	0.0024
대구	0.0044	0.0222	0.00083	0.0071	0.0027	0.0361	0.0139	0.00224	0.00141
인천	0.0072	0.0347	0.00249	0.009	0.0018	0.0461	0.0114	0.00371	0.00122
광주	0.0033	0.0155	0.00046	0.0077	0.0044	0.0347	0.0192	0.00213	0.00167
대전	0.0009	0.0043	0.00003	0.0054	0.0045	0.022	0.0177	0.00112	0.00109
울산	0.0075	0.0373	0.00229	0.0091	0.0016	0.0459	0.0086	0.00332	0.00103
경기	0.0075	0.0331	0.00268	0.0049	-0.0026	0.0177	-0.0154	0.00121	-0.00147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8	0.0028	0.043	0.0165	0.00301	0.00175
충북	0.0050	0.0226	0.00107	0.0075	0.0025	0.0392	0.0166	0.0026	0.00153
충남	0.0017	0.0085	0.00014	0.008	0.0063	0.0415	0.033	0.00301	0.00287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81	0.002	0.0411	0.0109	0.00298	0.00133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7	0.0011	0.0387	0.006	0.0024	0.00073
경북	0.0050	0.0235	0.00114	0.0068	0.0018	0.0355	0.012	0.00219	0.00105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73	0.0035	0.0393	0.0221	0.00252	0.00186
전국	0.0089	0.0495	0.00401	0.0101	0.0012	0.0562	0.0067	0.00528	0.00127

3) 시나리오 3

(1)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82,868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70,614백만 원)와 경남(26,006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127.13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대전(258.29원)과 광주(251.18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43.12	363,254	14,358	981.93	38.81
부산	203,888	1,520.50	226,647	22,759	1,690.22	169.73
대구	155,595	1,512.82	172,450	16,855	1,676.69	163.88
인천	216,635	1,626.10	237,463	20,828	1,782.44	156.34
광주	127,008	1,883.86	143,942	16,934	2,135.04	251.18
대전	128,442	1,937.17	145,568	17,126	2,195.46	258.29
울산	92,612	1,601.67	99,024	6,412	1,712.56	110.89
경기	1,015,560	1,559.35	1,086,174	70,614	1,667.78	108.42
강원	91,744	1,552.46	100,175	8,431	1,695.12	142.66
충북	123,076	1,734.98	129,188	6,112	1,821.13	86.15
충남	157,219	1,578.23	181,407	24,188	1,821.04	242.81
전북	129,721	1,800.38	133,749	4,028	1,856.28	55.90
전남	109,523	1,449.81	123,090	13,566	1,629.40	179.59
경북	188,306	1,703.48	202,959	14,653	1,836.03	132.55
경남	258,409	1,674.20	284,415	26,006	1,842.68	168.49
전국	3,346,634	1,504.07	3,629,502	282,868	1,631.19	127.13

다음으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286(-0.0005), 지니계수는 0.163(-0.0034), 엔트로피는 0.0541(0.0068)로 다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지역이 3~5개이며, 차이가 감소하는 지역이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남은 시군구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183	0.0034	0.101	0.0185	0.0278	0.0168
부산	0.0139	0.0756	0.0091	0.0139	0	0.074	-0.0016	0.0153	0.0062
대구	0.0217	0.0918	0.0170	0.0245	0.0028	0.1135	0.0217	0.0172	0.0002
인천	0.0281	0.1351	0.0417	0.0267	-0.0014	0.1269	-0.0082	0.0286	-0.0131
광주	0.0157	0.0778	0.0103	0.0157	0	0.0778	0	0.0118	0.0015
대전	0.0061	0.0270	0.0014	0.008	0.0019	0.027	0	0.0014	0
울산	0.0139	0.0674	0.0083	0.0151	0.0012	0.0748	0.0074	0.0037	-0.0046
경기	0.0149	0.0652	0.0113	0.0135	-0.0014	0.0582	-0.007	0.0096	-0.0017
강원	0.0247	0.1345	0.0280	0.0218	-0.0029	0.1211	-0.0134	0.0198	-0.0082
충북	0.0229	0.1223	0.0237	0.0199	-0.003	0.1082	-0.0141	0.0189	-0.0048
충남	0.0149	0.0803	0.0105	0.0149	0	0.0803	0	0.0105	0
전북	0.0379	0.2079	0.0801	0.0341	-0.0038	0.1824	-0.0255	0.0801	0
전남	0.0384	0.2048	0.0663	0.0361	-0.0023	0.1959	-0.0089	0.0663	0
경북	0.0396	0.2080	0.0822	0.0369	-0.0027	0.1937	-0.0143	0.0758	-0.0064
경남	0.0248	0.1365	0.0299	0.0235	-0.0013	0.1291	-0.0074	0.0274	-0.0025
전국	0.0291	0.1664	0.0473	0.0286	-0.0005	0.163	-0.0034	0.0541	0.0068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66,286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43,285백만 원)와 경남(13,991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62.63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111.59원)와 대전(110.38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를 조정: 시나리오 3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297,698	8,401	678.17	19.14
부산	139,222	870.37	153,647	14,425	960.55	90.18
대구	106,930	870.07	117,607	10,677	956.95	86.88
인천	138,238	870.22	150,540	12,302	947.66	77.44
광주	70,630	869.49	79,695	9,064	981.07	111.59
대전	70,126	882.68	78,895	8,769	993.06	110.38
울산	58,071	842.55	61,947	3,876	898.78	56.24
경기	624,718	804.42	668,003	43,285	860.16	55.74
강원	55,587	787.61	60,490	4,903	857.08	69.47
충북	70,287	831.49	74,004	3,717	875.46	43.97
충남	91,133	765.90	104,151	13,019	875.31	109.41
전북	73,281	842.45	75,873	2,592	872.24	29.79
전남	70,624	783.01	79,191	8,566	877.98	94.97
경북	106,909	810.89	115,608	8,699	876.88	65.98
경남	148,001	800.36	161,992	13,991	876.02	75.66
전국	2,113,053	795.90	2,279,340	166,286	858.53	62.63

다음으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1(0.0011), 지니계수는 0.0503(0.0008), 엔트로피는 0.00541(0.0014)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7개 지역에서는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3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075	0.0041	0.0362	0.0172	0.00254	0.00199
부산	0.0033	0.0172	0.00053	0.0046	0.0013	0.0246	0.0074	0.00103	0.0005
대구	0.0044	0.0222	0.00083	0.0071	0.0027	0.0369	0.0147	0.00221	0.00138
인천	0.0072	0.0347	0.00249	0.0089	0.0017	0.0466	0.0119	0.00359	0.0011
광주	0.0033	0.0155	0.00046	0.0034	0.0004	0.0155	0	0.00046	0
대전	0.0009	0.0043	0.00003	0.0059	0.005	0.0043	0	0.00003	0
울산	0.0075	0.0373	0.00229	0.0109	0.0034	0.0522	0.0149	0.00468	0.00239
경기	0.0075	0.0331	0.00268	0.0026	-0.0049	0.0109	-0.0222	0.00032	-0.00236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44	-0.0008	0.0214	-0.0051	0.00098	-0.00028
충북	0.0050	0.0226	0.00107	0.0024	-0.0026	0.0122	-0.0104	0.00025	-0.00082
충남	0.0017	0.0085	0.00014	0.0017	0	0.0085	0	0.00014	0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21	-0.004	0.0111	-0.0191	0.00021	-0.00144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53	-0.0006	0.0293	-0.0034	0.00136	-0.00031
경북	0.0050	0.0235	0.00114	0.0022	-0.0028	0.0115	-0.012	0.00023	-0.00091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2	-0.0018	0.0108	-0.0064	0.00019	-0.00047
전국	0.0089	0.0495	0.00401	0.01	0.0011	0.0503	0.0008	0.00541	0.0014

4) 시나리오 4

(1)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56,778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현행과 동일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75,540백만 원)와 경남(36,819백만 원) 지역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115.4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전남(267.49원)과 전북(255.35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0. 영유아보육료(국비) 차등보조를 조정: 시나리오 4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348,896	943.12	348,896	0	943.12	0.00
부산	203,888	1,520.50	221,380	17,492	1,650.95	130.45
대구	155,595	1,512.82	163,113	7,519	1,585.92	73.10
인천	216,635	1,626.10	217,201	566	1,630.34	4.25
광주	127,008	1,883.86	139,867	12,859	2,074.60	190.74
대전	128,442	1,937.17	130,732	2,290	1,971.71	34.54
울산	92,612	1,601.67	94,656	2,044	1,637.02	35.35
경기	1,015,560	1,559.35	1,091,100	75,540	1,675.34	115.99
강원	91,744	1,552.46	100,515	8,771	1,700.87	148.42
충북	123,076	1,734.98	130,423	7,347	1,838.55	103.57
충남	157,219	1,578.23	182,656	25,437	1,833.59	255.35
전북	129,721	1,800.38	148,994	19,273	2,067.87	267.49
전남	109,523	1,449.81	126,525	17,002	1,674.87	225.06
경북	188,306	1,703.48	212,124	23,818	1,918.95	215.47
경남	258,409	1,674.20	295,228	36,819	1,912.74	238.54
전국	3,346,634	1,504.07	3,603,412	256,778	1,619.47	115.40

다음으로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

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291, 0.1664, 0.0473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283(-0.0008), 지니계수는 0.162(-0.0044), 엔트로피는 0.0454(-0.0019)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지역이 3~5개이며, 차이가 감소하는 지역이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 영유아보육료(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149	0.0825	0.0110	0.0149	0	0.0825	0	0.011	0
부산	0.0139	0.0756	0.0091	0.0182	0.0043	0.1008	0.0252	0.0159	0.0068
대구	0.0217	0.0918	0.0170	0.0208	-0.0009	0.0966	0.0048	0.0166	-0.0004
인천	0.0281	0.1351	0.0417	0.0234	-0.0047	0.1171	-0.018	0.0264	-0.0153
광주	0.0157	0.0778	0.0103	0.0178	0.0021	0.0857	0.0079	0.0139	0.0036
대전	0.0061	0.0270	0.0014	0.0078	0.0017	0.0375	0.0105	0.0024	0.001
울산	0.0139	0.0674	0.0083	0.0096	-0.0043	0.0468	-0.0206	0.0037	-0.0046
경기	0.0149	0.0652	0.0113	0.0141	-0.0008	0.0612	-0.004	0.0094	-0.0019
강원	0.0247	0.1345	0.0280	0.0202	-0.0045	0.1118	-0.0227	0.0198	-0.0082
충북	0.0229	0.1223	0.0237	0.02	-0.0029	0.1081	-0.0142	0.0197	-0.004
충남	0.0149	0.0803	0.0105	0.0144	-0.0005	0.0782	-0.0021	0.0099	-0.0006
전북	0.0379	0.2079	0.0801	0.0369	-0.001	0.1981	-0.0098	0.0798	-0.0003
전남	0.0384	0.2048	0.0663	0.0373	-0.0011	0.2024	-0.0024	0.0647	-0.0016
경북	0.0396	0.2080	0.0822	0.0367	-0.0029	0.1935	-0.0145	0.0711	-0.0111
경남	0.0248	0.1365	0.0299	0.0252	0.0004	0.1391	0.0026	0.0312	0.0013
전국	0.0291	0.1664	0.0473	0.0283	-0.0008	0.162	-0.0044	0.0454	-0.0019

(2)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한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측면에서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16,086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45,802백만 원)와 경남(13,991백만 원)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은 43.72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110.21원)과 충남(109.41원)의 수혜자 1인당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 아동수당(국비)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단위: 백만 원, 원)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국비 (총액)	국비 (영유아 1인당)	국비 (총액)	차액	국비 (영유아 1인당)	차액
서울	289,297	659.04	283,172	-6,124	645.09	-13.95
부산	139,222	870.37	145,367	6,145	908.79	38.42
대구	106,930	870.07	109,944	3,014	894.60	24.53
인천	138,238	870.22	137,407	-831	864.99	-5.23
광주	70,630	869.49	73,384	2,754	903.39	33.91
대전	70,126	882.68	70,129	3	882.72	0.04
울산	58,071	842.55	59,422	1,351	862.15	19.60
경기	624,718	804.42	670,520	45,802	863.40	58.98
강원	55,587	787.61	60,764	5,177	860.97	73.36
충북	70,287	831.49	74,004	3,717	875.46	43.97
충남	91,133	765.90	104,151	13,019	875.31	109.41
전북	73,281	842.45	82,768	9,486	951.50	109.06
전남	70,624	783.01	80,565	9,941	893.23	110.21
경북	106,909	810.89	115,547	8,638	876.41	65.52
경남	148,001	800.36	161,992	13,991	876.02	75.66
전국	2,113,053	795.90	2,229,139	116,086	839.63	43.72

다음으로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국고보조금의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는 현행보다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226개 전체 시군구의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는 각각 0.0089, 0.0495, 0.00401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변이계수는 0.0102(0.0013), 지니계수는 0.04783(-0.00167), 엔트로피는 0.00608(0.00207)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내에 있는 시군구 간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남 등 7개 지역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시군구 간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8개 지역에서는 시군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3. 아동수당(영유아 1인당 국비) 형평화계수: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4

시도 구분	현행			조정안					
	변이계수	지니계수	엔트로피	변이계수	차이	지니계수	차이	엔트로피	차이
서울	0.0034	0.019	0.00055	0.0089	0.0055	0.04529	0.02629	0.00414	0.00359
부산	0.0033	0.0172	0.00053	0.0075	0.0042	0.03853	0.02133	0.00254	0.00201
대구	0.0044	0.0222	0.00083	0.0058	0.0014	0.02988	0.00768	0.00143	0.0006
인천	0.0072	0.0347	0.00249	0.0076	0.0004	0.03894	0.00424	0.00276	0.00027
광주	0.0033	0.0155	0.00046	0.0076	0.0043	0.03515	0.01965	0.00223	0.00177
대전	0.0009	0.0043	0.00003	0.0009	0	0.00434	0.00004	0.00003	0
울산	0.0075	0.0373	0.00229	0.0048	-0.0027	0.02357	-0.01373	0.00092	-0.00137
경기	0.0075	0.0331	0.00268	0.0036	-0.0039	0.01407	-0.01903	0.00059	-0.00209
강원	0.0052	0.0265	0.00126	0.0025	-0.0027	0.01334	-0.01316	0.00029	-0.00097
충북	0.0050	0.0226	0.00107	0.0024	-0.0026	0.01221	-0.01039	0.00025	-0.00082
충남	0.0017	0.0085	0.00014	0.0017	0	0.00853	0.00003	0.00014	0
전북	0.0061	0.0302	0.00165	0.0054	-0.0007	0.02738	-0.00282	0.00132	-0.00033
전남	0.0059	0.0327	0.00167	0.0058	-0.0001	0.03191	-0.00079	0.00158	-0.00009
경북	0.0050	0.0235	0.00114	0.0033	-0.0017	0.01559	-0.00791	0.00055	-0.00059
경남	0.0038	0.0172	0.00066	0.002	-0.0018	0.0108	-0.0064	0.00019	-0.00047
전국	0.0089	0.0495	0.00401	0.0102	0.0013	0.04783	-0.00167	0.00608	0.00207

제3절 종합 및 개선방안

1. 분석결과 종합

1) 기준보조율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 분석 등을 통해 4가지의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이다. 즉, 아동수당(서울 50%, 지방 70%)과 동일하게 영유아보육료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두 번째는 서울과 지방의 기준보조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차등적 기준보조율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지방 중 기준보조율이 높은 지방(영유아보육료 65%, 아동수당 70%)과 동일하게 서울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세 번째는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현행 기준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측면에서, 현행 기준보조율을 5%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0%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원확충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총액과 수혜자 1인당 금액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측면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5-34. 기준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분석결과

구분		시나리오 1 (서울 50%, 지방 70%)		시나리오 2 (영유아보육료 65%, 아동수당 70%)		시나리오 3 (현행 기준보조율 5% 인상)		시나리오 4 (현행 기준보조율 10% 인상)	
		영유아 보육료	아동 수당	영유아 보육료	아동 수당	영유아 보육료	아동 수당	영유아 보육료	아동 수당
재원확충 효과	총액	-	-	-	-	-	-	+	+
	1인당 금액	-	-	-	-	-	-	+	+
형평화 효과 (1인당 금액)	변이계수	-	+	-	-	-	+	-	-
	지니계수	-	-	-	-	-	-	-	-
	엔트로피	-	+	-	-	-	+	-	+

재원확충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시나리오 1~3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모두 현행보다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나리오 4는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모두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보육료의 기준보조율을 아동수당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서울과 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현재의 국고보조금보다는 총액 및 수혜자 1인당 금액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현재의 국고보조금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5~10% 사이에서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형평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현행보다 수혜자 1인당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차등보조율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재의 배분상태보다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동수당에 대한 분석결과는 영유아보육료에 비해 다소 복잡하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1과 3에서 변이계수와 엔트로피 값은 현행보다 증가한 반면, 지니계수 값은 현행보다 감소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4에서는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값은 감소한 반면, 엔트로피 값은 증가하였다.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3가지 계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재보다 수혜자 1인당 국고보조금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재정격차 완화 측면에서 볼 때, 시나리오 4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나리오 4의 경우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모두 현행보다 국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도 현재보다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의 경우 지역 간 재정격차 측면에서도 아동수당의 엔트로피 값을 제외하고 모든 형평화계수 값이 현행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나리오 1~3은 현행보다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서울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모두 서울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나리오 1과 3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지역 간 수혜자 1인당 지원 금액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차등보조율 분석결과

차등보조율의 경우에도 기준보조율과 동일하게 선행연구 검토와 현황 분석 등을 통해 4가지의 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율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현행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율을 적용하는 동시에 시군과 자치구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분하여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현행 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네 번째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시군과 자치구의 평균 및 표준편차로 구분하여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원확충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총액과 수혜자 1인당 금액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측면에서 수혜자 1인당 금액에 대한 형평화계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5-35.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 분석결과

구분		시나리오 1 (영유아 인구비율 기준, 226개 평균/표준편차)		시나리오 2 (영유아 인구비율 기준, 시군-자치구 평균/ 표준편차 구분)		시나리오 3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지수 기준, 226개 평균/표준편차)		시나리오 4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지수 기준, 시군-자치구 평균/ 표준편차 구분)	
		영유아 보육료	아동 수당	영유아 보육료	아동 수당	영유아 보육료	아동 수당	영유아 보육료	아동 수당
재원확충 효과	총액	+	+	+	+	+	+	+	+
	1인당 금액	+	+	+	+	+	+	+	+
형평화 효과 (1인당 금액)	변이계수	+	+	+	+	-	+	-	+
	지니계수	+	+	+	+	-	+	-	-
	엔트로피	+	+	+	+	+	+	-	+

재원확충 측면에서 4개 시나리오 모두 현행보다 국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기준보조율 시나리오 분석결과 기준보조율을 현행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차등보조율 조정 시나리오는 4개 모두 현행 기준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4개의 차등보조율 시나리오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보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형평화 측면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현행 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율을 적용한 시나리오 1과 2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모두 지역 간 재정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에서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는 감소하고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수당에서는 모든 형평화계수의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4의 경우 영유아보육료에서는 모든 형평화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수당에서도 지니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나리오 4가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현행과 마찬가지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차등보조율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선방안

아동복지 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자원분담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현행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준보조율 측면에서는 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보조율 설정, ② 유사 사업에 대한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③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④ 낮은 수준의 기준보조율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보조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보조율 조정, ②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③ 유사 사업의 기준보조율 통일, ④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폐지, ⑤ 기준보조율의 단순화 등이 주장되었다(심지현, 2014; 배준식 외, 2015; 이원희, 2015; 손인호·금재덕, 2018; 이재원, 2019 등).

다음으로 차등보조율 측면에서는 ①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적절성, ② 시군구 간 재정구조 차이 미반영, ③ 차등보조율제도로 인한 문턱효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② 재정력지수, 실제 재정수요(수혜 대상 인구) 등 새로운 차등보조율 선정기준 적용, ③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등이 제기되어 왔다(하능식, 2013; 이재원, 2016; 김정완, 2019 등).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들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재정조정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대안들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13개 아동복지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2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4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한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유사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차등보조율로 인한 인상보조율을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 1은 아동수당의 경우 226개 시군구 간 국비 지원 규모(수혜자 1인당 금액)의 편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226개 시군구 간 국비 지원 규모(수혜자 1인당 금액)의 편차는 감소시키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한다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반면에 시나리오 4는 모든 지역의 국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동시에 226개 시군구 간 국비 지원 규모(수혜자 1인당 금액)의 편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재원분담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에 대한 현행 기준보조율을 10%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복잡하게 설계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제도를 대체하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현행보다 국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 4를 적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료의 국비 지원 규모는 현행보다 170,350백만 원 증가하며, 아동수당은 100,953백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정양육수당의 국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약 3,0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유아보육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검토한 13개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사업인 3개 사업(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는 5,373억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10개 사업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3개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6. 13개 영유아 사업의 자원분담 현황

(단위: 백만 원)

지자체	합계	국비	지방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5,125,392	3,428,777	1,696,614
아동수당 지급	2,965,735	2,167,423	798,31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194,391	861,821	332,570
시간제보육 지원	21,683	10,872	10,811
아이돌봄 지원	339,253	219,195	120,058
장애아동가족 지원	148,454	99,479	48,976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8,734	9,742	8,992
어린이집 확충	118,277	61,110	57,167
어린이집 기능보강	59,371	29,976	29,395
공공형어린이집	111,912	62,047	49,86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7,040	17,361	19,679
입양아동 가족지원	27,382	17,993	9,389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0,500	9,519	10,981
합계	10,188,124	6,995,315	3,192,809

다음으로 차등보조율에 대한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차등보조율에 대한 4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현행보다 국비 지원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보조율을 10% 인상하는 것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비율을 적용한 시나리오 1과 2는 수혜자 1인당 금액 측면에서 지역 간 국비 지원 규모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시나리오 3과 4는 일부 형평화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4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전체와 아동수당 중 지니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은 공동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사무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혜규 외. (2016).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채기·김보현·이형우·강혜규·정종화. (2008). 「복지행정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방 이양사업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 김정완. (2019).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4(3): 199-233.
- 김재훈. (2003).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8(1): 25-48.
- 박세경. (2009). 미국 포괄보조금제도 운영 실태의 한국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15-133.
- 박종혁. (2014).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새로운 보조율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67-306.
- 배인명. (2017).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中 바람직한 재정분권화 개혁 방안: “자치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월간 주민자치」, 74: 94-100.
- 보건복지부. (2017).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부처안 L」.
- 서정섭. (2016). 국고보조금사업 기준보조율의 법정화에 관한 연구: 의무성 국고보조사업의 정의와 법령화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7-229.
- 손인호·금재덕. (2018).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283-308.
- 송상훈. (2013). 국고보조금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 「이슈 & 진단」, 122: 1-24.
- 송상훈. (2014). [정책제언] 국고보조금은 지원인가, 부담인가. 「월간 공공정책」, 103: 63-66.
- 송상훈·류민정. (2013).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조정방안.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1-123.
- 유영성·이원희. (2005). 국고보조금 운영의 개선 방안: 광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23-443.

- 이용환·김진덕. (2009). 국가에 의한 지방재정 의무지출 실태와 개선방향. 「정책연구」, 1-1.
- 이원희. (2015). [정책제안] 지방자치 확대 위해 국고보조금 축소해야. 「월간 공공정책」, 121: 68-70.
- 이장욱·서정섭. (2018).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83-302.
- 이재완. (201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83-112.
- 이재원. (2015).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79-102.
- 이재원. (2016).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31-53.
- 이재원. (2017).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과제 중 정책과제: “중앙-지방 간 재정 협치 체계 구축해야 한다”. 「월간 주민자치」, 74: 101-107.
- 이재원. (2017). 「복지재정 운영체계 분석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이재원. (2019).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4(1): 33-64.
- 이재원. (2019). 「지방재정론」. 서울: 윤성사.
- 이재원·오영삼. (2018).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과 복지 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GRI 연구논총」, 20(4): 197-226.
- 이중섭·이동기. (2011). 시·군별 복지재정 격차, 국고보조금사업 재정비 통해 완화해야. [think] Issue Briefing, (47): 0-0.
- 이중엽. (2008).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유헤출판사.
- 이창균. (2001). 국고보조금의 보조율과 지방비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6(2): 123-147.
- 임소영. (2012).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제 도입 전후의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개선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61-80.
- 장경원·홍근석. (2018).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자치단체 세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57-177.

- 정홍원·김보영·민효상·이정은. (2019).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준규·신원득·박충훈·윤소은·김진덕. (2017). 경기도 재정분석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1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정부내 바람직한 아동정책 수행체계 개발」.
- 한승희. (2017). 미국의 연방보조금(Federal grant) 정보공개와 한국. 「나라재정」, 12: 24-31.
- 홍근석. (2019). 「복수주소제 도입 방안」. 2019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근석·김봉균. (2019).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연구보고서 2019-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Crenna-Jennings. (2018). Vulnerable children and social care in England: A review of the evidence. Education Policy Institute.
(https://epi.org.uk/wp-content/uploads/2018/05/Vulnerable-children-and-social-care-in-England_EPI_.pdf).
- Dragoo, Kyrie E. (2019).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Funding: A Primer. August 29. (<https://fas.org/sgp/crs/misc/R44624.pdf>), 접속일 3/22/2020.
- Falk, Gene & Patrick A. Landers. (2019).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Block Grant: Response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December 30. (<https://fas.org/sgp/crs/misc/RL32760.pdf>).
- Gilbert, Neil and Terrel, Paul. (2010).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7th ed.). MA: Pearson.
- 남찬섭·유태균 역. (2007). 「사회복지정책론」.
- Grants.gov. (2017). What is a Grant? (<https://grantsgovprod.wordpress.com/2017/02/07/new-series-what-is-a-grant/>), 접속일: 3/22/2020.
- Grants.gov. (n.d.) A Short History of Federal Grant Policy (<https://www.grants.gov/web/grants/learn-grants/grant-policies.html>), 접속일: 3/22/2020.
- <https://www.medicaid.gov/chip/financing/index.html>;
- <https://www.medicaid.gov/sites/default/files/2019-12/preliminary-allotments.pdf>
- Kids Count Data Center. (n.d.). <https://datacenter.kidscount.org/>.

-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19, July).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No.29 2019.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14118/Local_government_financial_stats_number_29_2019_Web_Accessible.pdf).
- Mitchel, Alison. (2018). Medicaid's Federal Medical Assistance Percentage (FMA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fas.org/sgp/crs/misc/R43847.pdf>), 접속일: 3/22/2020.
- National Audit Office. (2019, January). Report: pressures on children's social care.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9/01/Pressures-on-Childrens-Social-Care.pdf>).
-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9, November). England local government funding: trends and challenges in 2019 and beyond. (<https://www.ifs.org.uk/uploads/English-local-government-funding-trends-and-challenges-in-2019-and-beyond-IFS-Report-166.pdf>).
- U. 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3). Grants Management: Improved Planning,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Needed to Strengthen Reform Efforts (<https://www.gao.gov/assets/660/654807.pdf>), 접속일: 3/26/2020.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019). Bund-Länder-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 2019,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erlin.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018a). Bund/Laender-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 2018,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erlin.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017). Bund-Länder-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 2017,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erlin.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2015). Bund-Länder-Finanzbeziehungen auf der Grundlage der Finanzverfassung 2015,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erlin.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2.26.).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발표.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on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s

Republic of Korea's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s are recently facing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changes. The existing national subsidy programs for social welfare were the factors that intensified the rigidity of local finance, especially to a local government with weak fiscal conditions.

This paper suggests improving the inter-governmental cost-sharing system on social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 with the focus on the child welfare program. In particular, this paper reviews the issues related to standard and differential subsidy rate and analyses four different scenarios for each standard and differential subsidy rate to draw the best alternative scenario. Infant child care subsidy program and child allowance program are selected as analysis cases since they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among 13 child welfare programs and are applied both standard and differential subsidy rate.

The paper finds that the standard subsidy rate is desirable to be increased by 10% from the current subsidy rate of two programs, while the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are the most appropriate criteria for differential subsidy rate.

Meanwhile, all of child welfare national subsidy programs are stipulated in a way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jointly carry out the programs and share the costs. However,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difficult to hav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the programs under the current structur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gradually raise the standard subsidy rate for cash-based welfare programs such as infant child care and child allowances so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ill ultimately take charge of them. On the other hand, social service programs such as caring service are needed a local transfer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can autonomously operate based on the local contexts.



www.krila.re.kr

KRILA를
스마트폰으로
만나보세요!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우)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T. 033-769-9999 F. 033-769-9805



9 788978 654906

ISBN 978-89-7865-490-6